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

# 2016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



경 기 도

# 목 차

## I. 2016년 보육사업 안내

- 목 적, 다른 규정과의 관계 ..... 5
- 2016년 도 보육사업 주요 변경내용 ..... 6

## II. 2016년 보육정책 방향 및 목표

- 여건 및 추진방향 ..... 13
-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 13

## III. 2016년 보육사업 추진계획

###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① 영유아보육료 지원<국·도비> ..... 15
- ② 누리과정 운영 지원<도비> ..... 17
- ③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도비> ..... 19
- ④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도비> ..... 21
- 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도비> ..... 24
- ⑥ 가정양육수당 지원<국·도비> ..... 26
- ⑦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국·도비> ..... 30
- ⑧ 공공형어린이집 운영<국·도비> ..... 35
- ⑨ 직장어린이집 관리<비예산> ..... 38
- ⑩ 어린이집 평가인증<비예산> ..... 41
- ⑪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비예산> ..... 44
- ⑫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비예산> ..... 45
- ⑬ 어린이집 필요경비<비예산> ..... 46

## 2. 아이가 행복한 안심보육 실현

|                             |    |
|-----------------------------|----|
| ①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국·도비>        | 52 |
| ② 가정·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도비>       | 56 |
| ③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국·도비>        | 59 |
| ④ 어린이집 지도·점검<비예산>           | 62 |
| 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예산>           | 68 |
| ⑥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도비>         | 69 |
| ⑦ 어린이집 위생, 영양, 통학차량 관리<비예산> | 72 |
| ⑧ 어린이집 입소순위<비예산>            | 75 |
| 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운영<비예산>        | 79 |
| ⑩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비예산>        | 80 |
| ⑪ 공익신고자 포상금 사업<비예산>         | 81 |
| ⑫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국·도비>         | 83 |

## 3. 부모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                             |     |
|-----------------------------|-----|
| 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 88  |
| ②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 지원<도비> | 90  |
| ③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도비>     | 92  |
| ④ 시간제보육 지원<국·도비>            | 94  |
| ⑤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도비>      | 99  |
| ⑥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도비>       | 105 |
| ⑦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국·도비>    | 108 |
| ⑧ 차량운영비 지원<국·도비>            | 110 |
| ⑨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도비>           | 112 |
| ⑩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도비>           | 117 |

#### 4.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     |
|------------------------------------|-----|
| ①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도비> ..... | 122 |
| ②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도비> .....   | 126 |
| ③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도비> .....       | 130 |
| ④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도비> .....       | 134 |
| ⑤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도비> .....      | 138 |
| ⑥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국·도비> .....     | 140 |
| ⑦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국·도비> .....        | 143 |
| ⑧ 교사 겸직 원장 지원<국·도비> .....          | 145 |
| ⑨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국·도비> .....          | 147 |
| ⑩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국·도비> .....          | 150 |
| ⑪ 영아전담등 교직원 인건비<국·도비> .....        | 153 |
| ⑫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국·도비> .....         | 154 |
| ⑬ 영아·다문화 전문교육과정 운영<비예산> .....      | 156 |
| ⑭ 3급 보육교사 양성과정 운영<비예산> .....       | 158 |
| ⑮ 농어촌지역 보육교직원 배치기준<비예산> .....      | 159 |
| ⑯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국·도비> .....    | 161 |
| ⑰ 지자체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도비> .....  | 163 |
| ⑱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조리원) 지원<도비> .....   | 165 |

#### IV. 부 록

|                              |     |
|------------------------------|-----|
|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 170 |
| ■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현황 .....       | 171 |
| ■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   | 172 |
| ■ 2016년 시군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 173 |
| ■ 주요 보육통계표 .....             | 175 |
| ■ 보육료 지원기준표 .....            | 176 |



# I . 2016년 보육사업 안내

## 목 적

이 안내(지침)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경기도 보육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보육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국·도비 보조금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른 규정과의 관계

### □ 일반사항

- 보육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 훈령, 예규, 고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은 이 안내(지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상기 이외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안내를 우선 적용한다.

### □ 어린이집 세부운영 규정

- 시·군 및 각 어린이집은 필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및 이 안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자체 세부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기타 적용사항

- 보조금의 지급은 반드시 계좌입금으로 한다.
- 각종 도 특수시책사업 추진 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 경기도 보육사업 주요 변경내용

| 제 목                         | 2015년도  | 2016년도   | 변경사유        |
|-----------------------------|---|--|-------------|
| <b>1. 보육의 공공성 강화</b>        |   |  |             |
| <b>○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b> |   |  |             |
| 지원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아동</li> <li>○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 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4세 아동</li> <li>○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li> <li>○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li> <li>○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li> <li>○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차상위 자활 수급권자 및 가구원</li> <li>○ 우선돌봄차상위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li> <li>○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 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li> <li>○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li> <li>○ 좌동</li> <li>○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li> <li>※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 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 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신청서」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 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li> </ul> | 보건복지부 기준 일치 |
| 지원단가                        |   | 표 전체 수정  | 수납한도액 인상    |
| 지원방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방식</li> <li>- 다만,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1개월 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방식</li> <li>-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li> <li>-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li> <li>※ 출석인정을 위하여 어린이집에서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li> </ul>   | 출석인정 특례 추가  |

| 제 목                     | 2015년도  | 2016년도   |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원방식                    | <p>○ 지원방식</p> <p>- 다만, 아동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1개월 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이 경우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p>  | <p>○ 지원방식</p> <p>-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p> <p>-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p> <p>※ 출석인정을 위하여 어린이집에서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p> | 출석인정 특례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 <p>○ 정부 미지원 만3~5세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민간어린이집</th> <th colspan="2">가정어린이집</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만3세</th> <th>만4~5세</th> <th>만3세</th> <th>만4~5세</th> </tr> </thead> <tbody> <tr> <td>288</td> <td>266</td> <td>291</td> <td>291</td> <td>전년대비 2%인상</td> </tr> </tbody> </table> | 민간어린이집   |  | 가정어린이집    |  | 비고 | 만3세 | 만4~5세 | 만3세 | 만4~5세 | 288 | 266 | 291 | 291 | 전년대비 2%인상 | <p>○ 정부 미지원 만3~5세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민간어린이집</th> <th colspan="2">가정어린이집</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만3세</th> <th>만4~5세</th> <th>만3세</th> <th>만4~5세</th> </tr> </thead> <tbody> <tr> <td>293</td> <td>271</td> <td>296</td> <td>296</td> <td>전년대비 2%인상</td> </tr> </tbody> </table> | 민간어린이집 |  | 가정어린이집 |  | 비고 | 만3세 | 만4~5세 | 만3세 | 만4~5세 | 293 | 271 | 296 | 296 | 전년대비 2%인상 | 수납한도액 인상(道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반영) |
| 민간어린이집                  |   | 가정어린이집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3세                     | 만4~5세   | 만3세  | 만4~5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8                     | 266   | 291  | 291  | 전년대비 2%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간어린이집                  |   | 가정어린이집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3세                     | 만4~5세   | 만3세  | 만4~5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3                     | 271   | 296  | 296  | 전년대비 2%인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 어린이집 필요경비</b>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 <p>④ 차량운행비</p> <p>○ 운영기준</p> <p>-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운행시 소요되는 실비</p> <p>- 기사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p> <p>⑥ 아침·저녁 급식비</p> <p>○ 운영기준 : 아침 및 저녁 급식비</p>  | <p>④ 차량운행비</p> <p>○ 운영기준</p> <p>-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운행시 소요되는 실비</p> <p>-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p> <p>⑥ 아침·저녁 급식비</p> <p>○ 운영기준 : 아침 및 저녁 급식비</p> <p>※ 시·군에서는 수납주기별 수납한도액과 1식당 단가를 어린이집에 안내</p>   | 차량운행비 보건복지부 기준 일치, 아침·저녁 급식비 道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반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요경비 관련 안내              | <p>○ 입학준비금 반환</p> <p>- 입학후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p> <p>- 1월 미만 이용후 퇴소시에는 50%를 반환하여야 함(다만, 관련물품이 이미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p> <p>-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하여야 함</p>   | <p>○ 입학준비금 반환</p> <p>-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반환</p> <p>- 단,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p>  | 보건복지부 기준 일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2015년도  | 2016년도  | 변경사유                         |
|--------------------------------|---|---|------------------------------|
| <b>3. 부모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b> |   |   |                              |
| <b>○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b>      |   |   |                              |
| 사업개요                           | ○ 지원액<br>-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1,300천원(월/인)<br>-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400천원(월/인)<br>- 조리원 인건비 : 500천원(월/인)  | ○ 지원내용<br>-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u>1,400천원</u> (월·인)<br>-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u>410천원</u> (월·인)<br>- 조리원 인건비 : <u>600천원</u> (월·인)   | 인건비 인상                       |
| 지정기준                           | ○ 지정취소<br>-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변경인가 후 재지정 신청 가능) 단, 동일 행정동 내 소재지 변경 시 시·군에서 판단하여 유지 가능(읍·면 제외)<br>- 시장·군수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을 대체지정 할 수 있음 | ○ 지정취소<br>-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단, <u>배우자·직계존비속·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 1년 이상 재직중)이 대표자로 변경시 및 동일 행정동(읍·면 제외) 내 소재지 변경시 시·군에서 판단하여 유지 가능</u><br>- <u>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어린이집 대체 지정 불가(도에 지정취소 보고)</u> | 평가인증 기준 반영<br><br>시·군 사업량 조정 |
| 지원기준                           | ※ 인건비는 추가반 보육교사 및 조리원 급여로만 사용하고, 운영비는 추가반 보육교사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용자부담분 사회보험, 기타 후생경비에 우선 사용 후 추가반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누리과정 운영비 사용항목 준용)으로 사용 가능<br>○ <신설>    | ※ 인건비는 추가반 보육교사 및 조리원 기본급에 사용하고, 운영비는 추가반 보육교사 퇴직적립금 및 <u>보육교직원(원장 제외) 제수당, 사용자부담분 사회보험, 기타 후생경비에 사용</u><br><br>○ <u>공공형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 기관으로 중복 지정·운영 불가</u>                          | 운영비 사용범위 조정<br><br>중복 운영 제한  |
| <b>○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b>       |   |   |                              |
| 사업개요                           | ○ 지원액 : 월 1,200,000원  | ○ 지원내용<br>- 교사 인건비 : <u>1,300천원</u> (월·인)   | 인건비 인상                       |

| 제 목                             | 2015년도   | 2016년도   | 변경사유    |
|---------------------------------|--|--|---------|
| <b>4.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b>       |  |  |         |
| <b>○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b> |  |  |         |
| 신청 및 지급                         |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 ○ (신설)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br>○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 규정 명확화  |
| 세부 지원대상                         |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조리원은 정규직원에 한함(일용인부 및 시간제 근무자 등은 제외)   | ○ 일용인부 및 시간제 근무 교직원 제외   | 규정 명확화  |
| 지원기준일                           | ○ 표 <평가인증어린이집 적용기준><br>◆ 인증취소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경기도 경우)하는 인증취소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차감 적용(인증취소사유 보고일이 아님)<br>※ 인증취소사유 발생일 : “평가인증 취소어린이집 통보 [알림]” 공문 내용에 명시 | ○ 표 <평가인증어린이집 적용기준><br>◆ 인증취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br>◆ 인증종료 어린이집은 인증종료일의 익월부터 차감<br>◆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은 만료일의 익월부터 차감  | 제도변화 반영 |
| <b>○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b>   |  |  |         |
| 신청 및 지급                         |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 ○ (신설)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br>○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 규정 명확화  |
| 지원기준일                           | ○ 표 <평가인증어린이집 적용기준><br>◆ 인증취소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경기도 경우)하는 인증취소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차감 적용(인증취소사유 보고일이 아님)<br>※ 인증취소사유 발생일 : “평가인증 취소어린이집 통보 [알림]” 공문 내용에 명시 | ○ 표 <평가인증어린이집 적용기준><br>◆ 인증취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br>◆ 인증종료 어린이집은 인증종료일의 익월부터 차감<br>◆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은 만료일의 익월부터 차감  | 제도변화 반영 |

| 제 목                 | 2015년도  | 2016년도  | 변경사유  |
|---------------------|---|---|---|
|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   |   |   |
| 신청 및 지급             |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하고<br><br>○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신청하고<br><br>○ (신설)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br><br>○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u>사업관리자로서 대체교사 및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u> ) | 사업관리자로서 대체교사의 지원 근거 등 규정 명확화  |
| ○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   |   |
| 지원일수                | ○ 본인 및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망(교사, 조리원) : 5일 이내(공무원 복무규정 준용)                     |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교사, 조리원) : 5일 이내  | 규정 명확화  |
|                     | -   | ○ (신설) 도 지원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워크숍」 및 「우수보육교사 힐링캠프」 참가 : 2일 이내  | 도 지원 프로그램 참가 교사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   |
| 월급여형 대체교사 채용        | ○ 사업비 : 월 1,664천원/인<br><br>○ 사업관리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 배치 가능              | ○ 사업비 : 월 1,714천원/인<br><br>(※ 삭제)   | 지원단가 인상<br><br>국비지원사업 대폭 확대 및 도비지원사업 축소에 따라, 사업관리자로서 대체교사는 국비지원사업 채용자 중에서 둠 |
| ○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   |   |   |
| 지원대상 (영아 전문교사)      | <대상><br>○ 영아반 담당교사  | <대상><br>○ 영아반(일시보육반(0,2세) 포함) 담당교사  | 시간제 보육 일시보육반은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 취지 부합하므로 담임교사의 지원근거 마련             |

| 제 목                   | 2015년도   | 2016년도   | 변경사유                       |
|-----------------------|--|--|----------------------------|
| 지원대상<br>(장애아<br>전문교사) | <p>&lt;전문교사 요건&gt;<br/>○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장애아전문교육 과정” 240시간 이수자</p>  | <p>&lt;전문교사 요건&gt;<br/>○ 보육교사교육원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240시간 기 이수자</p>  | 장애아 전문교육과정은 종료되었으므로 규정 명확화 |
| 지원대상                  | <p>※ 중복지원 불가하나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는 중복지원 가능<br/>(보건복지부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특수교사 수당(월20만원/인)을 지원받는 특수교사는 중복지원 가능하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특수교사는 보건복지부지원 수당 지급)</p>                           | (※ 삭제)   | 규정 명확화                     |
|                       | <p>※ 2014년 3월에 지원을 받은 보육학과, 아동학과 졸업자, 학과명에 보육이 포함되는 학과 졸업자에 대하여는 계속 지원하되 ‘15년 말까지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6년 1월 1일부터 지원 중단 (‘14. 3월에 지원을 받지 않은 위 학과 졸업 교사는 영아전문교육 이수자만 지원)</p> | (※ 삭제)   | 2015년도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삭제    |
| 지급기준                  | <p>○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p>   | <p>○ (신설)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p> <p>○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p> <p>○ (신설)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p> | 규정 명확화                     |
| ○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조리원)지원 |  |  |                            |
| 지원기준                  | ○ <신설>   | ○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월 월 신청 기간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 지원 가능   | 규정 명확화                     |

| 제 목                       | 2015년도                   | 2016년도   | 변경사유  |       |        |     |     |     |        |    |    |    |    |     |     |           |   |    |    |
|---------------------------|--------------------------|--|---|-------|--------|-----|-----|-----|--------|----|----|----|----|-----|-----|-----------|---|----|----|
|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  |   |       |        |     |     |     |        |    |    |    |    |     |     |           |   |    |    |
| ○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            |                          |  |   |       |        |     |     |     |        |    |    |    |    |     |     |           |   |    |    |
| 어린이집운영<br>일반원칙            | 6)초과보육의 원칙적 금지<br>(이하생략) | 5) 반별 정원 탄력편성<br>○ 반별 정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되,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보육환경, 어린이집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u>어린이집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별 영유아 수를 아래 기준범위 내에서 달리할 수 있음</u>  | ○ 경기도는 2016.2.26.(금)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기준대로 가결되어 신학기에 맞추어 2016.3.2.부터 시행 |       |        |     |     |     |        |    |    |    |    |     |     |           |   |    |    |
|                           |                          | <table border="1" data-bbox="778 875 1193 1093"> <thead> <tr> <th>반별 정원</th> <th>만0세</th> <th>만1세</th> <th>만2세</th> <th>만3세</th> <th>만4세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원칙</td> <td>3명</td> <td>5명</td> <td>7명</td> <td>15명</td> <td>20명</td> </tr> <tr> <td>탄력편성 가능인원</td> <td>-</td> <td>1명</td> <td>2명</td> <td>3명</td> <td>3명</td> </tr> </tbody> </table> <p>※ 도서·벽지·농어촌 등은 별도의 특례규정(시행규칙 40조) 적용, 이 경우 추가로 반별 탄력편성 불가능</p> <p>- <u>반별 정원을 탄력편성하는 시설은 교사 1인당 보육인원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을 해당 반 보육 교사의 인건비 추가지급, 처우개선 급여, 보조교사 채용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u></p> |   | 반별 정원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탄력편성 가능인원 | - | 1명 | 2명 |
| 반별 정원                     |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이상 |     |     |     |        |    |    |    |    |     |     |           |   |    |    |
| 원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     |     |        |    |    |    |    |     |     |           |   |    |    |
| 탄력편성 가능인원                 | -                        | 1명   | 2명  | 3명    | 3명     |     |     |     |        |    |    |    |    |     |     |           |   |    |    |

## Ⅱ. 2016년 보육정책 방향 및 목표

### 여건 및 추진방향

- 전국의 29.8%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15년 기준  
도 전체 예산의 13.1%가 투입되었으나, 보육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는 지속 증가
  - ※ 어린이집('15년 12월) : 경기도 12,689개소, 전국 42,517개소
  - ※ 예산 투입('15년 최종) : 보육 2조 4,408억원, 도전체 18조 6,316억원
-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 조성,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 정책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정책  
목표

아이·부모·교사가 행복한 경기



중점  
추진  
과제

보육의 공공성  
강화

아이가 행복한  
안심보육 실현

부모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Ⅲ. 2016년 보육사업 추진계획**

---

-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 2. 아이가 행복한 안심보육 실현**
  - 3. 부모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 4.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 1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1-1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 및 가구의 보육부담 완화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 □ 연 혁

- 2013년 3월부터 전계층 확대

#### □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사업량 : 235,762명(남부 174,106명/북부 61,656명)
- 보육료 지원단가
  - 일반아동

(단위 : 원)

| 연령  |      | 지원금 합계    | 부모 보육료  | 기본 보육료  |
|-----|------|-----------|---------|---------|
| 만0세 | 종일   | 801,000   | 418,000 | 383,000 |
|     | 24시간 | 1,010,000 | 627,000 | 383,000 |
| 만1세 | 종일   | 553,000   | 368,000 | 185,000 |
|     | 24시간 | 737,000   | 552,000 | 185,000 |
| 만2세 | 종일   | 425,000   | 304,000 | 121,000 |
|     | 24시간 | 577,000   | 456,000 | 121,000 |

\* 기본보육료 :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만0~2세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장애아동

(단위 : 원)

| 구분  | 지원금 합계  | 부모 보육료  | 기본 보육료  |
|-----|---------|---------|---------|
| 종일  | 840,000 | 438,000 | 402,000 |
| 방과후 | 562,000 | 219,000 | 343,000 |

- 시간연장 보육료

(단위 : 원)

| 구분   | 일반아동  | 장애아동  |
|------|-------|-------|
| 지원단가 | 3,000 | 4,000 |

○ 2016년 총사업비 : 1,216,536백만원(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 구분 | 사업량<br>(명)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235,762    | 1,216,536,000  | 878,130,000 | 212,893,800 | 125,512,200 |    |
| 남부 | 174,106    | 898,392,000    | 645,422,000 | 157,218,600 | 95,751,400  |    |
| 북부 | 61,656     | 318,144,000    | 232,708,000 | 55,675,200  | 29,760,800  |    |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3,938,682,214<br>(2,688,300,193) | 1,428,635,318<br>(1,410,855,660) | 1,293,510,896<br>(1,277,444,533) | 1,216,536,000 |    |
| 남부<br>(집행액) | 2,900,738,490<br>(1,981,073,108) | 1,048,340,490<br>(1,039,353,142) | 954,006,000<br>(941,719,966)     | 898,392,000   |    |
| 북부<br>(집행액) | 1,037,943,724<br>(707,227,085)   | 380,294,828<br>(371,502,518)     | 339,504,896<br>(335,724,567)     | 318,144,000   |    |

□ 2015년도 추진실적

○ 222,458명, 1,277,444,533천원

- 만3~5세 아동을 대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3월 만 5세, 2013년 3월 만 3~4세 확대도입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
- 사업량 : 156,874명(남부 115,104명/북부 41,770명)
- 사업비 : 91,000,000천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
- 지원내용 : 290천원(인, 월)
  - 3~5세 보육료 : 220천원 / 누리과정 운영비(교사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 70천원
- 2016년 총사업비 : 91,000백만원(준예산, 2개월분)

| 구분 | 사업량(명)  | 사업비(천원)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
| 합계 | 156,874 | 91,000,000 |    | 91,000,000 |    |
| 남부 | 115,104 | 66,769,976 |    | 66,769,976 |    |
| 북부 | 41,770  | 24,230,024 |    | 24,230,024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

(단위: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1,075,286,771<br>(971,798,552) | 437,359,453<br>(433,956,993) | 546,927,318<br>(537,841,559) | 91,000,000 |    |
| 남부<br>(집행액) | 785,683,654<br>(707,653,806)   | 318,932,073<br>(316,491,695) | 399,981,605<br>(391,162,111) | 66,769,976 |    |
| 북부<br>(집행액) | 289,603,117<br>(264,144,746)   | 118,427,380<br>(117,465,298) | 146,945,713<br>(146,679,448) | 24,230,024 |    |

**2015년도 추진실적**

- 151,949명, 537,841,559천원

## □ 사업 추진 안내

○ 보육료 : 만3~5세 아동 1인당 220천원

○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 70천원

### ◆ 누리과정 담당 보육교사 지원

- 만3, 4, 5세만으로 구성된 독립반 또는 혼합반 담당 교사 월 300천원 지원
- 만2-3세 혼합반 또는 만2세-유아 혼합반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자격 아동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 반을 구성한 경우 담당교사에게 월 200천원 지원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만3-5세 장애아반의 경우 만3-5세 누리과정 자격 장애아 1명은 월 200천원, 2명 이상은 월 300천원 지원

### ◆ 누리과정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운영지원비)

-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우선 활용), 교재·교구 및 교육기자재, 그 밖의 시·도(시·군·구)에서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 시·도(시·군·구)에서는 지출항목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적용할 수 있으며, 누리과정 수업, 운영 등에 활용하는지 지도·관리 필요

\*차입금 상환, 단순 다과나 회식비용 등 누리과정과 관련 없는 경비사용은 제한

-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관련근거**

- 영유아 보육법 제34조

**연 혁**

- 2012년 1월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에 해당하는 취학아동 중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사업량 : 200명(남부 94명/북부 106명)
- 사업비 : 245,555천원
- 지원내용 : 월 100천원/인
- 2016년 총사업비 : 245,555천원(교부금 50%, 도비 25%, 시군비 25%)

| 구분 | 사업량(명)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교부금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200    | 245,555      | 144,000 | 66,657 | 34,898 |    |
| 남부 | 94     | 114,842      | 68,981  | 31,080 | 14,781 |    |
| 북부 | 106    | 130,713      | 75,019  | 35,577 | 20,117 |    |

**연도별 투자계획**(교부금+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1,028,305<br>(445,643) | 556,144<br>(250,600) | 226,606<br>(195,043) | 245,555 |    |
| 남부<br>(집행액) | 475,885<br>(212,973)   | 251,859<br>(121,242) | 109,184<br>(91,731)  | 114,842 |    |
| 북부<br>(집행액) | 552,420<br>(232,670)   | 304,285<br>(129,358) | 117,422<br>(103,312) | 130,713 |    |

**2015년도 추진실적**

- 167명, 195,043천원

## □ 사업 추진 안내

### ○ 지원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 지원단가

-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
-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

# 1-4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법정저소득층 아동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선택기회 확대 및 균등한 보육서비스 제공

##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17조(비용의 보조)

## □ 연 혁

- 시행시기 : 2010년

## □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아동
- 사업량 : 2,527명(남부 1,920명/북부 607명)
- 사업비 : 1,689,886천원
- 지원내용 :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 51~76천원 지원

| 연령 | 구분     | 보육료<br>(천원) | 정부지원단가<br>(천원) | 차액지원액<br>(천원) |
|----|--------|-------------|----------------|---------------|
| 3세 | 민간어린이집 | 293         | 220            | 73            |
|    | 가정어린이집 | 296         | 220            | 76            |
| 4세 | 민간어린이집 | 271         | 220            | 51            |
|    | 가정어린이집 | 296         | 220            | 76            |
| 5세 | 민간어린이집 | 271         | 220            | 51            |
|    | 가정어린이집 | 296         | 220            | 76            |

※ 해당어린이집의 종일반 기준 실제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분 지원

- 2016년 총사업비 : 1,689,886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구분 | 사업량<br>(명)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2,527      | 1,689,886    |    | 413,514 | 1,276,372 |    |
| 남부 | 1,920      | 1,242,777    |    | 266,094 | 976,683   |    |
| 북부 | 607        | 447,109      |    | 147,420 | 299,689   |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5,109,566<br>(2,549,613) | 1,407,266<br>(1,242,050) | 2,012,414<br>(1,307,563) | 1,689,886 |    |
| 남부<br>(집행액) | 3,760,819<br>(1,801,905) | 940,976<br>(883,054)     | 1,577,066<br>(918,851)   | 1,242,777 |    |
| 북부<br>(집행액) | 1,348,747<br>(747,708)   | 466,290<br>(358,996)     | 435,348<br>(388,712)     | 447,109   |    |

□ 2015년도 추진실적

- 2,740명, 1,307,563천원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법정저소득층 아동(만3세~5세)이 민간어린이집(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지원 대상에 포함) 및 가정어린이집 이용시 실제 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 할 경우
- 도내에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법정저소득층 아동(차상위포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 지원방식

-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차액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차액보육료는 '일할계산' 하여 지원
  - (입소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급
  - (퇴소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 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급
-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구간으로 구분
  - 출석일수가 1~5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25%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100%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 출석인정을 위해서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이 소득이나 재산변동 등으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당 결정일이 속하는 달은 지원

○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



○ 누리과정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어린이집 이용 부모의 보육비 부담 경감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17조(비용의 보조)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3월(2013년 3월부터 3~4세까지 확대)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누리과정 아동
- 사업량 : 121,348명(남부 87,284명/북부 34,064명)
- 사업비 : 43,685,564천원
- 지원단가 : 3만원(월/인)
  - ※ 단, 차액이 3만원 이하 발생하는 경우 차액 발생 범위 내에서 지원
- 2016년 총사업비 : 43,685,564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구분 | 사업량<br>(명)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121,348    | 43,685,564   |    | 9,940,236 | 33,745,328 |    |
| 남부 | 87,284     | 31,422,385   |    | 6,541,139 | 24,881,246 |    |
| 북부 | 34,064     | 12,263,179   |    | 3,399,097 | 8,864,082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130,489,680<br>(77,853,224) | 42,653,753<br>(40,124,055) | 44,150,363<br>(37,729,169) | 43,685,564 |    |
| 남부<br>(집행액) | 93,267,103<br>(56,007,850)  | 29,864,161<br>(28,833,163) | 31,980,557<br>(27,174,687) | 31,422,385 |    |
| 북부<br>(집행액) | 37,222,577<br>(21,845,374)  | 12,789,592<br>(11,290,892) | 12,169,806<br>(10,554,482) | 12,263,179 |    |

## □ 2015년도 추진실적

- 105,834명, 37,729,169천원

## □ 사업 추진 안내

### ○ 지원대상

-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만3세~5세)이 민간어린이집(미지원 법인 외 포함) 및 가정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차액 중 일부(3만원)를 지원
- 도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 도내에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 지원방식

- 원칙적으로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를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 차액보육료 지원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차액보육료는 '일할계산' 하여 지원
  - (입소아동)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급
  - (퇴소아동) 퇴소월 1일부터 퇴소 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지급
-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구간으로 구분
  - 출석일수가 1~5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25%
  - 출석일수가 6~10일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50%
  - 출석일수가 11일 이상 : 월 차액보육료 단가의 100%
- 아동의 질병·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
-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
  - ※ 출석인정을 위해서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병원 등 발급),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군·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 ○ 지원시점 : 신청일 기준

# 1-6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양육수당)

## □ 연 혁

- 사업시행 : 2009년 7월(2013년 3월부터 전 계층 확대)

## □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취학전 만84개월 미만 영유아
- 사업량 : 266,275명(남부청 203,818, 북부 62,457)
- 지원내용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 |
|---------|-------|---------|----------|
| 0 ~ 11  | 200천원 | 200천원   | 200천원    |
| 12 ~ 23 | 150천원 | 177천원   |          |
| 24 ~ 35 | 100천원 | 156천원   |          |
| 36 ~ 47 |       | 129천원   | 100천원    |
| 48 ~ 83 |       | 100천원   |          |

- 2016년 총사업비 : 481,740백만원(국비 65%, 도비 17.5%, 시군비 17.5%)

| 구분 | 사업량<br>(명)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266,275    | 481,740,000  | 347,497,000 | 84,304,500 | 49,938,500 |    |
| 남부 | 203,818    | 369,320,000  | 265,170,000 | 64,631,000 | 39,519,000 |    |
| 북부 | 62,457     | 112,420,000  | 82,327,000  | 19,673,500 | 10,419,500 |    |

##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1,471,071,520<br>(974,191,326) | 501,982,720<br>(488,383,950) | 487,348,800<br>(485,807,376) | 481,740,000 |    |
| 남부<br>(집행액) | 1,129,487,200<br>(748,283,154) | 385,940,000<br>(375,330,488) | 374,227,200<br>(372,952,666) | 369,320,000 |    |
| 북부<br>(집행액) | 341,584,320<br>(225,908,172)   | 116,042,720<br>(113,053,462) | 113,121,600<br>(112,854,710) | 112,420,000 |    |

## □ 2015년도 추진실적

- 268,687명, 485,807,376천원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나.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 0~11                    | 200천원 | 0~11                    | 200천원   | 0~35                    | 200천원     |
| 12~23                   | 150천원 | 12~23                   | 177천원   |                         |           |
| 24개월 이상<br>~<br>84개월 미만 | 100천원 | 24~35                   | 156천원   | 36개월 이상<br>~<br>84개월 미만 | 100천원     |
|                         |       | 36~47                   | 129천원   |                         |           |
|                         |       | 48개월 이상<br>~<br>84개월 미만 | 100천원   |                         |           |

다.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 전 연령의 12월까지 지급
  -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일까지 지원
  - ※ 지원기간 산출식 : 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12월까지 지원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채정한 후 지원
  -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단,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 관련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 시스템 상 정지 일자는 출국 후 90일이 되는 날로 함(지급 기준은 상기와 동일)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예) '16년 기준 '09년생 아동의 경우에는 취학유예 시 양육수당 지원이 불가(누리과정 3년 지원 여부 불문)하나, '10. 1. 1일 이후 출생 아동의 경우에는 누리 과정 3년 지원 유무에 따라 가정양육수당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라. 지급일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마.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 조치

바. 출생아 소급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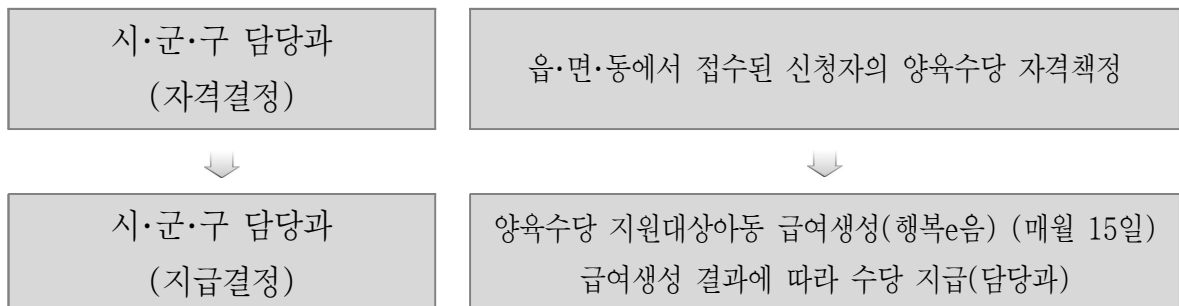
- 대상 : 아동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 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 60일이 되는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 양육수당 신청당시 유효한 주민번호 발급 등 지원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 지급방법 : 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

사.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아.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처리 절차 개요



※ 사회복지급여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 지원

- (자격 결정 및 지급) 시·군·구 담당과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매월 급여 생성 및 지급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 : 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중복지원 불가) 동일 월에 대해 양육수당과 보육료는 병급 불가
  -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원되므로, 기본 보육료 신청시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파악하여 신청, 특히 시군구에서는 승인 시 반드시 확인 후 조치(다만, 보육료, 양육수당 간 자격변동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별도 지급 가능)
- (농어촌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대상자가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지원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 여부 확정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지원 연도 중에 도시계획구역 변경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정부정책 변경에 따라 농어촌지역에서 제외되더라도 당해 년도에 한해서는 계속 지원
  - 사업시행 연도 중 아동을 포함한 가구원이 도시지역으로의 전출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당해월부터 지원을 중단 (단, 전출 해당월 농어촌 거주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당해월 한해 양육수당 지급)

자.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 고지('15. 9. 19. 시행)

-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육비용 신청 관련 정보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7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8('15.9.19 시행)
  - (고지대상) 출생자의 보호자,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고지 시기, 횟수) 출생자의 보호자 : 출생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 보육비용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영유아의 보호자 : 매년 1월말까지 연 1회
  - (고지방법) 아동 주소지 관한 지자체(시·군·구)에서 서면(우편) 고지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및 공보육 인프라 구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연 혁**

- (보건복지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포함 : ‘14~’ 17년 매년 150개소 확충
- (경기도) 민선6기 공약사업 : ‘14년~’ 18년 매년 20개소 확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31개 시·군
- 사업량 : 20개(남부 14, 북부 6), ※ 3월말 현재 18개(남부 10, 북부 8)  
※ 분기별 수요 파악 후 국비 추가 신청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목표 : 매년 20개소 확충( ‘14년~’ 18년 100개 확충)

| 연도별  | 사업량(개소) |    |    | 유형                    | 비고  |
|------|---------|----|----|-----------------------|-----|
|      | 합계      | 남부 | 북부 |                       |     |
| 합계   | 72      | 49 | 22 | 신축37, 공동주택(기존)리모델링 34 |     |
| 2014 | 37      | 26 | 11 | 신축25, 공동주택(기존)리모델링 12 |     |
| 2015 | 22      | 17 | 5  | 신축7, 공동주택(기존)리모델링 15  |     |
| 2016 | 12      | 6  | 6  | 신축5, 공동주택(기존)리모델링 7   | 예산서 |

※ ‘16년 1월 추가(추경) : 7개소(남부 5, 북부 2), 사업취소(하남) 1개소

○ **사업내용**

- 저소득밀집지역 등 보육취약계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원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비 지원 등
- 지원내용
  - 일반신축 : 개소당 최대 396㎡/502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공동주택 리모델링 : 개소당 50백만원
  - 기자재 구입비 지원 : 개소당 신축 10백만원, 공동주택 30백만원

○ 총사업비 : 2,964,58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구분 | 사업량<br>(개소)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계  | 12          | 2,964,580      | 1,482,290 | 741,145 | 741,145 |    |
| 남부 | 6           | 1,345,840      | 672,920   | 336,460 | 336,460 |    |
| 북부 | 6           | 1,618,740      | 809,370   | 404,685 | 404,685 |    |

※ 총 18개( '16.3월말기준) : 남부 10개소, 1,347백만원(국도비)  
북부 8개소, 1,334백만원(국도비)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 구분           | 계                          | 2014년(37개)<br>(남 26, 북부 11) | 2015년(22개)<br>(남 17, 북부 5) | 2016년(18개)<br>(남 10, 북부 8) | 비고                |
|--------------|----------------------------|-----------------------------|----------------------------|----------------------------|-------------------|
| 합 계<br>(집행액) | 23,496,865<br>(13,919,315) | 13,971,590<br>(13,919,315)  | 17,770,405<br>(5,604,855)  | 2,964,580                  |                   |
| 남부<br>(집행액)  | 18,750,265<br>(11,655,514) | 11,676,650<br>(11,655,514)  | 5,727,775<br>(4,771,935)   | 1,345,840                  | 본예산<br>기준<br>추경확보 |
| 북부<br>(집행액)  | 4,746,600<br>(2,263,801)   | 2,294,940<br>(2,263,801)    | 832,920<br>(832,920)       | 1,618,740                  |                   |

□ 2015년도 추진실적 : 총 22개소(남부 17, 북부 5)

○ 신축 7개소, 공동주택(기존)리모델링 15개소

□ 현안 및 문제점

- 어린이집 부지확보의 어려움, 신축시 국비 지원단가와 실제 소요비용(약 10억원 내외)과의 격차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
- 공동주택 관리동 무상임대, 기업 등 민간 기부채납 활성화 등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 추진계획

○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수요 파악(2차) 및 국비 신청 : '16. 3월



# 참고 1

## 2015~2016년 시군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

(단위:개소)

| 2016년 |        |             |       |            | 2015년 |    |             |
|-------|--------|-------------|-------|------------|-------|----|-------------|
| 시군    | 계      | 당초 반영       | 추경 반영 | 비고         | 시군    | 확충 | 비고          |
| 총계    | 18     | 12(11)      | 7     | 신축6,리모델링12 | 총계    | 22 | 신축7, 리모델링15 |
| 남부    | 11(10) | 6(5)        | 5     | 신축3,리모델링7  | 남부    | 17 | 신축7, 리모델링10 |
| 성남    | 1      | 1           |       | 리모델링1      | 수원    | 1  | 리모델링(기존)1   |
| 부천    | 2      | 2           |       | 신축1,리모델링1  | 성남    | 1  | 신축1         |
| 김포    | 1      | 1           |       | 리모델링1      | 부천    | 1  | 신축1         |
| 여주    | 1      | 1           |       | 신축1        | 안산    | 1  | 신축1         |
| 하남    | 1      | (1)<br>사업취소 |       | (리모델링1)    | 시흥    | 4  | 신축1, 리모델링3  |
| 화성    | 5      |             | 5     | 신축1,리모델링4  | 화성    | 4  | 신축1, 리모델링3  |
|       |        |             |       |            | 평택    | 1  | 리모델링1       |
|       |        |             |       |            | 광주    | 1  | 신축1         |
|       |        |             |       |            | 하남    | 2  | 리모델링2       |
|       |        |             |       |            | 양평    | 1  | 신축1         |
| 북부    | 8      | 6           | 2     | 신축3,리모델링5  | 북부    | 5  | 리모델링5       |
| 남양주   | 3      | 2           | 1     | 신축2,리모델링1  | 남양주   | 4  | 리모델링4       |
| 포천    | 1      | 1           |       | 신축1        | 고양    | 1  | 리모델링1       |
| 구리    | 2      | 2           |       | 리모델링2      |       |    |             |
| 고양    | 2      | 1           | 1     | 리모델링2      |       |    |             |

※ 2016년 본예산 반영 이후 1개소 사업취소(하남) : 추경 감액반영

## 참고 2

## 시군별 국공립어린이집 현황(15.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 구 분        | 국공립어린이집 수  | 정 원           | 현 원           | 비 고 |
|------------|------------|---------------|---------------|-----|
| <b>총 계</b> | <b>595</b> | <b>42,848</b> | <b>39,052</b> |     |
| <b>남부</b>  | <b>431</b> | <b>32,270</b> | <b>29,515</b> |     |
| 수원시        | 35         | 2,797         | 2,501         |     |
| 성남시        | 57         | 5,311         | 4,880         |     |
| 용인시        | 31         | 2,084         | 2,025         |     |
| 부천시        | 29         | 1,849         | 1,670         |     |
| 안산시        | 21         | 2,097         | 1,845         |     |
| 안양시        | 34         | 2,300         | 2,201         |     |
| 화성시        | 27         | 1,613         | 1,466         |     |
| 평택시        | 17         | 1,230         | 1,111         |     |
| 시흥시        | 22         | 1,336         | 1,246         |     |
| 김포시        | 20         | 1,245         | 1,167         |     |
| 광명시        | 25         | 1,867         | 1,788         |     |
| 광주시        | 11         | 921           | 870           |     |
| 군포시        | 19         | 1,265         | 1,153         |     |
| 오산시        | 25         | 1,998         | 1,826         |     |
| 이천시        | 12         | 910           | 732           |     |
| 안성시        | 9          | 638           | 537           |     |
| 의왕시        | 11         | 798           | 704           |     |
| 하남시        | 7          | 524           | 378           |     |
| 여주시        | 1          | 79            | 78            |     |
| 양평군        | 10         | 756           | 722           |     |
| 과천시        | 8          | 652           | 615           |     |
| <b>북부</b>  | <b>164</b> | <b>10,578</b> | <b>9,537</b>  |     |
| 고양시        | 48         | 3,235         | 3,013         |     |
| 남양주시       | 31         | 1,688         | 1,569         |     |
| 의정부시       | 12         | 1,146         | 1,046         |     |
| 파주시        | 16         | 864           | 781           |     |
| 양주시        | 16         | 1,067         | 894           |     |
| 구리시        | 6          | 447           | 420           |     |
| 포천시        | 16         | 990           | 764           |     |
| 동두천시       | 8          | 553           | 482           |     |
| 가평군        | 4          | 236           | 234           |     |
| 연천군        | 7          | 352           | 334           |     |

### 참고 3

## 2016년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 현황(총12개소)

###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5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7개소)

| 연번 | 시 군  | 어린이집명                       | 소재지                                  | 유형           | 연면적<br>정원       | 사업비(천원)  | 비고           |
|----|------|-----------------------------|--------------------------------------|--------------|-----------------|--|--------------|
| 1  | 여주시  | 여주시립<br>어린이집(가칭)            | 여주시 상동<br>363-1번지 일원                 | 신축           | 330㎡<br>70명     | 총 : 512,920<br>국 : 256,460<br>도 : 128,730<br>시 : 128,730 | 농어촌          |
| 2  | 남양주시 | 평내<br>어린이집(가칭)              | 남양주시 평내동<br>605번지                    | 신축           | 400㎡<br>90명     | 총 : 512,920<br>국 : 256,460<br>도 : 128,730<br>시 : 128,730 | 국공립<br>미설치지역 |
| 3  | 포천시  | 산업단지내<br>어린이집(미정)           | 포천시 군내면 용정리<br>343-1번지 일원            | 신축           | 269.3㎡<br>62명   | 총 : 502,920<br>국 : 186,373<br>도 : 93,186<br>시군 : 93,186  | 산업단지         |
| 4  | 남양주시 | 도농<br>어린이집(가칭)              | 남양주시 도농동<br>다산진건<br>공동주택지구내<br>근생3부지 | 대체신축         | 400㎡<br>90명     | 총 : 512,920<br>국 : 256,460<br>도 : 128,730<br>시 : 128,730 | 국공립<br>미설치지역 |
| 5  | 부천시  | 상동<br>어린이집                  |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br>16번길 54               | 대체신축         | 516㎡<br>102명    | 총 : 512,920<br>국 : 256,460<br>도 : 128,730<br>시 : 128,730 | 저소득층<br>밀집지역 |
| 6  | 김포시  | 시립호수<br>어린이집                | 김포시 구래동<br>김포한강A<br>a2BL블럭           | 공동주택<br>리모델링 | 319㎡<br>70명     | 총 : 80,000<br>국 : 40,000<br>도 : 20,000<br>시 : 20,000     | 저소득층<br>밀집지역 |
| 7  | 부천시  | 옥길<br>어린이집                  | 부천시 소사구<br>옥길지구 A1블럭                 | 공동주택<br>리모델링 | 759.74㎡<br>129명 | 총 : 80,000<br>국 : 40,000<br>도 : 20,000<br>시 : 20,000     | 저소득층<br>밀집지역 |
| 8  | 구리시  | 구리갈매 A1BL<br>어린이집           | 구리시 구리갈매<br>공동주택지구내                  | 공동주택<br>리모델링 | 298.64㎡<br>69명  | 총 : 80,000<br>국 : 40,000<br>도 : 20,000<br>시 : 20,000     | 저소득층<br>밀집지역 |
| 9  | 고양시  | (가칭)삼송지구<br>A-4블럭<br>시립어린이집 | 고양시<br>삼송택지개발지구<br>A-4블럭             | 공동주택<br>리모델링 | 759.74㎡<br>120명 | 총 : 80,000<br>국 : 40,000<br>도 : 20,000<br>시 : 20,000     | 저소득층<br>밀집지역 |
| 10 | 구리시  | 구리갈매 A2BL<br>어린이집           | 구리시 구리갈매<br>공동주택지구내                  | 공동주택<br>리모델링 | 385.38㎡<br>92명  | 총 : 80,000<br>국 : 40,000<br>도 : 20,000<br>시 : 20,000     | 저소득층<br>밀집지역 |
| 11 | 성남시  | 가칭)위례2<br>어린이집              | 성남시 위례지구<br>A2-4블럭                   | 공동주택<br>리모델링 | 513.55㎡<br>70명  | 총 : 80,000<br>국 : 40,000<br>도 : 20,000<br>시 : 20,000     | 저소득층<br>밀집지역 |
| 12 | 하남시  | 하남미사<br>A-17BL<br>(미정)      | 하남시<br>하남미사 A-17BL                   | 공동주택<br>리모델링 | 336.43㎡<br>78명  | 총 : 80,000<br>국 : 40,000<br>도 : 20,000<br>시 : 20,000     | 저소득층<br>밀집지역 |

-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및 공보육 인프라 구축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공공형 어린이집 업무매뉴얼

□ **사업개요**

- 대 상 :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등 일부 제외)
- 기 간 : '16. 1월 ~ 12월
- 사 업 량 : 497개소(남부 368, 북부 129)
- 사 업 비 : 17,936백만원(국비 10,100 도비 4,746 시군비 3,090)  
\* 신규 선정 후 내시 변경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증액 예정

□ **지 원 액**

- (舊운영비) 정원규모별 정액지원 (①번표)  
(新운영비) 교사 수, 아동현원 등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지원(②번표)

① 기존 운영중인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13~14년 선정기관, 유효기간 만료시 까지)

| 정원    | 20인 이하 | 21~35인 | 36~49인  | 50~62인   | 63~76인  |
|-------|--------|--------|---------|----------|---------|
| 월 지원액 | 116만원  | 253만원  | 268만원   | 445만원    | 460만원   |
| 정원    | 77~86인 | 87~97인 | 98~111인 | 112~123인 | 124인 이상 |
| 월 지원액 | 565만원  | 580만원  | 829만원   | 844만원    | 875만원   |

② 신규 및 재선정 기관 및 기존 운영중인 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   | 구분         | 단가    | 기준         |
|---|------------|-------|------------|
| 1 | 보육교사 급여상승분 | 35만원  | 종일반 1개소당   |
| 2 | 유아반 운영비    | 60만원  | 3~5세반 1개소당 |
| 3 | 교육·환경개선비   | 1.5만원 | 재원아동 1인당   |

\* 전월 현황자료를 토대로 산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 예산현황

○ 총사업비 : 17,936,207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구분 | 사업량<br>(개소)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계  | 497         | 17,936,207     | 10,100,000 | 4,746,567 | 3,089,640 |    |
| 남부 | 368         | 12,865,847     | 7,285,928  | 3,395,309 | 2,184,610 |    |
| 북부 | 129         | 5,070,360      | 2,814,072  | 1,351,258 | 905,030   |    |

□ 연도별 내역(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 | 50,518,467 | 15,826,912 | 16,755,348 | 17,936,207 |    |
| 남부 | 37,008,007 | 11,859,265 | 12,282,895 | 12,865,847 |    |
| 북부 | 13,510,460 | 3,967,647  | 4,472,453  | 5,070,360  |    |

□ 2015년도 추진실적

○ 공공형 어린이집 495개소(남부 366, 북부 129)

- '13년 401개소 → '14년 435개소 → '15년 495개소

# 참고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15.12월말 기준)

| 구 분        | 규 모        | 20인 이하     | 21~35인    | 36~49인    | 50~62인    | 63~76인    | 77~86인    | 87~97인    | 98~111인   | 112~123인 | 124인 이상   |
|------------|------------|------------|-----------|-----------|-----------|-----------|-----------|-----------|-----------|----------|-----------|
| <b>합 계</b> | <b>495</b> | <b>252</b> | <b>39</b> | <b>46</b> | <b>28</b> | <b>21</b> | <b>20</b> | <b>34</b> | <b>33</b> | <b>6</b> | <b>16</b> |
| <b>남부계</b> | <b>366</b> | <b>189</b> | <b>30</b> | <b>34</b> | <b>24</b> | <b>17</b> | <b>14</b> | <b>20</b> | <b>23</b> | <b>3</b> | <b>12</b> |
| 수원시        | 34         | 23         | 3         | 3         | 3         |           |           |           | 2         |          |           |
| 성남시        | 22         | 21         | 1         |           |           |           |           |           |           |          |           |
| 부천시        | 33         | 22         | 2         | 3         | 2         | 1         | 1         | 2         |           |          |           |
| 용인시        | 27         | 16         | 1         | 3         | 2         | 1         | 1         | 1         | 1         |          | 1         |
| 안산시        | 33         | 10         | 4         | 2         | 7         | 1         | 2         | 3         | 4         |          |           |
| 안양시        | 19         | 13         |           | 2         |           | 1         | 1         |           | 2         |          |           |
| 평택시        | 28         | 10         | 4         | 3         |           | 2         | 1         | 2         | 3         | 1        | 2         |
| 시흥시        | 16         | 5          | 4         | 5         | 1         | 1         |           |           |           |          |           |
| 화성시        | 27         | 17         | 4         | 3         |           |           | 1         | 1         | 1         |          |           |
| 광명시        | 24         | 16         |           | 3         | 3         |           | 2         | 1         |           |          |           |
| 군포시        | 1          | 1          |           |           |           |           |           |           |           |          |           |
| 광주시        | 9          | 4          |           |           |           | 1         | 1         |           |           | 1        | 2         |
| 김포시        | 9          | 5          | 2         |           | 2         |           |           |           |           |          |           |
| 이천시        | 19         | 5          | 3         | 2         | 1         |           |           | 4         | 2         |          | 2         |
| 안성시        | 28         | 11         |           |           | 2         | 6         | 1         | 4         | 2         | 1        | 1         |
| 오산시        | 6          | 4          |           | 1         |           |           |           |           |           |          | 1         |
| 하남시        | 8          | 2          |           | 2         |           | 1         | 1         |           | 1         |          | 1         |
| 의왕시        | 2          | 1          |           |           |           |           | 1         |           |           |          |           |
| 여주군        | 13         | 2          | 1         | 2         |           | 1         | 1         | 1         | 4         |          | 1         |
| 양평군        | 8          | 2          | 1         |           | 1         | 1         |           | 1         | 1         |          | 1         |
| 과천시        |            |            |           |           |           |           |           |           |           |          |           |
| <b>북부계</b> | <b>129</b> | <b>63</b>  | <b>9</b>  | <b>12</b> | <b>4</b>  | <b>4</b>  | <b>6</b>  | <b>14</b> | <b>10</b> | <b>3</b> | <b>4</b>  |
| 고양시        | 29         | 25         |           | 2         | 1         |           | 1         |           |           |          |           |
| 남양주        | 27         | 16         | 2         | 3         |           | 1         | 2         | 2         | 1         |          |           |
| 의정부        | 14         | 7          | 2         | 1         |           |           |           | 2         | 2         |          |           |
| 파주시        | 14         | 4          | 1         | 2         | 2         |           |           | 3         | 1         | 1        |           |
| 구리시        | 6          | 3          | 1         |           |           | 1         |           | 1         |           |          |           |
| 양주시        | 7          | 2          | 1         | 1         |           |           | 1         | 1         | 1         |          |           |
| 포천시        | 20         | 5          | 2         |           | 1         | 2         |           | 2         | 3         | 2        | 3         |
| 동두천        | 4          | 1          |           |           |           |           | 1         | 1         | 1         |          |           |
| 가평군        | 6          |            |           | 1         |           |           | 1         | 2         | 1         |          | 1         |
| 연천군        | 2          |            |           | 2         |           |           |           |           |           |          |           |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직장보육서비스 확대로 일·가정의 양립 지원 및 여성의 고용촉진 확대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 설치), 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 **사업개요**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단독 설치가 어려운 경우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여야 함.

□ **사업추진절차 및 계획**

-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 ※ 최초 이행명령→(상당한 기간을 부여) 미이행시 다시 이행명령→(상당한 기간을 부여)이행 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문서 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1회), 미이행시 문서계고→(상당한 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부과(2회)(1년간 2회)
  - 이행강제금(매회 1억원이내) 부과 예정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

□ **2015년 추진실적**

- 2015년 12월말 170개소(남부 127, 북부 43)
  - '14년 12월말 151개소(남부 118, 북부 33)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현황

(2015.12월말 기준)

| 구분  | 계   | 정원(명)  | 현원(명)  | 보육교직원(명) | 직영  | 위탁 |
|-----|-----|--------|--------|----------|-----|----|
| 경기도 | 170 | 13,420 | 10,573 | 2,681    | 120 | 50 |

1. 의무사업장 판단기준 관련

**Q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장”은 “단위사업장”으로서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로 동일 장소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로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육아휴직자, 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합니다. 다만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은 제외시킵니다.

**Q2** “단위사업장”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조직(도)로 보완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의 계선 조직에 포함되어 있고 인근에 위치에 있으면 하나의 단위사업장으로 봅니다.(ex. 복지부(아름동), 보육정책국(어진동)인 경우 하나의 단위사업장)

**Q3** 단시간근로자가 많아 연중 상시근로자가 변동이 심한 사업장은 근로자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A3 월별로 평균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평균값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Q4** 대학의 경우, 캠퍼스에 여러 동의 건물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디까지를 포함하여 단위사업장으로 보나요?

A4 대학의 경우 여러 개의 건물이 하나의 캠퍼스를 이루는 형태이므로, 캠퍼스 내 흩어져 있는 건물을 모두 포함하여 하나의 단위사업장으로 봅니다.

2.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관련

**Q1** 어린이집 보육 정원 내 사업장 근로자 자녀의 최소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A1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속 자녀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보육사업안내6pg)

**Q2**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사업주의 비용부담액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법령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Q3** 여러 사업장 공동설치의 경우 비용부담 및 보육아동 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사업장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나 개별 사업장이 어느 정도 이상의 비용부담 및 보육아동 배정을 하여야 합니다.

3. 위탁보육 관련

**Q1** 위탁보육의 의무이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1 위탁보육으로 의무이행을 하려면 보육수요인 ‘사업장 직원의 전체 영유아 자녀’의 30% 이상이 위탁보육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Q2** 위탁보육하고자 하나, 보육수요 결과 실제 위탁보육 수요가 없을 때 이를 정당한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2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 중 0~5세 영유아 아동이 전혀 없는 경우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명단공표심의회 심의를 통과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시 소명절차 등에서 소명하여 인정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Q3** 유치원에도 위탁보육을 할 수 있나요?

A3 유치원과는 위탁보육 계약을 맺을 수 없으며, 사업장과 위탁보육 계약을 맺지 않은 유치원 재원 원아는 위탁보육 지원을 받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치원 재원의 경우 등을 감안하여 위탁보육비율을 30%로 낮게 설정한 것임

**Q4** 위탁보육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4 위탁계약서를 통해 어린이집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위탁계약서 및 사업장이 위탁 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위탁보육으로의 의무이행이 인정됩니다.

**Q5** 위탁보육은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A5 위탁보육 어린이집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현재 다니고 있거나 다니기를 희망하는 어린이집과 모두 위탁보육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Q6** 위탁보육계약서는 어떻게 기재하나요?

A6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위탁보육 계약서 양식(보육사업안내 부록 첨부)을 활용하되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문구 등을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Q7** 위탁보육을 어린이집과 맺기 위해 노력하는데, 어린이집에서 회계 상 인건비 외 지출이 어렵다고 기피합니다.

A7 특별활동비 등 부모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 잔액을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으나('15) 16년부터 잔액을 운영비에도 충당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Q8** 위탁보육시 위탁보육료는 얼마나 지급하여야 하나요?

A8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연령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Q9** 맞벌이 부모로서 아빠는 A사업장, 엄마는 B사업장에 근무하며 모두 의무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이 때 양쪽 사업장에서 한 아이에게 동시에 위탁보육계약 체결 및 지원이 가능한가요?

A9 양 쪽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위탁보육시 위탁보육료 지급 방식 문의
  - 반드시 어린이집에 지급하여야 하나요? → 그렇습니다.
  - 부모부담금이 위탁보육료보다 적을 때 차액을 환불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환불해주어야 하나요? → 환불할 필요 없이 지침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부담금이 위탁보육료보다 클 때 어린이집은 차액을 어찌 충당해야 하나요? → 차액만큼을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행강제금 시행 시기 관련**

**Q1** 실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1 '16.1~ 부과 가능합니다. 원칙은 지자체가 직접 조사하여서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명단공표 결과를 참조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Q2** '15년중에는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설치를 계획중이며, 16년 초 준공하여 하반기 개원예정일 경우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2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이르러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모에게 어린이집 선택의 합리적 기준 제공 및 영유아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보육환경 제공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인증),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인증지표 : 어린이집 규모, 유형별 3종(40인이상, 39인이하, 장애아전문)
- 인증과정 : 3단계 (참여확정 → 현장관찰 → 심의)
- 인증주기 : 3년(인증유효기간 : 만3년, 기간만료 전후 재신청 인증진행)
- 인증취소 : 행정처분, 휴·폐지 등
- 평가인증 3차지표 시범사업 실시('14.11 ~ )
  - 지표 통합 및 간소화(55~75 항목 → 50 항목)
  - 아동학대, 안전관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항목 강조
  - 보육일지 확인기간 축소(3개월→1개월), 현장관찰주간 축소(2주→1주) 등

□ **연도별 추진실적**

- 평가인증 신규 통과 현황

(단위 : 개소, %)

| 구 분   | 전년도말 현재 전체어린이집수(A) | 신규인증 통과 어린이집 누계수(B) | 평가인증을 (B/A)*100 | 비고 |
|-------|--------------------|---------------------|-----------------|----|
| 2013년 | 12,870             | 12,244              | 95.1            |    |
| 2014년 | 13,364             | 14,101              | 105.5           |    |
| 2015년 | 13,259             | 18,623              | 116.3           |    |

- 평가인증 유지율 현황

(단위 : 개소, %)

| 구 분   | 전체어린이집수(A) |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수(B) | 평가인증을 (B/A)*100 | 비고 |
|-------|------------|------------------|-----------------|----|
| 2013년 | 13,364     | 9,012            | 67.4            |    |
| 2014년 | 13,264     | 9,871            | 74.4            |    |
| 2015년 | 12,689     | 9,826            | 77.4            |    |

# 참고 1

## 시·군별 평가인증 통과 현황

(2015. 12월말 기준)

| 구분          | 전체 어린이집수<br>( '14년말) | 신규인증 참여       |              | 신규인증 통과       |              |
|-------------|----------------------|---------------|--------------|---------------|--------------|
|             |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 <b>전국현황</b> | <b>43,742</b>        | <b>63,586</b> | <b>145.4</b> | <b>52,717</b> | <b>120.5</b> |
| <b>경기도</b>  | <b>13,259</b>        | <b>18,623</b> | <b>140.5</b> | <b>15,417</b> | <b>116.3</b> |
| 남부 계        | 9,501                | 13,216        | 139.1        | 11,074        | 116.6        |
| 수원시         | 1,311                | 1,606         | 122.5        | 1,371         | 104.6        |
| 성남시         | 761                  | 981           | 128.9        | 841           | 110.5        |
| 부천시         | 635                  | 946           | 149.0        | 802           | 126.3        |
| 용인시         | 1,161                | 1,564         | 134.7        | 1,287         | 110.9        |
| 안산시         | 739                  | 1,095         | 148.2        | 916           | 124.0        |
| 안양시         | 588                  | 870           | 148.0        | 750           | 127.6        |
| 평택시         | 431                  | 579           | 134.3        | 469           | 108.8        |
| 시흥시         | 428                  | 740           | 172.9        | 650           | 151.9        |
| 화성시         | 713                  | 1,057         | 148.2        | 895           | 125.5        |
| 광명시         | 390                  | 519           | 133.1        | 442           | 113.3        |
| 군포시         | 315                  | 385           | 122.2        | 308           | 97.8         |
| 광주시         | 392                  | 496           | 126.5        | 394           | 100.5        |
| 김포시         | 411                  | 543           | 132.1        | 425           | 103.4        |
| 이천시         | 174                  | 265           | 152.3        | 210           | 120.7        |
| 안성시         | 241                  | 381           | 158.1        | 324           | 134.4        |
| 오산시         | 266                  | 408           | 153.4        | 352           | 132.3        |
| 하남시         | 163                  | 287           | 176.1        | 216           | 132.5        |
| 의왕시         | 189                  | 245           | 129.6        | 209           | 110.6        |
| 여주시         | 77                   | 108           | 140.3        | 93            | 120.8        |
| 양평군         | 64                   | 76            | 118.8        | 62            | 96.9         |
| 과천시         | 52                   | 65            | 125.0        | 58            | 111.5        |
| 북부 계        | 3,758                | 5,407         | 143.9        | 4,343         | 115.6        |
| 고양시         | 1,114                | 1,524         | 136.8        | 1,231         | 110.5        |
| 남양주시        | 718                  | 1,134         | 157.9        | 917           | 127.7        |
| 의정부시        | 572                  | 872           | 152.4        | 717           | 125.3        |
| 파주시         | 529                  | 672           | 127.0        | 523           | 98.9         |
| 구리시         | 173                  | 247           | 142.8        | 196           | 113.3        |
| 양주시         | 294                  | 453           | 154.1        | 349           | 118.7        |
| 포천시         | 151                  | 215           | 142.4        | 174           | 115.2        |
| 동두천시        | 129                  | 191           | 148.1        | 156           | 120.9        |
| 가평군         | 38                   | 57            | 150.0        | 45            | 118.4        |
| 연천군         | 40                   | 42            | 105.0        | 35            | 87.5         |

※ 신규인증 통과외의 경우, 인증취소 후 신규인증으로 다시 참여한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인증율이 100%를 넘을 수 있음

## 참고 2

## 시·군별 평가인증 유지율 현황

(2015. 12월말 기준)

| 구 분  | 전체 어린이집(A)<br>( '15년말) | 평가인증 유지 어린이집<br>(B) ( '15년말) | (B/A) × 100 | 비고 |
|------|------------------------|------------------------------|-------------|----|
| 전 국  | 42,517                 | 33,496                       | 78.8        |    |
| 경기도  | 12,689                 | 9,826                        | 77.4        |    |
| 남부계  | 9,148                  | 7,204                        | 79.2        |    |
| 수원시  | 1,266                  | 972                          | 76.8        |    |
| 성남시  | 729                    | 615                          | 84.4        |    |
| 부천시  | 617                    | 539                          | 87.4        |    |
| 용인시  | 1,099                  | 843                          | 76.7        |    |
| 안산시  | 680                    | 501                          | 73.7        |    |
| 안양시  | 540                    | 501                          | 92.8        |    |
| 평택시  | 427                    | 303                          | 71.0        |    |
| 시흥시  | 421                    | 354                          | 84.1        |    |
| 화성시  | 748                    | 568                          | 75.9        |    |
| 광명시  | 365                    | 285                          | 78.1        |    |
| 군포시  | 297                    | 188                          | 63.3        |    |
| 광주시  | 366                    | 236                          | 64.5        |    |
| 김포시  | 408                    | 305                          | 74.8        |    |
| 이천시  | 173                    | 151                          | 87.3        |    |
| 안성시  | 229                    | 191                          | 83.4        |    |
| 오산시  | 257                    | 238                          | 92.6        |    |
| 하남시  | 172                    | 129                          | 75.0        |    |
| 의왕시  | 165                    | 136                          | 82.4        |    |
| 여주시  | 78                     | 63                           | 80.8        |    |
| 양평군  | 61                     | 41                           | 67.2        |    |
| 과천시  | 50                     | 45                           | 90.0        |    |
| 북부계  | 3,541                  | 2,622                        | 76.6        |    |
| 고양시  | 1,002                  | 703                          | 70.2        |    |
| 남양주시 | 710                    | 560                          | 78.9        |    |
| 의정부시 | 523                    | 384                          | 73.4        |    |
| 파주시  | 511                    | 355                          | 69.5        |    |
| 구리시  | 167                    | 130                          | 77.8        |    |
| 양주시  | 284                    | 222                          | 78.2        |    |
| 포천시  | 143                    | 104                          | 72.7        |    |
| 동두천시 | 124                    | 101                          | 81.5        |    |
| 가평군  | 38                     | 35                           | 92.1        |    |
| 연천군  | 39                     | 28                           | 71.8        |    |

- 어린이집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부모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공시내용 : 7개분야 18개항목
- 공개방법 : 아이사랑보육 포털,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포털
- 강제규정 : 정보 미공개 혹은 거짓 공개시 시정명령 실시

※ 사업시작연도 : 2014년 1월

## □ 주요 공시내용(7개 분야)

- 어린이집 기본현황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 법 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사항
- 법 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육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2015년 추진실적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15.9.19.시행) : 어린이집·유치원 정보공시 항목 통합 추진

- 어린이집을 설치한 자는 당해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 **결정방법**

-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道에서 결정

□ **2016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 정부 미지원시설 만 3~5세

(단위 : 1인당 천원/월)

| 민간어린이집 |       | 가정어린이집 |       | 비고        |
|--------|-------|--------|-------|-----------|
| 만3세    | 만4~5세 | 만3세    | 만4~5세 |           |
| 293    | 271   | 296    | 296   | 전년대비 2%인상 |

- 정부 지원시설, 정부 미지원시설 만 0~2세 : 정부지원단가 적용

-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형,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시간제 보육료 : 정부기준(지침)에 따름

□ **2016년 보육료 지원 및 부모 부담 현황**

(단위 : 천원/월)

| 보육연령  | 지원액 |     |    | 정부지원시설 |      | 민간시설 |      | 가정시설 |      |
|-------|-----|-----|----|--------|------|------|------|------|------|
|       | 계   | 정부  | 道  | 수납한도   | 부모부담 | 수납한도 | 부모부담 | 수납한도 | 부모부담 |
| 만0세   | 418 | 418 | -  | 418    | -    | 418  | -    | 418  | -    |
| 만1세   | 368 | 368 | -  | 368    | -    | 368  | -    | 368  | -    |
| 만2세   | 304 | 304 | -  | 304    | -    | 304  | -    | 304  | -    |
| 만3세   | 250 | 220 | 30 | 220    | -    | 293  | 43   | 296  | 46   |
| 만4~5세 | 250 | 220 | 30 | 220    | -    | 271  | 21   | 296  | 46   |

※ 도 지원액(누리차액 보육료)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만 해당

- 어린이집을 설치한 자는 당해 어린이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결정**

- 도 및 시·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 7개 항목중 입학준비금, 차량운영비 외 나머지 5개 항목은 '08년부터 지역별 보육환경 차이를 감안, 시·군에서 결정

□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 항 목        |        | 내 역   | 수납 주기 | 수납 주기별 한 도 액                |
|------------|--------|---|-------|-----------------------------|
| 입 학<br>준비금 |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既가입자 또는 부모요청)   | 연     | 100천원<br>(세부 한도액<br>시·군 결정) |
|            | 피복류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 연     |                             |
| 특별활동비      |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에 한함) | 월     | 시·군 결정                      |
| 현장학습비      |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시·군 결정                      |
| 차량운영비      |        | 통학차량 이용 시로 한정   | 월     | 20천원                        |
| 행사비        |        | 입학, 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소요비용, 개인용 앨범비, 액자 제작비 등                          | 연     | 시·군 결정                      |
| 아침·저녁 급식비  |        | 아침, 저녁 급식비  | 월     | 시·군 결정                      |
| 지자체 특성화 비용 |        | 보육교사에 의한 별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용 교재 교구비                         | 월     | 시·군 결정                      |

※ 필요경비 수납주기가 보건복지부 지침과 상충될 경우 복지부 지침 우선 적용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한 시설은 상해보험료 수납 불가

1) 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아니하는 특별활동·현장학습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뜻함

## ① 입학준비금

- 수납주기 및 수납 총한도액 : 연 100천원
- 수납주기별 세부수납한도액 : 시장·군수 결정
  - 총한도액 내에서 시·군에서 상해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를 구분하여 한도액 결정
  - ※ 시·군에서 상해보험료와 피복류구입비를 구분하지 않고 입학준비금 수납한도액을 결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道 결정사항 위반임
- 운영기준
  -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당연가입 시행( '12.2.5) 이전에 개별적으로 기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할 수 있음
  -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 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 재입소료, 재원료 원칙적으로 수납금지
    - ※ 기존에 구입한 피복류가 헐거워지거나 영유아의 체형에 맞지 아니하여 새로이 구입해야 할 경우 또는 명찰, 수첩 등 재입학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규 구입이 필요한 개인물품 비용 이외에 단순히 학년이 바뀌는 것을 명목으로(속칭 '재입소료', '재원료' )별도 비용 수납 금지

## ② 특별활동비 (법제29조제4,5항, 시행규칙 제30조의2)

- 대상 : 24개월 이상 영유아
  - ※ 단, 18개월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시간 : 낮12시 ~ 오후6시
- 대체프로그램제공 :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대체 프로그램 마련 제공
- 수납주기별 수납한도액 : 시장·군수 결정



○ 운영기준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 에 드는 비용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

③ 현장학습비

○ 수납주기별 수납한도액 : 시장·군수 결정

○ 운영기준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④ 차량운행비

○ 수납주기 : 월

○ 수납주기별 수납한도액 : 20천원 \*이용자에 한함

○ 운영기준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운행시 소요되는 실비
-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인건비(11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133목)에서 인건비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권고

⑤ 행사비

○ 수납주기별 수납한도액 : 시장·군수 결정

○ 운영기준

- 입학·졸업·연말·생일·재롱잔치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영유아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인 앨범비, 액자제작비, 의복비 등이 해당

## ⑥ 아침·저녁 급식비

○ 수납주기별 수납한도액 : 시장·군수 결정

○ 운영기준 :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시·군에서는 수납주기별 수납한도액과 1식당 단가를 어린이집에 안내

## ⑦ 기타 시·군 특성화 비용

○ 수납주기별 수납한도액 : 시장·군수 결정

○ 운영기준

- 필요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 □ 필요경비 관련 안내

○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예시 : 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시·군에서 결정토록 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수납한도액을 시군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함(지역 내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주민센터 등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게시)

- 시장·군수가 수납한도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연간 수납 횟수 몇 회' '보호자협의', '어린이집운영위원회 결정' 으로 정하는 것은 영유아 보육법 제38조 위반임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 예)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을 정하고(영유아보육법제25조제4항제8호),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
-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은 시군에서 정해진 사항에 따라 운영하고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취지이며, 정해진 사항은 수납액이 아닌 수납한도액인 만큼 어린이집 원장은 모든 금액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라는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유의
- 어린이집의 원장은 관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해당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정한 필요경비의 세부 내역 이외의 잡부 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 어린이집의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 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반환
  - 단,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 반기별로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 **필요경비 관련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인 경우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 시장·군수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보호자로부터 수납한 시점부터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 전부를 보호자에게 반환하고 장래 동일 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실시(영유아보육법 제44조)
- 과거에 시장·군수로부터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초과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재 위반(불이행 등)한 경우 :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법 제45조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필요경비)을 수납한 경우 : 형사고발 조치(법제54조 제3항제6호)

## 2

# 아이가 행복한 안심보육 실현

### 2-1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국·도비

보육시설팀

-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 사업기간 : 2016.1. ~ 12.
- 사업량 : 125개소(남부 88, 북부 37)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국비+지방비)  | 비고 |
|----------|---|---|----|
| 증개축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 개소당 132㎡까지 지원<br>지원단가 751,440원/㎡<br>※국비 최대 49,595천원지원 |    |
| 개보수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인건비국고지원시설) 어린이집                 | 개소당 최대 30,000천원                                       |    |
| 장비비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인건비국고지원시설) 어린이집                 | 개소당 최대 20,000천원                                       |    |
| 개보수(장애아)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 개소당 최대 30,000천원                                       |    |
| 장비비(장애아) |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및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중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 개소당 3,000천원(20인 미만)<br>~4,000천원(20인 이상)               |    |

- 2016년 총사업비 : 1,621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구분 | 사업량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125 | 1,621,243    | 810,621 | 405,312 | 405,310 |    |
| 남부 | 88  | 1,146,279    | 573,139 | 286,570 | 286,570 |    |
| 북부 | 37  | 474,964      | 237,482 | 118,742 | 118,740 |    |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14년(130개)<br>(남부 89, 북부 41) | 2015년(124개)<br>(남부 89, 북부 35) | 2016년(125개)<br>(남부 88, 북부 37)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5,162,267<br>(3,314,610) | 1,978,375<br>(1,861,051)      | 1,562,649<br>(1,453,559)      | 1,621,243                     |    |
| 남부<br>(집행액) | 3,553,061<br>(2,297,530) | 1,361,133<br>(1,302,115)      | 1,045,649<br>(995,415)        | 1,146,279                     |    |
| 북부<br>(집행액) | 1,609,206<br>(1,017,080) | 617,242<br>(558,936)          | 517,000<br>(458,144)          | 474,964                       |    |

□ **2015년도 추진실적**

- 124개소 추진(남부 89, 북부 35)

□ **사업 추진 안내**

- 사업 흐름도

- 사업계획서 제출(전년 3월) → 현지점검(전년 5~6월) → 가내시 통보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전년 12월) → 국고보조금 신청(당해연도) → 국고보조금 교부(당해연도) → 사업집행

- 그 밖에 사업 포기 등으로 예산 여력이 생길 경우 추가신청을 할 수 있음

- 사업수행 절차

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은 <서식 IX-6, 8>에 따라 '16년 상반기 중에 신청
- 보조사업계획(사업변경 포함)에 대한 사업자의 수행능력과 타당성·효율성 등을 사업계획서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시군의 의견을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기재
- 시설 신축 및 증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은 사전에 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무허가건물 여부와 건축가능 여부 및 건축규모 등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한 후 보조금을 신청 및 대상 시설의 건축규모는 보육수요·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신청

## 2) 국고보조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IX-15>
  - ※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국고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국고보조가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참조)

※ 시·도지사 변경승인사항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li><li>· 동일 시·군·구 내에서의 사업부지 변경</li><li>· 지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li></ul> |
|---|

## 3)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정산

### ① 수행실적 보고

-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매반기마다(6월, 12월)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는 단기간 착공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고 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② 정산

- 사업계획서에 자부담 금액이 포함된 경우 사업완료 후 정산 시에는 당초 사업계획서의 비용분담 비율에 따라 정산 처리

## 4) 어린이집의 폐지 시 설치비 등 반납

### ① 대 상

- 사회복지·학교·종교시설에서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던 어린이집 등이 폐지하는 경우 시설 설치비를 반납
- 교재 교구비 타 시설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② 반납기준

- 시설공사비(칸막이, 보일러 등)는 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1년에 10%씩 정액 감가 상각하여 반납 받음
  - ※ 단, CCTV의 경우 내용연수 3년을 기준으로 기간에 비례하여 반납 받음
- 교재교구가 파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내용연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내용연수는 2년을 기준으로 함

# 참고 1

## 2016년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 시군명  | 사업량<br>(합계) | 어린이집 |     |     | 장애아시설 |     | 사업비       | 비고 |
|------|-------------|------|-----|-----|-------|-----|-----------|----|
|      |             | 증개축  | 개보수 | 장비비 | 개보수   | 장비비 |           |    |
| 합계   | 125         |      | 77  | 36  | 1     | 11  | 1,621,243 |    |
| 남부   | 88          | -    | 56  | 24  | 1     | 7   | 1,146,279 |    |
| 성남시  | 12          |      | 4   | 4   |       | 4   | 92,000    |    |
| 부천시  | 5           |      | 3   | 2   |       |     | 35,300    |    |
| 용인시  | 11          |      | 7   | 2   | 1     | 1   | 161,460   |    |
| 안산시  | 5           |      | 5   |     |       |     | 147,000   |    |
| 안양시  | 4           |      | 4   |     |       |     | 102,000   |    |
| 시흥시  | 4           |      | 4   |     |       |     | 94,000    |    |
| 화성시  | 1           |      | 1   |     |       |     | 20,000    |    |
| 광명시  | 8           |      | 6   | 2   |       |     | 114,000   |    |
| 군포시  | 3           |      | 3   |     |       |     | 41,000    |    |
| 광주시  | 4           |      | 3   | 1   |       |     | 48,000    |    |
| 김포시  | 5           |      | 4   | 1   |       |     | 82,000    |    |
| 이천시  | 8           |      | 2   | 4   |       | 2   | 36,519    |    |
| 안성시  | 4           |      | 2   | 2   |       |     | 54,000    |    |
| 오산시  | 3           |      | 3   |     |       |     | 29,000    |    |
| 하남시  | 7           |      | 2   | 5   |       |     | 30,000    |    |
| 의왕시  | 2           |      | 2   |     |       |     | 38,000    |    |
| 여주시  | 2           |      | 1   | 1   |       |     | 22,000    |    |
| 북부   | 37          | -    | 21  | 12  | -     | 4   | 474,964   |    |
| 고양시  | 13          |      | 7   | 4   |       | 2   | 168,000   |    |
| 남양주시 | 3           |      | 2   | 1   |       |     | 60,000    |    |
| 의정부시 | 2           |      | 2   |     |       |     | 47,000    |    |
| 파주시  | 1           |      | 1   |     |       |     | 2,000     |    |
| 양주시  | 3           |      |     | 2   |       | 1   | 8,000     |    |
| 포천시  | 10          |      | 5   | 4   |       | 1   | 80,474    |    |
| 동두천시 | 2           |      | 1   | 1   |       |     | 21,490    |    |
| 가평군  | 1           |      | 1   |     |       |     | 30,000    |    |
| 연천군  | 2           |      | 2   |     |       |     | 58,000    |    |



## 2-2 가정·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

도비

보육시설팀

-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를 지급하여 어린이들의 안전보장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

### □ 연 혁

- 2015년부터 시행

### □ 사업개요

- 대 상 : 가정·민간 어린이집
- 기 간 : 2016. 1. ~ 12.
- 사업량 : 573개소(남부 443, 북부 130)  
\* 전체 어린이집 약 5%를 대상으로 '15년~18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
- 2016년 총사업비 : 5,756백만원(도비 10~40%, 시군비 60~90%)

| 구분 | 사업량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573 | 5,756,000      | -  | 1,312,000 | 4,444,000 |    |
| 남부 | 443 | 4,430,000      | -  | 882,000   | 3,548,000 |    |
| 북부 | 130 | 1,326,000      | -  | 430,000   | 896,000   |    |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5년(1,076개)<br>(남부 884, 북부 192) | 2016년(573개)<br>(남부 443, 북부 130)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11,968,015<br>(4,427,747) | 6,210,000<br>(4,427,747)          | 5,756,000                       | 2015년부터<br>시행 |
| 남부<br>(집행액) | 8,860,000<br>(3,969,335)  | 4,430,000<br>(3,969,335)          | 4,430,000                       |               |
| 북부<br>(집행액) | 3,106,000<br>(458,412)    | 1,780,000<br>(458,412)            | 1,326,000                       |               |

### □ 2015년 추진실적

- 1,076개소 추진(남부 884, 북부 192)

##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기준 : 차등 보조율 적용(도비 10~40%, 시·군비 60~90%)

- 어린이집 개소 당 최대 10,000천원 지원
- 무분별한 신청 방지 및 사유재산임을 감안하여 50% 자부담

○ 지원 대상 선정(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

- 국가 공인기관 등에서 실시한 시설 안전 점검 시 “보수” 이상 판정 시설 또는 석면안전진단 결과 “석면함유 건축물”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노후시설 우선 지원(준공년도 감안)
- 개방형 어린이집 모범운영 어린이집
- 그 밖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시설 개보수 지원대상 등

※ 공사 완료 후 공사비 과다 계상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는 물론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계획

# 참고

## 2016년 가정·민간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 시군명  | 사업량 | 사 업 비     |           |           | 비고 |
|------|-----|-----------|-----------|-----------|----|
|      |     | 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573 | 5,756,000 | 1,312,000 | 4,444,000 |    |
| 남부   | 443 | 4,430,000 | 882,000   | 3,548,000 |    |
| 수원시  | 62  | 620,000   | 62,000    | 558,000   |    |
| 성남시  | 34  | 340,000   | 34,000    | 306,000   |    |
| 부천시  | 28  | 280,000   | 56,000    | 224,000   |    |
| 용인시  | 54  | 540,000   | 54,000    | 486,000   |    |
| 안산시  | 36  | 360,000   | 108,000   | 252,000   |    |
| 안양시  | 28  | 280,000   | 56,000    | 224,000   |    |
| 평택시  | 20  | 200,000   | 60,000    | 140,000   |    |
| 시흥시  | 20  | 200,000   | 40,000    | 160,000   |    |
| 화성시  | 34  | 340,000   | 34,000    | 306,000   |    |
| 광명시  | 18  | 180,000   | 54,000    | 126,000   |    |
| 군포시  | 15  | 150,000   | 45,000    | 105,000   |    |
| 광주시  | 19  | 190,000   | 38,000    | 152,000   |    |
| 김포시  | 18  | 180,000   | 36,000    | 144,000   |    |
| 이천시  | 8   | 80,000    | 32,000    | 48,000    |    |
| 안성시  | 11  | 110,000   | 44,000    | 66,000    |    |
| 오산시  | 12  | 120,000   | 36,000    | 84,000    |    |
| 하남시  | 8   | 80,000    | 24,000    | 56,000    |    |
| 의왕시  | 9   | 90,000    | 36,000    | 54,000    |    |
| 여주시  | 4   | 40,000    | 16,000    | 24,000    |    |
| 양평군  | 3   | 30,000    | 15,000    | 15,000    |    |
| 과천시  | 2   | 20,000    | 2,000     | 18,000    |    |
| 북부   | 130 | 1,326,000 | 430,000   | 896,000   |    |
| 고양시  | 21  | 210,000   | 21,000    | 189,000   |    |
| 남양주시 | 33  | 330,000   | 99,000    | 231,000   |    |
| 의정부시 | 20  | 200,000   | 80,000    | 120,000   |    |
| 파주시  | 18  | 180,000   | 36,000    | 144,000   |    |
| 구리시  | 7   | 70,000    | 28,000    | 42,000    |    |
| 양주시  | 15  | 150,000   | 60,000    | 90,000    |    |
| 포천시  | 7   | 70,000    | 35,000    | 35,000    |    |
| 동두천시 | 6   | 60,000    | 30,000    | 30,000    |    |
| 가평군  | 2   | 20,000    | 10,000    | 10,000    |    |
| 연천군  | 1   | 10,000    | 5,000     | 5,000     |    |
| 경기북부 |     | 26,000    | 26,000    |           | 유보 |

- 부모와 보육·보건 전문가가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을 모니터링 하여 수요자인 부모의 어린이집운영 참여 도모
- 보육환경을 모니터링·컨설팅 하여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연 혁**

- 시행시기 : 2013년부터 시행

□ **사업개요**

- 대상 :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의 70%, 8,951개(남부 6,448, 북부 2,503)
  -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은 제외
- 모니터링단 활동기간 : 3~12월(10개월간)
- 구성 : 시·군별 10명(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1:1로 구성) 이내로 하되, 어린이집 수 등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선정기준〉

| 사업구분  | 선정요건   |
|-------|--|
| 보육전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li> <li>○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li> </ul> </li> <li>○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li> </ul> |
| 보건전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포함)</li> <li>○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li> </ul>   |
| 부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li> <li>-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li> </ul> </li> </ul>   |
| 컨설턴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평가인증 담당 보육전문요원</li> <li>○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 컨설턴트</li> <li>○ 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점수 90점 이상인 자 (보육교사 1급, 보육업무경력 5년이상인 자)</li> </ul>  |

〈주요모니터링 분야〉

- (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응급조치 체계, 건강 검진 등
- (급식관리) 식단 및 영양, 조리, 식재료 관리 등
- (위생관리) 급식 위생, 조리실 청결, 시설·비품 위생 관리 등
- (안전관리) 환경 안전, 차량 안전, 아동학대 예방 등

○ 2016년 총사업비 : 703,6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구분  | 사업량<br>(개소)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계   | 8,951       | 703,600        | 351,800 | 175,900 | 175,900 |    |
| 본 청 | 6,448       | 506,848        | 253,424 | 126,712 | 126,712 |    |
| 북부  | 2,503       | 196,752        | 98,376  | 49,188  | 49,188  |    |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br>(9,576개)    | 2016년<br>(8,951개) | 비고 |
|-------------|--------------------------|----------------------|----------------------|-------------------|----|
| 계<br>(집행액)  | 2,267,175<br>(1,478,742) | 778,564<br>(720,923) | 785,011<br>(757,819) | 703,600           |    |
| 남부<br>(집행액) | 1,622,865<br>(1,064,834) | 555,708<br>(521,962) | 560,309<br>(542,872) | 506,848           |    |
| 북부<br>(집행액) | 644,310<br>(413,908)     | 222,856<br>(198,961) | 224,702<br>(214,947) | 196,752           |    |

※ 축소 사유: 전체 어린이집 수 축소, 2015년 CCTV설치(100%)

## □ 2015년도 추진실적

○ 총 9,576개소(남부 6,811, 북부 2,765, 전체 어린이집(75% 9,550개 목표))

- 참여인력 : 249명(부모 128, 보육전문가 121)

※ 2015년도 전국 최우수상 수상(2년 연속)

□ 구성현황

[단위:개소]

| 시·군        | 모니터링단원     |            |            | 모니터링 대상<br>어린이집수 | 모니터링<br>실시 개소 | 비고 |
|------------|------------|------------|------------|------------------|---------------|----|
|            | 계          | 부모         | 전문가        |                  |               |    |
| <b>계</b>   | <b>249</b> | <b>128</b> | <b>121</b> | <b>9,550</b>     | <b>9,576</b>  |    |
| <b>남부</b>  | <b>182</b> | <b>95</b>  | <b>87</b>  | <b>6,839</b>     | <b>6,811</b>  |    |
| 수원시        | 17         | 9          | 8          | 944              | 949           |    |
| 성남시        | 8          | 4          | 4          | 548              | 526           |    |
| 부천시        | 10         | 5          | 5          | 457              | 436           |    |
| 용인시        | 10         | 5          | 5          | 836              | 856           |    |
| 안산시        | 8          | 4          | 4          | 532              | 523           |    |
| 안양시        | 10         | 5          | 5          | 423              | 421           |    |
| 평택시        | 9          | 6          | 3          | 310              | 295           |    |
| 시흥시        | 10         | 5          | 5          | 308              | 308           |    |
| 화성시        | 10         | 5          | 5          | 513              | 509           |    |
| 광명시        | 10         | 5          | 5          | 281              | 283           |    |
| 군포시        | 10         | 5          | 5          | 227              | 234           |    |
| 광주시        | 6          | 3          | 3          | 282              | 282           |    |
| 김포시        | 10         | 5          | 5          | 296              | 278           |    |
| 이천시        | 7          | 5          | 2          | 125              | 122           |    |
| 안성시        | 10         | 5          | 5          | 174              | 163           |    |
| 오산시        | 8          | 4          | 4          | 192              | 206           |    |
| 하남시        | 6          | 3          | 3          | 117              | 116           |    |
| 의왕시        | 6          | 3          | 3          | 136              | 154           |    |
| 여주시        | 5          | 3          | 2          | 55               | 64            |    |
| 양평군        | 4          | 2          | 2          | 46               | 52            |    |
| 과천시        | 8          | 4          | 4          | 37               | 34            |    |
| <b>북부계</b> | <b>67</b>  | <b>33</b>  | <b>34</b>  | <b>2,711</b>     | <b>2,765</b>  |    |
| 고양시        | 12         | 5          | 7          | 803              | 769           |    |
| 남양주시       | 14         | 7          | 7          | 518              | 496           |    |
| 의정부시       | 8          | 4          | 4          | 413              | 487           |    |
| 파주시        | 10         | 5          | 5          | 382              | 384           |    |
| 양주시        | 4          | 2          | 2          | 125              | 213           |    |
| 구리시        | 6          | 3          | 3          | 213              | 125           |    |
| 포천시        | 3          | 2          | 1          | 109              | 124           |    |
| 동두천시       | 4          | 2          | 2          | 93               | 104           |    |
| 가평군        | 2          | 1          | 1          | 26               | 34            |    |
| 연천군        | 4          | 2          | 2          | 29               | 29            |    |

- 도내 모든 어린이집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기적(1년~2년)으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 □ 사업개요

- 대 상 : 도내 전체 어린이집 (2015년 12월 현재 12,689개소)
- 점검 제외대상
  - 휴지 또는 운영정지 어린이집
  - 시설인가 6개월 미만의 신규 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확인점검 결과 95점 이상인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없는 우수 어린이집에 대해 사군 자율적으로 25%범위 내<1년간 제외(∼' 16.12.31.)>
  - ※ 단, 민원제보,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 문제발생 우려 어린이집은 적용 제외
- 중점 점검사항
  - 어린이집 운영(보육교직원 자격·보험적정여부 등) 및 회계 관련분야
  - 건강·영양·위생관리 분야·각종 안전사고 예방분야
  - 보조금지원기준 준수여부, 아동 학대발생 여부(특별관심사항)
- 세부 착안사항
  - 운영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및 보육시간 준수, 필요경비 수납, 정보공시 등
  - 위생 : 식자재관리,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여부, 식단표 준수 등
  - 안전 : 통학버스 차량신고, 보험가입 적정성, 놀이시설, 비상대피 및 응급처치 등

## □ 추진일정

- 점검기간 : 2016년도 (연중)
  - 정기점검 : 모든 어린이집 대상 주기적(1년~2년)으로 운영전반에 대하여 사군별 자체계획을 수립 후 실시
  - 기획점검 : 사회적 이슈(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및 계절적 점검요인(급·간식 위생, 동절기 화재 위험, 방학·휴원 등)에 대한 분야별 특별점검
  - 수시점검 :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 보도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불시점검 실시

## □ 조치사항

- 시·군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철저
  - 시·군 점검을 우선하되, 민원제기, 언론보도 등 사안발생시 도-시군 합동, 교차 점검 실시 (※ 사안에 따라 도 자체점검 실시 가능)
  - 중복점검을 지양하여 어린이집의 중복수검에 대한 고충 해소
- 지도점검 결과 관련 법령에 의한 처분 철저
  - 시정 또는 변경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변경명령 조치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법 제44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보조금 환수, 어린이집 운영정지(과징금),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취소, 고발조치 등 확행(법 제40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4조)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 즉시 입력(추적관리)
- 부적정 운영 어린이집에 대한 불이익 강화
  - 운영기준 위반, 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사회적 물의 야기, 민원 발생 등 부적정 운영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및 시·군비 지원 사업 대상 등에서 제외
- 어린이집 폐쇄, 운영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법 제49조의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음(위반사실 공표)
  - ※ 어린이집 위반사실 공표(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 3 및 시행령 제25조의 6)

- 공표대상 : 어린이집 및 원장(보육교사)
  - ① 폐쇄·운영정지·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서
    - 보조금 부정수령·유용한 어린이집
    - 어린이집 운영기준(법 제24조), 급식기준(법 제33조) 위반으로 영유아의 생명·신체·정신에 피해를 발생시킨 어린이집
  - ② 자격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원장(보육교사)으로서
    - 아동복지법 제17조(아동학대)에 따른 금지행위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공표내용 : 어린이집 명, 대표자·원장 명, 위반행위, 위반이력, 처분내용 등
- 공표기간 : 어린이집 폐쇄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시 공표일로부터 3년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보육교직원 자격정지시 정지기간의 2배(최소 6개월)
- 공표절차 : 보육정책위 심의 ⇒ 서면통지 ⇒(20일 이내 소명시) 재심의 ⇒ 명단 공표
- 공표방법 : 처분청 홈페이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보육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2016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 《 어린이집 지도 점검 로드맵 》

| 점검 절차           | 주의 사항 및 행동 요령  |
|-----------------|--|
| ① 어린이집 도착       | - 복장 등을 단정히하고 어린이집이나, 이용아동에게 불쾌감 최소화<br>( 어린이집 출입 및 보육실 출입에 관한 민원이 빈번하므로, 반드시 원장 또는 교직원에게 사전 협조 요청 후 출입)   |
| ② 공무원증 등 증표 제시  | - 점검자 소개 : 00기관 00부서의 지도·점검차 방문하였음을 설명<br>- 공무원 증, 조사명령서 등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
| ③ 지도점검 장소 제공 요청 | -아동보육 활동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소 제공 요청  |
| ④ 원장 등 관계인 면담   | -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목적·취지 소개(정기, 기획, 민원조사 등)<br>※ 단, 이용불편신고 등 민원사유일 경우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취지 설명은 최소화(권익위법, 공익신고자법 준수 등)<br>- 점검시작 전 수검에 따른 어려움이나 애로사항 등 우선 청취<br>- 점검장 위치 및 서류 준비 여부, 자체 지도점검 실시현황 확인          |
| ⑤ 점검관련 서류 요구    | - 서류목록은 어린이집 필수 비치 장부 목록 등을 메모지에 작성하여 되도록 한번에 요구(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규정  |
| ⑥ 점검 실시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시설운영 관련 각종 정보 확인<br>※ 어린이집정보, 아동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이용확인(점검전 사전 서류점검, 현장 요구 최소화)<br>- 원장 및 보육교직원 협조 및 안내에 따라 점검<br>(2~3일 장기 점검시 필요성 또는 불가피성 사전 안내 관련 규정, 향후절차 등 안내, 확인서 작성 등) |
| ⑦ 점검완료·총평       | - 점검에 따른 불편한 점 등 의견청취, 점검결과 총평(점검반장)<br>- 점검협조에 대한 인사 등  |
| ⑧ 행정조치          | - 점검결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입력<br>(행정조치, 위반사항 등)  |

## 《 어린이집 현장 지도점검 내용 및 행정 처분 》

| 지도점검 항목            | 관련조문  | 지도점검의 내용  | 행정처분                            |
|--------------------|---|---|---------------------------------|
| 어린이집 설치기준          | 설치인가(제13조)  |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했는지 여부  | 시정또는변경명령(제44조), 벌칙(제54조)        |
|                    | 설치기준(제15조)  |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   | 시정또는변경명령(제44조)                  |
|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점검 | 인원(제17조)  | 제17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했는지 여부<br>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시정또는변경명령(제44조)                  |
|                    | 자격(제21조)  | 보육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를 채용하여 보육교사, 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는지 여부<br>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원장자격정지(제46조), 원장·교사의 자격취소(제48조) |
|                    | <u>원장의 보수교육(제23조)</u><br><u>보육교사의보수교육(제23조의2)</u>   | 제23조, 제23조의2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원장자격정지(제46조)<br>보육교사의자격정지(제47조) |
|                    | 자격증의 대여(제22조의2)                                     | 제22조의2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br>* 무자격자 채용 또는 타반 통합보육여부  | 원장·교사의 자격취소(제48조)<br>벌칙(제54조)   |
| 어린이집의 운영           | 운영기준(24조)<br>운영위원회(25조)<br>급식관리(33조)<br>생활기록(29조의2) |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br>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br>4의3,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또는변경명령(제44조)                  |

| 지도점검 항목  | 관련조문            | 지도점검의 내용   | 행정처분   |
|----------|-----------------|--|--|
|          |                 | 4의5.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취약보육의 우선실시(26조) |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는지 여부  | 과태료처분(제56조)<br>복지부 지침( 12.3)   |
| 어린이집의 운영 | 보육의 우선제공(28조)   |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였는지 여부<br>민간·개인어린이집이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본보육료 지원 중단 등 | 과태료처분(제56조)  |
| 건강·영양·안전 | 건강관리·응급조치(31조)  |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했는지 여부<br>4의4.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처분(제56조)<br>시정명령(44조)   |
| 비용       | 비용의 부담(34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한 자                      | 보조금의 반환명령(제40조)<br>어린이집의 운영정비 및 폐쇄처분(제45조)<br>과징금 처분(45조의2)<br>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정지(제46조)<br>벌칙(제54조) |
|          | 양육수당(34조의2)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한 자                       | 보조금의 반환명령(제40조)<br>어린이집의 폐쇄처분(제45조)<br>원장의 자격정지(제46조)<br>벌칙(제54조)                              |
|          | 서비스이용권(34조의3)   |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 벌칙(제54조)   |

| 지도점검 항목 | 관련조문                    | 지도점검의 내용  | 행정처분  |
|---------|-------------------------|---|---|
|         | 무상보육의 특례 (제35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한 자          | 벌칙(제54조)  |
|         | 비용의 보조 등 (36조)          |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br>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40조)<br>어린이집의 폐쇄처분(제45조)<br>원장의 자격정지 (제46조)<br>벌칙(제54조) |
|         | 보육료 등의 수납 (38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수납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 벌칙(제54조)  |
|         |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40조)     | 제40조에 따른 비용 또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어린이집의 폐쇄 (제45조)   |
| 지도감독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의 신고(제43조) |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 시정또는변경명령 (제44조)   |
|         | 시정 또는 변경명령 (제44조)       | 제44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어린이집의 폐쇄 등 (제45조)   |
|         | 어린이집의 폐쇄 (제45조)         |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 벌칙(제54조)  |

※ 근거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1 관련 (별표9), (별표 10)] 참조



- 어린이집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1조의 2 및 시행령 제24조

□ **연 혁**

- 2010년 시행

□ **개 요**

- 성격 : 어린이집 원장을 회원으로 한 상호 협동조직체의 비영리 법인

○ 주요업무

- 영유아 및 보육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복리 후생 사업
- 보육시설 안전사고 관련 통계 산출
- 안전사고 예방사업(안전관리 컨설팅,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등)

※2016 찾아가는 이동안전체험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 남양주, 수원시, 오산시, 안산시 (시·군) 여주시, 양평군

- 보육시설에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 보육시설 안전사고와 관련한 분쟁사안 조정

○ 사고처리절차

- 사고발생 사고보고(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어린이 집 지원 시스템 접속 후 사고보고서 작성, 안전공제회 사고보고)
- 사고 접수 확인(공제계약 및 담보 확인 후 필요서류 안내)
- 청구서류 제출(팩스, E-mail, 우편을 통해 제출)
- 공제급여산정(결정통지,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 공제회 지급(공제 급여 수령) 및 종결(완료)

- 법정관리 규모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제공으로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

□ **관련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10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0호, 환경보건법 제23호(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사업개요**

- 대상 : 면적 430㎡미만 어린이집 11,375개소 중 7.5%(전체 어린이집 12,689개 중 90%)
- 사업량 : 893개소(남부 613, 북부 280)
- 운영대수 : 2대(남부 1대, 북부 1대), ※ '13년 구입(남부:15,400천원)
- 측정항목 : 5개 항목

| 구분          | 기기명                    | 측정항목(5개 항목)   | 비고                                |
|-------------|------------------------|---|-----------------------------------|
| 필수측정<br>(4) | 실내공기질 종합<br>측정기(EVM-7) |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 <sub>2</sub> ),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 상시                                |
| 선택측정<br>(1) | 폼알데하이드<br>측정기(FP-30)   | 폼알데하이드(HCHO)  | 신규 개원, 가구 도입, 페인트 칠 등 심한악취 의심의 경우 |

□ **예산현황**

- 2016년 총사업비 : 11,500천원(도비 100%)

| 구분 | 사업량<br>(개소)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1,134       | 11,500       |    | 11,500 | -   |    |
| 남부 | 893         | 5,500        |    | 5,500  | -   |    |
| 북부 | 241         | 6,000        |    | 6,000  |     |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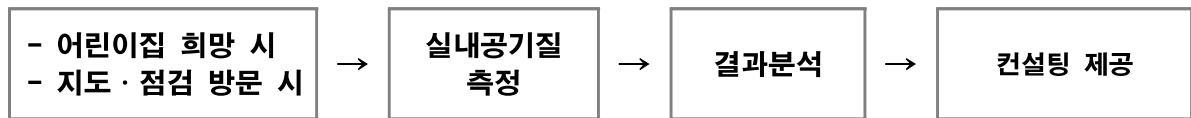
(단위: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계<br>(집행액)   | 15,500<br>(4,000) | 2,000<br>(2,000) | 2,000<br>(2,000) | 11,500 |    |
| 본청<br>(집행액)  | 9,500<br>(4,000)  | 2,000<br>(2,000) | 2,000<br>(2,000) | 5,500  |    |
| 북부청<br>(집행액) | 6,000             | -                | -                | 6,000  |    |

## □ 운영방법

- 측정 대상 어린이집 : 시군 자체 선정
  - 측정 희망 어린이집 우선 서비스 제공
  - ※ 실내공기질 측정 어린이집 수요조사 후 자체적으로 실시
- 시군 순번대로 장비 활용
  - 정해진 기간 내 측정완료하고 다음 시군에 장비 인계
  - 측정완료 후 1주일 이내 붙임 서식에 의거 측정결과 제출\*
  - ※ 결과보고 제출 시 익년도(2017년) 수요조사 포함
-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1,185개)과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기후대기과)

## □ 처리흐름도



### 〈컨설팅 내용〉

- 미세먼지(PM10)
  - (실내청소 추가 실시, 공기청정기 설치)
-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sub>2</sub>)
  - (주기적인 환기 실시, 실내에 식물 배치)
-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폼알데하이드(HCHO)
  - (친환경 페인트, 벽지 등 사용) 페인트칠, 벽지, 매트, 놀이기구 교체하였을 경우
  - (베이킹 아웃 3회 실시) 어린이집 휴원일에 문을 닫은 후 실내온도를 40도까지 올리고 5시간 이상 유지. 현관문을 포함해서 모든 문과 창문을 다 연 후 3시간 정도 충분히 환기
  - (숯 등 공기정화식물 배치)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위치에 배치(3달에 1번 물로 적셔 활성화)

□ 장비사진



< 측정기 케이스 >



< 케이스 개봉시 ① >



< 케이스 개봉시 ② >

- (좌) 폼알데하이드 측정탭
- (우) 공기질 측정기 2기



< 기기 세부모습 >

- (좌) 폼알데하이드 측정기(FP-30)
- (우) 실내공기질 종합측정기(EVM-7)



-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과, 조리실·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보관실·화장실·침구·놀잇감 등 정기적 소독 실시하고 청결하게 관리
- 통학 차량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아동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서비스 품질향상 도모

□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31조~32조, 시행규칙 23조

□ **사업대상**

-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

- 어린이집 유형별 현황(2015. 12월말)

(단위 : 개소)

| 구분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등 | 민간    | 가정    | 부모협동 | 직장  |
|----|--------|-----|--------|--------|-------|-------|------|-----|
| 계  | 12,689 | 595 | 68     | 139    | 4,005 | 7,646 | 66   | 170 |
| 남부 | 9,148  | 431 | 51     | 102    | 2,935 | 5,449 | 53   | 127 |
| 북부 | 3,541  | 164 | 17     | 37     | 1,070 | 2,197 | 13   | 43  |

-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현황(2015.3.17.)

(단위 : 개소)

| 전체어린이집 |       | 가정어린이집 |       | 국공립어린이집 |     | 민간어린이집 |     | 직장어린이집 |     | 법인단체협동조합등 |     |
|--------|-------|--------|-------|---------|-----|--------|-----|--------|-----|-----------|-----|
| 13,238 |       | 8,133  |       | 591     |     | 4,072  |     | 162    |     | 280       |     |
| 운영     | 미운영   | 운영     | 미운영   | 운영      | 미운영 | 운영     | 미운영 | 운영     | 미운영 | 운영        | 미운영 |
| 5,883  | 7,355 | 2,347  | 5,786 | 126     | 465 | 3,219  | 853 | 16     | 146 | 175       | 105 |

※ 어린이집 당 차량 1대기준

□ **어린이집 영양관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시설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며 영양사는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위생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의 급·간식을 관리하여야 함(전담 원칙)

※ 5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으나, 이 경우 영양사는 5개 시설 중 어느 한 시설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며, 5개 시설을 1인이 담당함으로써 인해 영유아에 대한 영양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담당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지도 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실행하여야 함

## □ 어린이집 위생관리

- 어린이집의 교직원은 영유아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수시로 점검
  - 영유아의 감기, 독감, 홍역 등 유행성 질환 감염 여부
  - 영유아의 피부, 머리, 손·발톱, 치아상태
  - 교직원의 의복 청결상태 및 피부상처 여부 등 업무 전후 위생상태
  - 보육실, 교재교구실, 조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 청소상태
  - 침구 및 기저귀 등의 위생상태
  - 욕실, 화장실, 세면도구 등의 청결 및 위생상태

## □ 어린이집 차량관리

- 차량 내부에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차량용 소화기 및 구급상자를 비치해야 하며, <서식 II-4>의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③차량분야)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 운전자는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타고 내리는 때에 영유아가 좌석에 앉은 것과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출발시켜야 함.
- 운전자는 음주, 휴대폰 또는 이어폰 사용 등 운전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등·퇴원 차량 운행시 운전기사 및 보육교사 등 동승자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통학차량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2015년도 추진실적

- 어린이집 시설·차량 안전관리 점검 실시 현황

| 전체시설수<br>(A)<br>(개소) | 점검시설수<br>(B)<br>(개소) | 점검율(%)<br>[(B/A)*100] | 지적사항<br>발생시설수 | 조치결과     |          |          |    |          |          |
|----------------------|----------------------|-----------------------|---------------|----------|----------|----------|----|----------|----------|
|                      |                      |                       |               | 행정<br>지도 | 시정<br>명령 | 운영<br>정지 | 폐쇄 | 자격<br>정지 | 자격<br>취소 |
| 12,470               | 1,315                | 10.5%                 | 152 개소        | 148건     | 17건      | 0건       | 0건 | 0건       | 0건       |

- 어린이집 급식위생 점검 실시 현황

| 전체시설수(A)<br>(개소) | 점검시설수(B)<br>(개소) | 점검율(%)<br>[(B/A)*100] | 지적사항<br>발생<br>시설수 | 조치결과     |          |          |    |          |          |             |
|------------------|------------------|-----------------------|-------------------|----------|----------|----------|----|----------|----------|-------------|
|                  |                  |                       |                   | 행정<br>지도 | 시정<br>명령 | 운영<br>정지 | 폐쇄 | 자격<br>정지 | 자격<br>취소 | 과태료<br>(천원) |
| 12,833           | 1,380            | 10.8%                 | 198<br>개소         | 161건     | 54건      | 0건       | 0건 | 0건       | 0건       | 3,000       |

- 영유아보육법령에 의거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은 정당한 순위에 의해 입소 결정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 사업내용

- 입소 우선순위

### 1)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이하)의 자녀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인·단체 등이 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2)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 입소자 결정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 작성·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입소대기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입소 시 원장은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
- 정해진 기한 내에 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이 취소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 을 기준으로 판단
  - 정원미충족으로 인해 즉시입소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 제외
- 입소대기대상아동의 범위(일반아동 만 0세 ~ 만 5세, 장애아동 만 12세)를 초과하는 경우 입소대기가 자동으로 삭제
- 어린이집의 장은 당해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상기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대기 신청 순서에 따라 순위 결정
-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
  - 1순위 항목당 100점(맞벌이의 경우 2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
  -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참고

## 입소우선순위 자격 증빙자료

| 순위   | 구분  | 제출서류  |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 자동연계 대상으로 불필요   |
|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맞벌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li> <li>·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중 1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또는 고용 · 임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li> <li>·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1부</li> <li>· 직업훈련생 :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참여확인서·수료증(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명의), 고용안정정보망 구직등록필증(전국고용센터장, 새일센터장, 자치단체 등 명의) 중 1부</li> <li>·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자영업자(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자 1년 미만)는 소득신고 증빙서류(세무서 접수증 등) 또는 사업장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중 1부</li> <li>*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li> <li>*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li>※ 농업 종사자의 경우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의)와 매출증빙자료(농산물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등) 중 1부</li> </ul> </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 20일 이상 근로</li> <li>※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또는 취업을 준비 중인 자(직업훈련생, 대학원생 등) 포함</li> </ul>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li> <li>·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li> <li>·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li> <li>·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1부</li> <li>※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제출(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li> <li>※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li> </ul> |
|                   | <p>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p>  | <p>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p>   |
|                   | <p>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p>   | <p>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p>  |
| <p><b>2순위</b></p> | <p>기타 한부모 ·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재원아동의 형제·자매</p>   | <p>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p>   |
| <p><b>3순위</b></p> | <p>1, 2순위 이외의 영유아</p>   |  |

-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육 실시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26조

## □ 2016년 사업개요

### 1) 설치 및 운영

- 어린이집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운영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당해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당해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를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

### 2) 기 능

-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①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②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 ③ 영유아의 건강·영양,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 ④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⑥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⑦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⑧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 ⑨ 그 밖에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개방성이 높은 열린어린이집을 발굴·확산하여 우수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전파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관련근거**

- 2016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 **2016년 사업개요**

○ 목적 및 기능

- 부모에게 개방성이 높은 열린어린이집을 발굴·확산하여 우수한 부모참여프로그램을 현장에 전파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의 참여프로그램에 부모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참여 필요성, 참여 방법 등에 대한 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 운영방식

- 시·군 지역별 우수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개방성이 높은 어린이집을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
  - 매년 1회 선정하며 연속으로 선정 가능
  -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은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시 가점부여, 정부포상 등의 혜택
- 열린어린이집의 우수사례 등 부모참여프로그램을 사례집 발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컨설팅에 활용 등 센터를 통해 어린이집에 보급
- 부모가 어린이집에 참관하기 위한 어린이집 관련 기본 지식, 부모참여의 의의, 참여 방법 등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 자료 등 제공

○ 행정사항

- 시장·군수는 열린어린이집 선정시 지도점검 적발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야 함
- 시장·군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할 지역의 열린어린이집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발굴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법령 위반사실 행정절차법에 의거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및 고발조치
  - 처분청은 위반내용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으로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도모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훈령 제47호, 2013. 11. 20

□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개요**

- 신고주체 : 보육교직원, 학부모, 일반국민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 지급주체 : 보건복지부 직접 지급
  - 시·군을 통해 신청 및 사실 확인절차 수행 및 행정처분 종료
  - ※ 보조금 환수 포함 후 지급

□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내용 사실관계 사전조사
-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
  - 처분청은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위반사실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 후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과징금), 원장 자격정지 및 고발 조치
- 포상금 신청 : 위반내용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액 산정  
(시·군 → 도 → 복지부)
-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검토 및 타기관 중복 지급 여부 조회  
(복지부 → 기재부 및 국민권익위)
  - ※ 복지부는 포상금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
- 결과 통지 : 포상금 신청서 검토 결과 및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지부)
- 포상금 지급 : 신고인의 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복지부에서 청구인(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 계좌로 포상금 지급

## 〈 공익 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 유 형        | 산 정 기 준  |         | 비 고                            |
|------------|--|---------|--------------------------------|
|            | 신 고 유 형  | 지 급 액   |                                |
| ① 보조금 부정수급 | ○ 환수금액(30%~10%)*   |         | '13.8.26시행<br>* 별표 참조          |
| ② 아동학대     | ○ 학대 판정, 처벌 여부.행위의 지속성. 집단적 행위(가담.방조목인) 여부                         |         |                                |
|            | - 아동학대로 판정 시 또는 아동학대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제4호, 제46조제1호 및 제47조제1호에 따른 처분* 시 | 100만원   | * 시정명령이상                       |
|            |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 500만원   |                                |
|            | -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학대 행위가 다수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000만원 | * 1개월 이상<br>**원장.교직원이 방조목인한 경우 |
| ③ 급식       | ○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         | *시정명령 이상                       |
|            | -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이 상한 경우   | 100만원   |                                |
|            | -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물의 재사용  | 50만원    |                                |
| ④ 차량       | ○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         | *시정명령이상                        |
|            | - 음주하고 통학버스를 운전한 경우  | 100만원   |                                |
|            |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50만원    |                                |
|            | - 삭제   | 삭제      |                                |
|            | - 삭제   | 삭제      |                                |

### □ 2015년 추진실적

○ 36건. 포상금 38,995천원

- 미신고 통학차량 운행, 보조금 부정수급,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 등

-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2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03.11.12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설립
  - 2013. 6. 4 법령개정(보육정보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개요**

- 운영기관 :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 ※ 위탁기간 : 2014. 1. 1. ~ 2016. 12. 31
- 주요사업

| 주요유형   | 내용  |
|--------|---|
| 가정양육지원 | 부모교육·상담, 영유아의 체험·놀이 공간 제공, 일시보육서비스 등      |
| 어린이집지원 | 보육컨설팅, 보육관련 정보수집·제공, 교재·교구 대여, 보육교직원 상담 등 |
| 기관운영지원 | 사무실, 자료실(비품보관실), 창고, 업무공간, 기계실 등          |

- 종사자수 : 11명(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5, 행정원 2, 계약직 3)
- 시설규모 : 553.07㎡/임차기간 2016. 2. 20. ~ 2018. 2. 19.
- 2016년 총사업비 : 834,000천원

| 구분 | 사업량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2   | 834,000        | 312,000 | 522,000 |     |    |
| 남부 | 1   | 417,000        | 156,000 | 261,000 |     |    |
| 북부 | 1   | 417,000        | 156,000 | 261,000 |     |    |

※사업비는 운영지원비(국비50%, 도비50%) + 활성화비(도비100%)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2,528,540<br>(1,665,198) | 864,000<br>(855,775) | 830,540<br>(809,423) | 834,000 |    |
| 남부<br>(집행액) | 1,273,770<br>(827,693)   | 432,000<br>(423,775) | 424,770<br>(403,918) | 417,000 |    |
| 북부<br>(집행액) | 1,254,770<br>(837,505)   | 432,000<br>(432,000) | 405,770<br>(405,505) | 417,000 |    |

□ 시설 설치기준

○ 입지조건

- 이용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접근이 용이한 부지에 설치하여야 함
- 영유아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 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과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함. 단, 설치비 국고보조 선정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타목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 등과 별도로 설치함

○ 구조 및 설비기준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시행령 제12조)

■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 및 시설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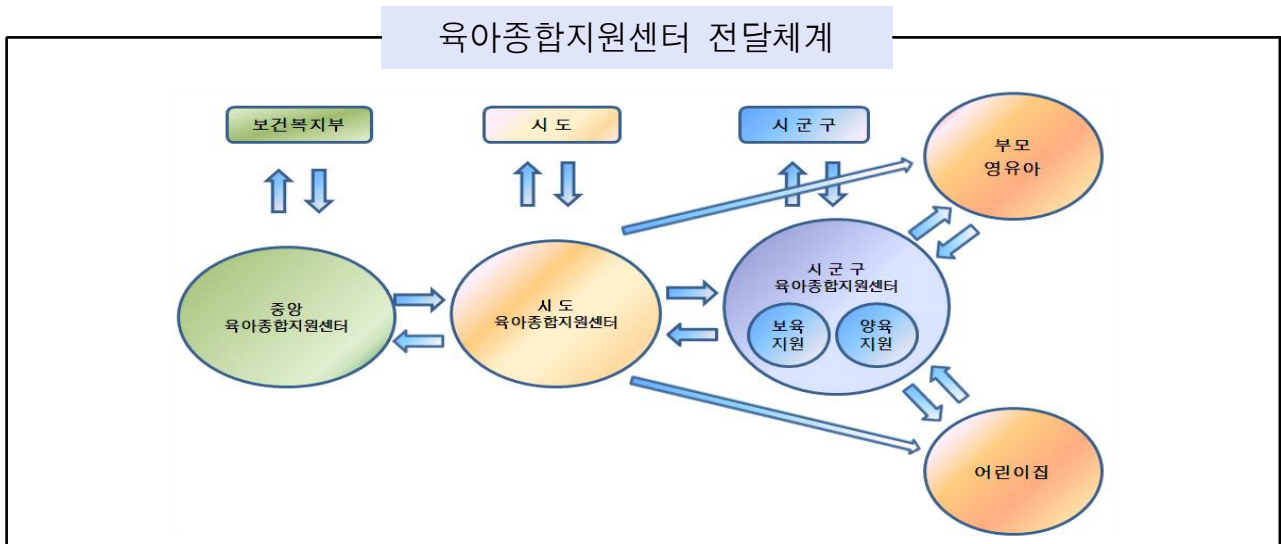
| 유 형<br>내 용 | 가정양육 지원                                 | 어린이집 지원                      | 기관운영지원   |
|------------|---|------------------------------|--|
| 실 내        | 수유실, 육아정보 나눔터, 실내 놀이터, 일시보육실, 장난감 대여실 등 | 어린이집, 교구·교재 대여실, 보육교직원 상담실 등 | 사무실, 자료실(비품보관실), 양호실, 창고, 업무공간,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
| 실 외        | 주차장, 놀이터, 다용도 체험놀이터, 옥상 등               |                              |  |

※ 지역의 이용수요 및 특성, 예산규모 등에 따라 설치공간을 조절할 수 있음

- 건물구조, 일시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 비상재해대비시설 등은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게 설계·시공\*되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을 준용하고, 「건축법」, 「소방방재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법 제7조, 시행령 제13조 참조)



시·도 및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역할 (예시)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사업 매뉴얼 개발, 자료제작 등 지자체 특수사업 총괄·지원</li> <li>• 지역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보급</li> <li>• 전문가 인력풀 구축 등 시·군·구 센터 지원</li> <li>•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사각지대 지원</li> <li>• 시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 간 협의체 구성 및 관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서비스 제공</li> <li>• 영유아 보호자와의 연계 등 가정양육 지원서비스 제공</li> <li>• 다른 육아관련 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관리</li> <li>• 이용자의 욕구조사 등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정보수집</li> </ul> |

## □ 상담전문요원 배치

- (사업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보육교사들의 심리적·정서적 고충 상담과 아동학대 예방 관련 업무 수행
- (상담전문요원 기준)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 상담·심리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상담 업무와 관련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상담·심리분야) 상담학, 심리학, 아동(복지)학, 보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교육학, 치료·재활 전공
- (상담관련 실무경력) 병원, 대학 등 학교, 상담센터 및 심리 연구소, 복지 시설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심리상담, 심리검사, 심리평가,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
- ※ 보육업무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경우 우대

○ (업무 수행 체계)

- 중앙센터 : 매뉴얼 개발, 교육, 상담관리 등
- 시·도 센터 : 상담운영, 교육, 사례관리 및 시·군·구 센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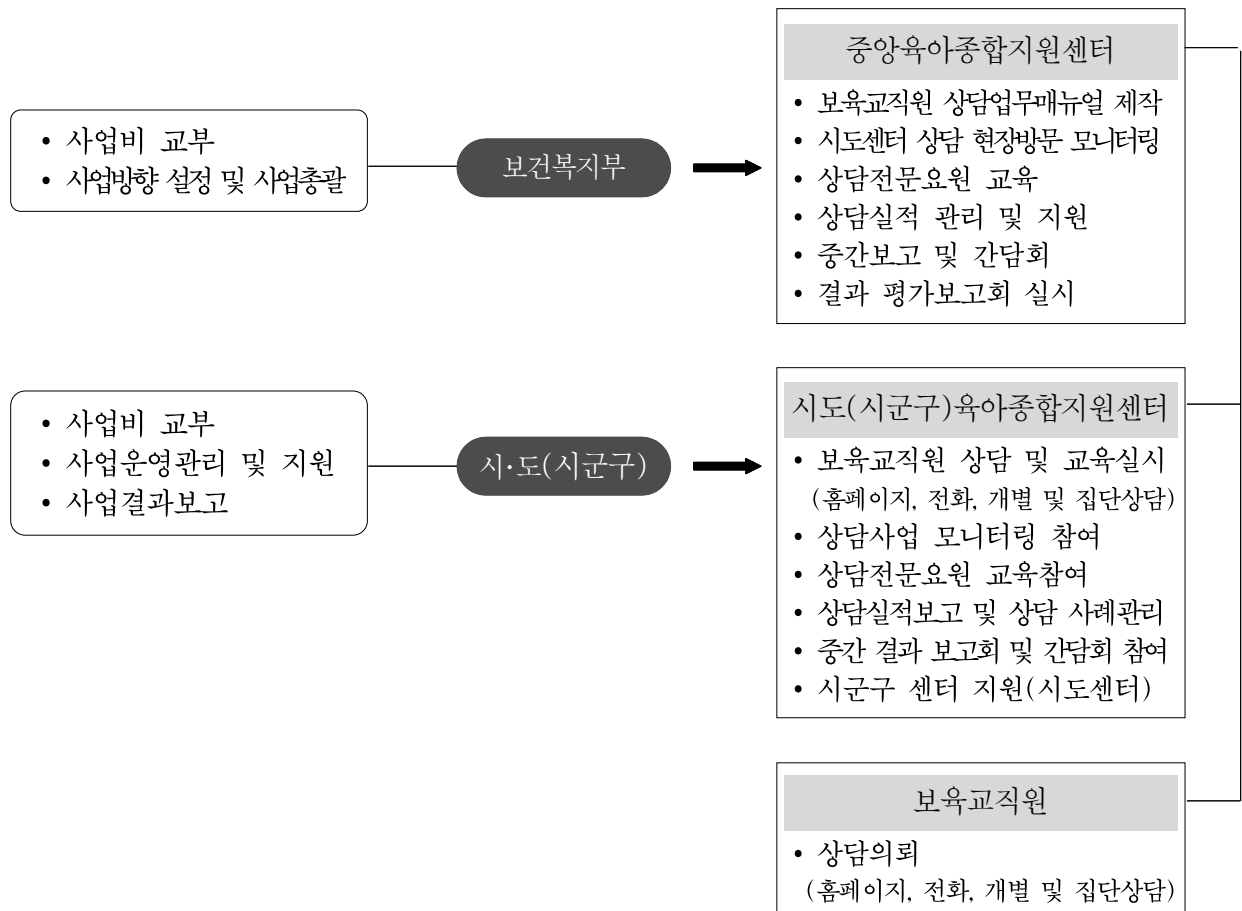
(단위: 개소, 천원, 회)

| 시도   | 총사업비(국비+지방비) |        |      | 국비교부액  |        |    | 비고 |
|------|--------------|--------|------|--------|--------|----|----|
|      | 계            | 시도센터   | 시군센터 | 계      | 시도     | 시군 |    |
| 계    | 67,368       | 67,368 |      | 33,684 | 33,684 |    |    |
| 경기남부 | 33,684       | 33,684 | -    | 16,842 | 16,842 | -  |    |
| 경기북부 | 33,684       | 33,684 | -    | 16,842 | 16,842 | -  |    |

○ (업무 내용)

- 사업기간 : '16. 1월 ~ 12월

<상담 전문요원 업무수행 체계도>



## □ 부모교육사업

### ○ 사업개요

- 대 상 : 영유아 부모 및 자녀, 예비 부모
- 기 간 : 2016. 3월 ~ 12월
- 예 산 : 505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2,000만원, 센터가 없는 시군은 도에서 실시

- 방 법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중앙센터 인력풀(강사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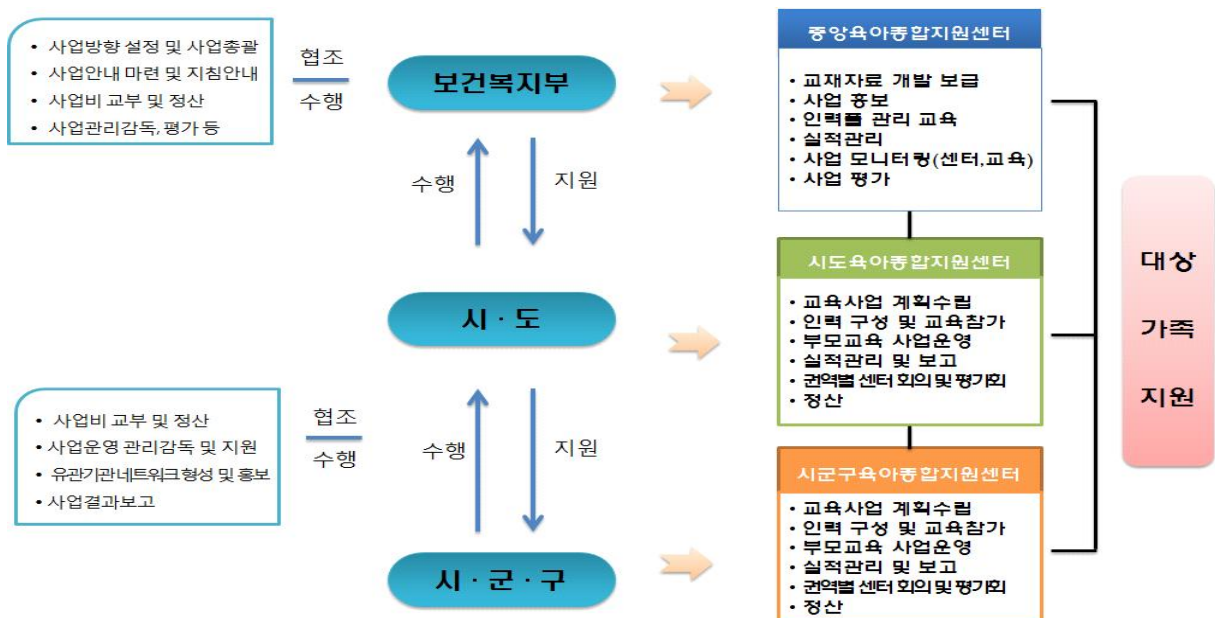
(단위: 개소, 천원, 회)

| 시도 | 시군 수 | 총사업비(국비+지방비) |          |          | 국비교부액   |        |         | 시도센터<br>연간<br>교육횟수<br>(안) |
|----|------|--------------|----------|----------|---------|--------|---------|---------------------------|
|    |      | 계            | 시도<br>센터 | 시군<br>센터 | 계       | 시도     | 시군      |                           |
| 계  | 31   | 505,400      | 65,400   | 440,000  | 252,700 | 32,700 | 220,000 | 132                       |
| 남부 | 21   | 356,360      | 36,360   | 320,000  | 178,180 | 18,180 | 160,000 | 72                        |
| 북부 | 10   | 149,040      | 29,040   | 120,000  | 74,520  | 14,520 | 60,000  | 60                        |

\* 시군 센터당 교육횟수 : 연 40회

### ○ 사업내용

- 부모대상으로 소중한 나, 멋진 아이, 긍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으로 교재 구성(최소 15명 이상, 소그룹 형태)
- 영아용으로 소풍을 가요(생각-신체), 늘어나라 얹(생각-신체·대근육) 구성(최소 10가족 이상)
- 어린이집 이용 가정과 미이용 가정에 균형적으로 진행





### 3

## 부모가 행복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 3-1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근로형태 다양화로 인한 시간연장 보육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 확대

####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 연 혁

- 시행시기 : 2007년

#### □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시장·군수가 지정한 시간연장 어린이집으로서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 사업량 : 2,071개소(남부 1,444 북부 627)
- 지원내용 : 운영비 월 200천원 보조  
 ※ 냉·난방비, 전기·수도료, 간식비, 시간연장 보육교사 수당 등
- 2016년 총사업비 : 4,847,035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구분 | 사업량<br>(개소)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2,071       | 4,847,035    |    | 1,195,580 | 3,651,455 |    |
| 남부 | 1,444       | 3,345,381    |    | 723,750   | 2,621,631 |    |
| 북부 | 627         | 1,501,654    |    | 471,830   | 1,029,824 |    |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14,572,261<br>(9,122,179) | 4,852,800<br>(4,610,997) | 4,872,426<br>(4,511,182) | 4,847,035 |    |
| 남부<br>(집행액) | 10,046,181<br>(6,197,604) | 3,350,400<br>(3,131,000) | 3,350,400<br>(3,066,604) | 3,345,381 |    |
| 북부<br>(집행액) | 4,526,080<br>(2,924,575)  | 1,502,400<br>(1,479,997) | 1,522,026<br>(1,444,578) | 1,501,654 |    |

## □ 2015년도 추진실적

○ 2,126개소 / 886,702천원

– 남부 1,437개소 533,690천원 / 북부 689개소 353,012천원

##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기준

- 시간연장 보육교사 별도 채용 또는 근무수당(종일반 보육교사 연장근무 / 단 시간 보육교사 채용)을 지원받는 어린이집
- 지원시점은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기준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2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나 1명으로 감소될 경우 익월까지 지원

※ 일할계산 지급 금지

○ 제외대상

-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원기준 미 충족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 3-2 24시간 어린이집 야간근무 인건비

도비

보육지원팀

- 24시간 3교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야간근로 인건비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 및 종사자 사기 진작

####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 □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이천시 소재 24시간 3교대 국공립어린이집(아미)
- 사업량 : 1개소 30명
- 지원내용 : 야간근무 교직원의 인건비 보조
- 2016년 총사업비 : 198,660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구분 | 사업량<br>(개소)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1           | 198,660      |    | 59,600 | 139,060 |    |
| 남부 | 1           | 198,660      |    | 59,600 | 139,060 |    |
| 북부 | -           | -            |    | -      | -       |    |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596,164<br>(356,548) | 198,767<br>(198,449) | 198,737<br>(158,099) | 198,660 |    |
| 남부<br>(집행액) | 596,164<br>(356,548) | 198,767<br>(198,449) | 198,737<br>(158,099) | 198,660 |    |
| 북부<br>(집행액) |                      |                      |                      |         |    |

#### □ 2015년도 추진실적

- 2개소 41명 / 31,620천원

□ **아미 어린이집**

- 설립유형 : 국공립어린이집(인가일 '10.5.20)
- 소재지 :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41번길 165
- 시설규모 : 지상 3층, 부지 876m<sup>2</sup>(하이닉스 무상임차), 연면적 710m<sup>2</sup>
  - 건축비 : 961백만원(국비: 589, 도비 246, 시비 126)
- 운영방법 : 민간위탁(청강문화산업대 산학협력단, 최현주 원장)
- 종사자 : 32명(원장, 보육교사 27, 조리원 3, 기타1)
- 정 / 현원 : 100명 / 92명

## &lt; (주)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현황 &gt;

- 종사자수 : 12,623명 (여성근로자 : 6,023명, 47.7%)
- 3교대근무 : 06시 ~ 14시, 14시 ~ 22시, 22시 ~ 익일 08시  
(1개조 휴무, 6일근무 후 근무시간대 이동, 교대 근로자수 : 6,125명, 54.5%)
- 주요생산품목 : 반도체(관련 제품)

- 차량기사의 인건비 지원으로 아동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별도 채용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사업량 : 15개소 (남부 11, 북부 4)
- 지원액 : 개소당 월100만원
- 2016년 총사업비 : 216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구분 | 사업량<br>(개소)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15          | 216,000      |    | 55,200 | 160,800 |    |
| 남부 | 11          | 168,000      |    | 37,200 | 130,800 |    |
| 북부 | 4           | 48,000       |    | 18,000 | 30,000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568,000<br>(350,400) | 168,000<br>(168,000) | 184,000<br>(182,400) | 216,000 |    |
| 남부<br>(집행액) | 424,000<br>(254,400) | 120,000<br>(120,000) | 136,000<br>(134,400) | 168,000 |    |
| 북부<br>(집행액) | 144,000<br>(96,000)  | 48,000<br>(48,000)   | 48,000<br>(48,000)   | 48,000  |    |

**2015년도 추진실적**

- 15개소 / 39,200천원
  - 남부 11개소 24,800천원 / 북부 4개소 14,400천원

## □ 사업 추진 안내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운영 중인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지원요건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 별도 채용
    - ※ 임면보고 및 건강진단서·성범죄 경력 조회 등
  -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준수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제51~53조)
    - ※ 9인승 이상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등
- 지급기준
  - 신규 채용자는 임면 보고 후 익월부터 지급
    - ※ 단,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 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지정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 단,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 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보육교직원 전원 4대 보험료 납부 완료 시 지원
    - ※ 4대 보험 체납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기 지원된 동 보조금은 모두 회수, 4대 보험을 납부 완료한 달부터 지원
- 제외대상
  -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한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법규 위반 시
    - ※ 해당 월 인건비 미 지원(기지원시 환수조치). 시정 등 완료시 익월부터 지원
- 지원중단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지정 취소 시 혹은 통학차량 미운영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 단,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운영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당월부터 지원 중단

### 3-4 시간제보육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양육수당 수급 영아에게 지정된 제공기관을 통하여 긴급·비상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부담 경감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 □ 연 혁

- 사업시행 : 2013년(경기도 2014년)

#### □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긴급·일시보육 필요한 6~36개월 미만 양육수당 수급 영아
- 사업량 : 58반(남부 41, 북부 17)
- 지원내용 : 시간제보육료, 인건비, 운영비 지원

| 구분   | 제공기관                     |  |      |                            | 관리기관  |  |
|------|--------------------------|--|------|----------------------------|---|--|
| 대상   | ·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보육관련시설 |  |      |                            | · 도 및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
| 인건비  | 보육교사                     | · 국공립·법인·육아종합지원센터 : 보육교사 호봉별 단가100%                      |      | 관리자                        | · 보육교사 5호봉 단가(1,767,000원)<br>(사용자부담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  |
|      |                          | · 민간·가정어린이집 : 보육교사 4호봉 단가(1,714,330원)                    |      |                            |   |  |
|      |                          | · 공동 :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만원<br>(사용자부담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      |                            |   |  |
| 운영비  | · 운영비 : 월 32만원(1개반 기준)   |  |      |                            | · 운영비 : 월 50만원(1기관)                               |  |
| 보육료  | 시간당 4천원                  |  |      |                            |   |  |
|      | 기본형                      | 시간당 2천원 지원<br>월 40시간 이용 가능                               | 맞벌이형 | 시간당 3천원 지원<br>월 80시간 이용 가능 | -   |  |
| 주요역할 |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   |  |      |                            | · 상담, 예약 및 모니터링 등 운영지원·관리                         |  |

- 2016년 총사업비 : 3,574백만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구분 | 사업량<br>(반)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58         | 3,574,326    | 1,787,163 | 893,582 | 893,581 |    |
| 남부 | 41         | 2,554,646    | 1,277,323 | 638,662 | 638,661 |    |
| 북부 | 17         | 1,019,680    | 509,840   | 254,920 | 254,920 |    |

####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5,641,074<br>(1,099,687) | 285,960<br>(127,125) | 1,780,788<br>(972,562) | 3,574,326 |    |
| 남부<br>(집행액) | 4,148,478<br>(894,091)   | 258,240<br>(118,484) | 1,335,592<br>(775,607) | 2,554,646 |    |
| 북부<br>(집행액) | 1,492,596<br>(205,596)   | 27,720<br>(8,641)    | 445,196<br>(196,955)   | 1,019,680 |    |

#### □ 2015년도 추진실적

- 31개소 34반, 972,562천원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 관련 법령(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2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일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나.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 수행기관 :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시·도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관리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총괄하며, 제공기관의 수에 따라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인력의 배치와 운영을 조정할 수 있음

### 다. 인력 관리

####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구분        | 어린이집   |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
| 직종(직위)    | ○ 보육교사(담임교사)   |                   |
| 채용기관 및 관리 | 어린이집   | 육아종합지원센터          |
| 채용조건      |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1~3급)<br>○ 경력 : 총 보육경력 3년 이상<br>○ 영아보육 특별직무교육 기 이수자 채용 원칙<br>* 불가피하게 사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                   |
| 담당업무      | ○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및 부모상담 등<br>○ 그 외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                   |

\* 어린이집 외 제공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일괄 채용하여 파견하되, 참여 기관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

| 구 분               | 시·군·구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
|-------------------|---|-------------------|
| 직종(직위)            | ○ 시간제보육 관리자(경력시스템 상의 직위분류 :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                   |
| 채용조건              | <보육전문요원 자격을 가진 자를 관리 인력으로 채용>   |                   |
|                   | <table border="1"> <tr> <td>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td> <td>○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br/>○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td> </tr> </table>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br>○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
|                   |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담당 업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제보육 이용자 상담</li> <li>○ 시간제보육 예약·취소 관리</li> <li>○ 시간제보육 이용자 및 제공기관 모니터링</li> <li>○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운영 지원(이용실적 및 운영현황관리, 서비스 개시지원, 컨설팅 등)</li> <li>○ 시간제보육 홍보 및 안내</li> <li>○ 어린이집 외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교사 채용 및 관리</li> <li>○ 그 외 시간제보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li> </ul> |                   |
| 비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관리기관의 경우, 제공기관수가 10곳을 초과할 경우 운영비 및 인력배치 지원 비율 조정 고려 가능</li> <li>○ 2017년도부터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 역할 담당(2016년은 유예기간으로 됨)</li> </ul>  |                   |

\* 시간제보육 관리자의 경력 반영

- (시·군·구)행정지원시스템 경력 수동 입력(직위 : 일시보육 담당 보육교사, 적용시점 : 2015. 1.1)

## 라. 지원 기준

### 1)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구 분       | 2016년도 세부 지원 내용  |
|-----------|--|
| 보육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료 시간당 4,000원</li> <li>- (기본형) 정부지원금 50% + 부모부담금 50%</li> <li>- (맞벌이형) 정부지원금 75% + 부모부담금 25%</li> <li>※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부담금 100%</li> </ul>   |
| 인건비 및 운영비 | <p>(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li> <li>○ 월 시간제보육 이용건수가 10건(1개반 기준)* 이상인 경우 지원</li> <li>○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li> <li>○ 별도로 교사를 채용한 경우만 지원(대포자·원장의 교사겸직 지원 제외)</li> <li>○ 제공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li> </ul> <p>(인건비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호봉별 단가 100% 지원,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li> <li>○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4호봉 단가 지원, 4대보험中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li> <li>○ (공통) 교사수당 18만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만원 별도 지원(요건 충족 시)</li> </ul> <p>(운영비 지원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32만원 (1개반 기준)</li> </ul> |
| 리모델링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소당 2천만원 이내 실비 지원</li> <li>※ 국공립 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정부 기관에 한하여 별도 선정</li> </ul>  |

\* 월 이용건수 10건(1개반 기준) 미충족 시, 해당 월 포함 2개월까지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가능 (※ 단, 서비스 개시월 미포함)

\*\* 사업개시일 : 서비스 제공준비 완료 및 (육종지)행정지원시스템에서 해당 기관 조회 가능 시점

## 2) 시간제보육 관리기관(시·도 또는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 분             | 2016년도 세부 지원 내용  |
|-----------------|--|
| 인건비<br>및<br>운영비 | (지원조건)<br>○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br>○ 관리기관 사업개시일부터 지원(다만, 지역 내 최초 제공기관 서비스 개시 전월부터 지원 가능)                            |
|                 | (인건비 지원내용)<br>○ 지원단가 : 보육교사 인건비 기준단가(5호봉), 4대보험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   |
|                 | (운영비 지원내용)<br>○ 월 50만원(1기관)<br>※ 단, 1곳의 관리기관이 여러 개의 제공기관을 관리하며, 원거리 출장비 등으로 월 50만원 이상 초과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 마. 운영 기준

#### 1) 대상별 이용 및 지원시간

| 구 분         | 시간제보육   |   |         |
|-------------|---|---|---------|
|             | 기본형   | 맞벌이형  |         |
| 이용대상        | 6개월 ~ 36개월 미만 영아<br>※ 유아반(36개월 이상~만5세)의 경우, 일부기관에서 시범운영 중 |   |         |
| 지원대상        | 양육수당 수급자인 가정양육 가구   | 양육수당 수급자 중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취업한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 등 |         |
| 지원시간        | 월 40시간  | 월 80시간  |         |
| 보<br>육<br>료 | 이용단가  | 시간당 4천원   |         |
|             | 지원단가  | 시간당 2천원   | 시간당 3천원 |
|             | 부모부담  | 시간당 2천원   | 시간당 1천원 |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

#### 2) 정원 및 교사 대 영아 비율

- (정원기준) 종일제 정원 내, 시간제보육을 위한 5명 이상의 정원 확보
- (교사 대 영아비율) 1:5(24개월 미만, 장애아 등이 예약한 경우 1:3)

| 반 구분                | 교사 대 영아비율     |
|---------------------|---------------|
| 24~35개월 영아만 보육하는 경우 | 교사 1명 : 영아 5명 |
| 6~23개월 영아가 포함된 경우   | 교사 1명 : 영아 3명 |
| 등록 장애아가 포함된 경우      |               |

\* 시간제보육반은 초과보육 불인정

#### 3) 운영시간

- (원칙)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
| 운영 시간 | 09:00 ~ 18:00 |   |   |   |   |

\* 제공기관의 임의적인 운영 요일 및 시간 변경 불가

#### 4)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자격 신청

○ (구비서류) 맞벌이형 시간제보육 신청서, 증빙서류

- (맞벌이형) 읍·면·동 주민센터에 맞벌이 여부를 증빙하고 맞벌이형 이용권을 신청

※ 구비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한함

※ '맞벌이형' 서비스 신청 후 유효기간 확인은

[임신육아종합포털 ⇨ 보육서비스 ⇨ 시간제보육 사업 ⇨ 시간제보육 이동등록에서 가능

### ■ 신청 및 맞벌이 여부에 따른 제공 서비스 ■

| 구 분  |   | 맞벌이 등 여부 |     |
|------|---|----------|-----|
|      |   | ○        | ×   |
| 신청여부 | ○ | 맞벌이형     | 기본형 |
|      | × | 기본형      | 기본형 |

- (기본형)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양육수당 신청시 시간제보육 기본형 이용권 지급

#### 5) 시간제보육 예약 및 이용

| 구 분  | 사전예약   | 당일예약              |
|------|--|-------------------|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br>전화신청 (☎1661-9361)  | 전화신청 (☎1661-9361) |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1일 전까지  | 서비스 이용 당일까지       |
| 신청인원 | 정원의 60%(3명)  | 정원의 40%(2명)       |
| 제출서류 |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다운로드)<br>○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
| 준비물  | ○ 개별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br>○ 아이행복카드(사전 발급 필수)<br>※ 2015년 신규카드 신청부터 아이행복카드(보육료·유아학비 지원 통합카드)로 변경<br>* 종전 아이사랑카드는 계속 사용 가능 |                   |

\*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간식이 제공되지 않음. 다만,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

\* 아이행복(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4,000원)

- 0세아 보육의 특수성 및 부모의 다양한 보육요구 부응하여 출산율 제고 및 맞벌이 및 취업여성의 0세아 보육 문제 해소를 사회·경제활동 활성화 기여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연혁**

- 사업시행 : 2008년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0세아전용 어린이집으로 지정 받은 가정·민간어린이집
- 사업량 : 170개소(남부 90, 북부 80)
- 지원내용 : 0세아 교사대 아동 비율 조정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 1,400천원(월·인)
  - 추가반 운영비 : 400천원(월·반)
  -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 410천원(월·인)
  - 조리원 인건비 : 600천원(월·인) ※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한함
- 2016년 총사업비 : 8,016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구분 | 사업량<br>(개소)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170         | 8,016,675    |    | 2,157,867 | 5,858,808 |    |
| 남부 | 90          | 4,835,300    |    | 1,246,845 | 3,588,455 |    |
| 북부 | 80          | 3,181,375    |    | 911,022   | 2,270,353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25,051,362<br>(15,439,081) | 8,120,931<br>(6,843,382) | 8,913,756<br>(8,595,699) | 8,016,675 |    |
| 남부<br>(집행액) | 14,364,800<br>(8,596,694)  | 4,668,000<br>(3,877,318) | 4,861,500<br>(4,719,376) | 4,835,300 |    |
| 북부<br>(집행액) | 10,686,562<br>(6,842,387)  | 3,452,931<br>(2,966,064) | 4,052,256<br>(3,876,323) | 3,181,375 |    |

**2015년도 추진실적**

- 167개소, 8,595,699천원

## □ 사업 추진 안내

### 지정기준

- 대상 :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정원 21인이하)을 대상으로 하되 시간연장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
  - ※ 행정처분기간 종료후 2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어린이집(보육교직원 포함)은 지정 불가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시·군별 필요서류
- 지정권자 : 시장·군수
- 우선순위
  - 1순위 :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
  - 2순위 : 정원기준 보육실 면적이 넓은 어린이집
  - 3순위 : 기존어린이집 중 0세아 보육비율이 높은 어린이집 및 신규어린이집
  - ※ 시장·군수는 배정량, 영아보육 수요, 인근 영아전담 유무 등을 검토하여 조정 가능
- 시장·군수는 공고 후 신청 접수하여 10일 이내 지정하고 도에 결과 보고
- 지정 어린이집에 “0세아전용 어린이집 지정서” 교부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
- 지정취소
  - 영유아보육법령 및 관련 지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시·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지정 취소” 심의 의결시
  - 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단, 배우자·직계존비속·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 1년 이상 재직중)이 대표자로 변경시 및 동일 행정동(읍면 제외) 내 소재지 변경시 시·군에서 판단하여 유지 가능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시장·군수는 0세아전용 어린이집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지정이 취소된 경우 다른 어린이집 대체 지정 불가(도에 지정취소 보고)

### 운영기준

- 입소기준 : 출생 후 18개월까지의 아동(14년 12월생의 경우 16년 6월까지)
- 퇴소기준 :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은 퇴소
- 반편성기준 : 0세반(1:2), 1세반(1:3),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이상시(1:3)
  - 1세반은 3개반까지 편성 인정, 혼합반(0세,1세) 1개 구성 가능
  - 1세반이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반 중 1개반에 한하여 1:4로 편성
  - 혼합반 운영시 교사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비율(1:2) 준수
  - 시간연장 보육은 퇴소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영아로만 운영 가능
  - 단, 이용 영아의 형제자매는 퇴소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간연장 보육 가능
  - 중소기업(공동)설치·의무 사업장 이외 설치 직장어린이집에서 0세아 전용반을 편성·운영하는 곳 동일 기준 지원(혼합반 제외)
  - ※ 지방자치단체·공기업 설치 직장어린이집 지원 제외(단, 공기업공동설치 어린이집은 지원)
  - ※ 고용노동부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 보육교사 인건비와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준

- 인건비 및 운영비는 0세아전용 어린이집 지정 후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0세반 3명 또는 1세반 4명 이상을 실제로 보육하는 월부터 지원
    - ※ 1세반은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0세아전용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함
    - 신규 지정 또는 교사조리원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할 계산하여 지급(추가반 운영비도 동일 적용)
- <예시> 3월 17일에 신규 채용한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액  
 지원액 :  $1,400\text{천원} \times 15(\text{근무일수}) / 31(\text{해당월의 일수}) = 677,410\text{원}(\text{원단위 절사})$   
 ※ 근무일수 및 해당월의 일수 : 토·일·공휴일 포함
- 전용 어린이집 지정 운영 중 아동 퇴소로 추가반이 감소되는 경우 아동 퇴소 후 익월까지 재직중인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가능
    - ※ 인건비는 추가반 보육교사 및 조리원 기본급에 사용하고, 운영비는 추가반 보육교사 퇴직적립금 및 보육교직원(원장 제외) 제수당, 사용자부담분 사회보험, 기타 후생경비에 사용
  -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규지정 되는 경우 0세반, 1세반에 편성되지 않는 전체 아동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퇴소 완료 후 운영기준 준수한 월부터 지원
  - 조리원 인건비는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평가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별도 채용 조리원에 한하여 지원
    - 새롭게 평가인증 받은 경우 평가인증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은 보건복지부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사업 기준을 준수하고,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0세아 3명 이상(0세아 2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익월까지 지원)이며 총 4명 이상일 때 시간연장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1:5→1:3) 운영에 따른 추가반에 대하여 주간 보육교사 초과근무 형태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
    - 시간연장 미지정의 경우도 운영기준 준수시 추가반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운영기준 위반 월부터 조리원과 추가반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지원 중단하고 운영기준 준수 월부터 지원
  - 운영기준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 지정 취소 또는 평가인증 취소시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단,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운영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당월부터 지원 중단
  - 공공형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중복 지정·운영 불가

## 추가반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기준

**<0세반> <혼합반:0세아,1세아 각 1명시 또는 0세아만 1명 있을시>**

| 아동수        | 기존 1:3 보육<br>반 수 (a) | 전용 1:2 보육<br>반 수 (b) | 추가반<br>(b-a) | 비 고 |
|------------|----------------------|----------------------|--------------|-----|
| 3명         | 1                    | 2                    | 1            |     |
| 4명         | 2                    | 2                    | 1            |     |
| 5명         | 2                    | 3                    | 1            |     |
| 6명         | 2                    | 3                    | 1            |     |
| 7명         | 3                    | 4                    | 1            |     |
| 8명         | 3                    | 4                    | 1            |     |
| 9명         | 3                    | 5                    | 2            |     |
| <b>10명</b> | <b>4</b>             | <b>5</b>             | <b>2</b>     |     |
| 11명        | 4                    | 6                    | 2            |     |
| 12명        | 4                    | 6                    | 2            |     |
| 13명        | 5                    | 7                    | 2            |     |
| 14명        | 5                    | 7                    | 2            |     |
| 15명        | 5                    | 8                    | 3            |     |
| <b>16명</b> | <b>6</b>             | <b>8</b>             | <b>3</b>     |     |
| 17명        | 6                    | 9                    | 3            |     |
| 18명        | 6                    | 9                    | 3            |     |
| 19명        | 7                    | 10                   | 3            |     |
| 20명        | 7                    | 10                   | 3            |     |

**<1세반> <혼합반:1세아만 1명 있을시> <시간연장반:0세아 3명 이상시>**

| 아동수        | 기존 1:5 보육<br>반 수 (a) | 전용 1:3 보육<br>반 수 (b) | 추가반<br>(b-a) | 비 고                           |
|------------|----------------------|----------------------|--------------|-------------------------------|
| 4명         | 1                    | 2                    | 1            |                               |
| 5명         | 1                    | 2                    | 1            |                               |
| <b>6명</b>  | <b>2</b>             | <b>2</b>             | <b>1</b>     | 시간연장 추가반의 경우<br>국비 2명 지원시 미지원 |
| 7명         | 2                    | 3                    | 1            |                               |
| 8명         | 2                    | 3                    | 1            |                               |
| 9명         | 2                    | 3                    | 1            |                               |
| <b>10명</b> | <b>2</b>             | <b>3</b>             | <b>1</b>     | <b>1개반 1:4 허용</b>             |

예) 종일반 보육아동이 0세반 7명, 1세반 10명인 경우 0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 1세반에 대하여 1개의 추가반을 운영하여 총 2개의 추가반에 대한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함  
 시간연장반 보육아동이 0세아 3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0세, 1세, 형제자매 총 10명인 경우 반편성 조정(1:5→1:3) 운영하여 1개의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을 지원함  
 시간연장반 0세아 3명 미만인 경우 1:5 반편성하므로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 미지원





<첨부 2>

제 호

## 0세아전용 어린이집 지정서

어린이집명칭 :

소재지 :

보육정원 : 명

대표자 성명 : ○ ○ ○ (1900년 0월 0일생)

위 어린이집을 0세아전용 어린이집으로 지정함

년 월 일

○ ○ 시장 · 군수(관인)

-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에 대한 배려와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보육료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인건비 지원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06년

□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외국인근로자 자녀 전담 및 통합 지정받은 어린이집
- 사업량 : 58개소 60명(남부 48개소 50명, 북부 10개소 10명)
- 지원내용 : 전담 및 통합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지원(전담3인, 통합1인)  
- 교사 인건비 : 1,300천원(월·인)
- 2016년 총사업비 : 696백만원(도비 30%, 시군비 70%)

| 구분 | 사업량<br>(명)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60         | 695,675      |    | 183,458 | 512,217 |    |
| 남부 | 50         | 549,500      |    | 125,250 | 424,250 |    |
| 북부 | 10         | 146,175      |    | 58,208  | 87,967  |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2,101,902<br>(1,286,412) | 636,502<br>(551,034) | 769,725<br>(735,378) | 695,675 |    |
| 남부<br>(집행액) | 1,657,655<br>(1,035,600) | 484,605<br>(433,422) | 623,550<br>(602,178) | 549,500 |    |
| 북부<br>(집행액) | 444,247<br>(250,812)     | 151,897<br>(117,612) | 146,175<br>(133,200) | 146,175 |    |

□ **2015년도 추진실적**

- 52개소 54명, 735,378천원

## □ 사업 추진 안내

### 운용기준

#### 가. 지원기준

| 외국인근로자 자녀 전담어린이집  | 외국인근로자 자녀 통합어린이집   |
|---|--|
| <p>◆ <b>어린이집 당 3인까지 지원</b><br/>(보육교사 배치기준에 따른 1개반 당 교사1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원기준 0세반 2명, 1세반 3명, 2세 이상반 50% 이상일 경우 또는</li> <li>- 보육교사 배치현황이 아래와 같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인원이 1~ 5명 : 보육교사 1인</li> <li>· 보육인원이 6~10명 : 보육교사 2인</li> <li>· 보육인원이 11명이상 : 보육교사 3인</li> </ul> </li> </ul> <p>※ 아동이 위의 최저기준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월의 익월까지 지원</p> | <p>◆ <b>어린이집 당 1인 지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인원이 3명 (연령에 관계없이)이상일 경우</li> </ul> <p>※아동이 2명으로 감소되는 경우 감소되는 달의 익월까지 지원</p> |

#### 나. 지원시점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 요건(보육교사 적정배치, 어린이집인가 등)을 갖추어 운영하는 월의 익월부터
  - ※ 지원어린이집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추가지정 가능(지정사항 도에 통보)

#### 다. 운영기준

- 외국인근로자 자녀 인건비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은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보육료를 최소 30%이상 감면하도록 행정권고
-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어린이집에서는 저소득외국인근로자 자녀 관리카드(아동명, 연령, 주소, 국적, 보호자 성명 및 직장명, 전화번호, 입·퇴소 시간, 아동사진 등) 작성 비치

#### 라. 지정취소

- 시장·군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 어린이집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지정을 취소
  - 영유아보육법령 및 관련 지침에 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 의견청취의 절차나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준하여 시행



### 3-7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국·도비

보육시설팀

- 농어촌지역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지원하여 이용 아동의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업량 : 43개소(남부 30, 북부 13)
- 지원내용 : 정원 및 정원충족률에 따라 월200~280천원 차등 지원
  - 냉·난방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공과금, 차량운행비, 교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 일부지원

| 정원구분    | 60인 이하  | 61~80인 이하 | 81~100인 이하 | 101~120인 이하 | 121인 이상 |
|---------|---------|-----------|------------|-------------|---------|
| 60%이하   | 240천원/월 | 250천원/월   | 260천원/월    | 270천원/월     | 280천원/월 |
| 61~80%  | 220천원/월 | 230천원/월   | 240천원/월    | 250천원/월     | 260천원/월 |
| 81~100% | 200천원/월 | 210천원/월   | 220천원/월    | 230천원/월     | 240천원/월 |

#### □ 예산현황

- 2016년 총사업비 : 113,475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구분  | 사업량<br>(개소)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계   | 43          | 113,475        | 62,096 | 29,976 | 21,403 |    |
| 본 청 | 30          | 77,551         | 41,394 | 20,173 | 15,984 |    |
| 북부  | 13          | 35,924         | 20,702 | 9,803  | 5,419  |    |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계<br>(집행액)   | 352,229<br>(111,970) | 122,567<br>(111,970) | 116,187 | 113,475 |    |
| 본 청<br>(집행액) | 254,099<br>(81,790)  | 90,764<br>(81,790)   | 85,784  | 77,551  |    |
| 북부<br>(집행액)  | 98,130<br>(30,180)   | 31,803<br>(30,180)   | 30,403  | 35,924  |    |

□ 2015년 추진실적

- 43개소, 89,700천원

□ 사업추진 기준

※ '농어촌' 에 해당하는 지역

-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 동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준농어촌 및 준농산어촌

○ 농어촌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어린이집 접근성 강화 및 장애아동의 편의 증진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연 혁**

○ 시행시기 : 2007년부터 시행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농어촌소재 어린이집 및 정부지원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 사업량 : 1,191개소(남부 655, 북부 536)
- 지원내용 : 개소당 월200천원

□ **예산현황**

○ 2016년 총사업비 : 2,527,462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구분  | 사업량<br>(개소)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계   | 1,191       | 2,527,462      | 1,430,463 | 671,012 | 425,987 |    |
| 본 청 | 655         | 1,392,514      | 785,184   | 363,934 | 243,396 |    |
| 북부  | 536         | 1,134,948      | 645,279   | 307,078 | 182,591 |    |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계<br>(집행액)   | 7,828,045<br>(2,659,986) | 2,667,957<br>(2,659,986) | 2,632,626 | 2,527,462 |    |
| 본 청<br>(집행액) | 4,504,268<br>(1,473,365) | 1,480,061<br>(1,473,365) | 1,631,693 | 1,392,514 |    |
| 북부<br>(집행액)  | 3,323,777<br>(1,186,621) | 1,187,896<br>(1,186,621) | 1,000,933 | 1,134,948 |    |

□ **2015년도 추진실적**

○ 1,694개소, 2,136,084천원

## □ 사업추진 안내

- 지원대상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시장·군수에게 신청
  - 어린이통학 버스신고필증 보관 시장·군수 제출 요구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 9인승 이상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합버스로 지정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차량운영비 적정 집행여부 수시 확인.
  - 지원기준 위반 허위로 신청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된 차량운영비 전액 환수
  - ※ 시·군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기준 조종 우선순위 정하여 지원 가능
  - 2016년 사업량

| 구 분  | 사업량   | 비 고 | 구 분 | 사업량 | 비 고 |
|------|-------|-----|-----|-----|-----|
| 도 전체 | 1,191 |     |     |     |     |
| 남부   | 655   |     | 북부  | 536 |     |
| 수원시  | 1     |     | 고양시 | 37  |     |
| 성남시  |       |     | 남양주 | 228 |     |
| 부천시  | 1     |     | 의정부 | 0   |     |
| 용인시  | 112   |     | 파주시 | 95  |     |
| 안산시  | 3     |     | 양주시 | 60  |     |
| 안양시  | 1     |     | 구리시 | 0   |     |
| 평택시  | 84    |     | 포천시 | 65  |     |
| 시흥시  | 1     |     | 동두천 | 9   |     |
| 화성시  | 86    |     | 가평군 | 20  |     |
| 광명시  | 0     |     | 연천군 | 22  |     |
| 군포시  | 0     |     |     |     |     |
| 광주시  | 124   |     |     |     |     |
| 김포시  | 40    |     |     |     |     |
| 이천시  | 55    |     |     |     |     |
| 안성시  | 83    |     |     |     |     |
| 오산시  | 1     |     |     |     |     |
| 하남시  | 1     |     |     |     |     |
| 의왕시  | 5     |     |     |     |     |
| 여주시  | 22    |     |     |     |     |
| 양평군  | 35    |     |     |     |     |
| 과천시  | 0     |     |     |     |     |



-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기반 제공 및 다양한 보육욕구에 맞춤형으로 대응하여 가정 내 공보육 실현

##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 연 혁

- 시행시기 : 2008년 1월

## □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맞벌이 0~24개월 이하 영아
- 사업량 : 199가정(남부 150, 북부 49)
  - 남부(150가정) : 수원(45) 성남(25) 부천(23) 용인(15) 안양(18)  
광명(3) 오산(4) 의왕(7) 과천(2) 도 유보액(8)
  - 북부(49가정) : 고양(30), 의정부(8), 구리(6), 남양주(5)
- 사업내용 : 보육교사가 영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1:1 보육 지원
  - 영아의 월령과 발달특성에 맞는 가정보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체계적 보육서비스(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제공
  - ※ 道 가정보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이론·실제편) : 2009년 2월, 2011년 4월
  - 道 가정보육 모니터링 지표개발·도입 : 2011년 2월
- 지원내용(1가정/월)
  - 이용가정 : 아이돌봄(보육교사형) 수준으로 이용가정지원금 차등지원
    - (기존) 170 ~ 367천원, (신규) 0 ~ 240천원
  - 교사지원금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0천원, 특수근무수당 50~100천원
    - ※ '16년 아이돌봄(보육교사형)사업 지원내용 변경으로 소득기준 120%(4인가족 527만원) 초과신규 가정은 이용가정 및 교사지원금 없음

○ 2016년 총사업비 : 1,560백만원(국비 0%, 도비 22%, 시군비 78%)

| 구분  | 사업량<br>(명)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 계 | 199        | 1,560,899      |    | 348,065 | 1,212,834 |    |
| 남부  | 150        | 1,210,406      |    | 251,442 | 958,964   |    |
| 북부  | 49         | 350,493        |    | 96,623  | 253,870   |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    | 7,133,281 | 3,214,322 | 2,358,060 | 1,560,899 |    |
| (집행액) | 1,287,816 | (552,795) | (386,956) | (348,065) |    |
| 남부    | 5,476,685 | 2,454,322 | 1,811,957 | 1,210,406 |    |
| (집행액) | (941,062) | (405,659) | (283,961) | (251,442) |    |
| 북부    | 1,656,596 | 760,000   | 546,103   | 350,493   |    |
| (집행액) | (346,754) | (147,136) | (102,995) | (96,623)  |    |

※ 가정보육교사 사업 단계적 축소( '18년 사업종료)

- ( '15년) △10% → ( '16년) △30% → ( '17년) △60% → ( '18년) △100%

□ 2015년도 추진실적

○ 이용가정·교사연계 및 모니터링('15.9월) : 199가정(누계 2,622가정)

- 남부 149(2,006)가정, 북부 50(616)가정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맞벌이 0~24개월 이하 영아

○ 교사자격 :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보육경력 2년 이상 또는 본인이 출산·육아 경험이 있는 자

※ 교사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 없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심사·선발

○ 지원내용(1가정/월)

- 이용가정 : 아이돌봄(보육교사형) 수준으로 이용가정지원금 차등지원  
· (기존) 170 ~ 367천원, (신규) 0 ~ 240천원

- 교사지원금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50천원, 특수근무수당 50~100천원
- ※ '16년 아이돌봄(보육교사형)사업 지원내용 변경으로 소득기준 120%(4인가족 527만원) 초과신규 가정은 이용가정 및 교사지원금 없음

## 나. 지원기준

### 《 부모 지원 》

#### ① 부모보육료(월) : “0~240천원”

- 지원대상 :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 영아가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기간 : 24개월 이하 영아

#### ② 교사지원금(월) : “0~170천원”

- 지원대상 : 가정보육교사로서 활동 중인 보육교사
- 지원기간 : 24개월 이하 영아 원칙
- 〈예외〉 24개월 초과 보육시 교사 안전보육 및 소속감 제고를 위하여 교사 지원금 및 보험료 계속 지원(단, 부모보육료 미지급)

#### < 부모 지원 기준 >

- 지원기준 :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이용(근무)한” 날짜만큼 일할 계산하여 신청·지급  
- 단, 이용기간 5일 미만 이용(근무)자는 미지원함
- 지급방법 : 월 단위 지원(천원 미만 단위 절사), 익월 5일 교사 및 부모에게 지급  
- 단, 12월은 해당 월 말일 지급 원칙  
※ 입금시 지원항목별로 지원항목 단가에서 천원미만 절사된 금액 표기
- 주의사항 : 가정보육교사제도와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료 중복지원 불가**(가정양육수당 지원 가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겸직 활동 불가 / 부모·교사지원금 중복지원 불가**  
어린이집 이용여부(교사·부모) 수시 확인하여, 이중등록으로 **중복 지원받은 경우 부모지원금(부모보육료, 교사지원) 시·군과 연계하여 환수조치**
- ※ '16년 1. 1일 이후 신규가정은 「'16년 아이돌봄(보육교사형)」 정부지원단가 및 기준 적용하여, “아이돌봄 차액지원(0~240천원)”으로 지원항목 변경하여 지급함

#### ③ 양육수당(월) : “200~100천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 소득에 상관없이 수당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복지로 및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

## 《 교사 지원 》

④ 교사근무환경개선비(월) : “150천원”

⑤ 특수근무수당(월) : “100~50천원”

| 구분      | 지원액     | 자격조건   |
|---------|---------|--|
| 영아전문교사  | 월 50천원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영아전문과정 이수자<br>-대학(교) 보육학과, 아동학과 졸업자, 학과명에 보육이 포함되는 학과 졸업자 |
| 다문화전문교사 | 월 50천원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다문화전문교육과정 이수자   |
| 장애아전문교사 | 월 100천원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장애아전문교육과정 이수자<br>-특수교사·치료사 유자격자                           |

### < 교사 지원 기준 >

○ 지원대상 : 가정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자로써 아래 요건 충족하는 사람

※ 특수근무수당은 자격 조건 충족시 지원

○ 지원조건 : 이용가정에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이상인 사람

## 다. 사업수행 기관

| 연 번 | 센터명   | 전담인력 | '16년 사업량                      | 연락처          | 사업 종료시기                          |
|-----|-------|------|-------------------------------|--------------|----------------------------------|
|     |       | 15   | 199(도 유보8명)                   |              |                                  |
| 1   | 경기도   | 2    | 용인(15), 오산(4)<br>의왕(7), 광명(3) | 031-258-1485 | 의왕(17), 광명(17)<br>용인(18), 오산(18) |
| 2   | 경기도북부 | 2    | 남양주(5), 구리(6)                 | 031-876-5042 | 남양주(17)<br>구리(18)                |
| 3   | 수원    | 2    | 45                            | 031-255-5689 | 18년                              |
| 4   | 성남    | 2    | 25                            | 031-721-1640 | 18년                              |
| 5   | 부천    | 2    | 23                            | 032-322-8686 | 18년                              |
| 6   | 안양    | 1    | 18                            | 031-381-5170 | 17년                              |
| 7   | 의왕    | 1    | 7                             | 031-455-1853 | 17년                              |
| 8   | 고양    | 2    | 30                            | 031-975-3314 | 18년                              |
| 9   | 의정부   | 1    | 8                             | 031-853-5008 | 18년                              |

## 참고

# 이용가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 기존가정

#### ○ '15. 6월말 이용가정

(단위 : 천원)

| 연령 구분              | 총계<br>(a)+b<br>+c)+d | 이용가정 정부지원금      |            |              |               |               |              |                   |                | 본인 부담<br>d |
|--------------------|----------------------|-----------------|------------|--------------|---------------|---------------|--------------|-------------------|----------------|------------|
|                    |                      | 소계<br>(a)+b)+c) | 양육 수당<br>a | 이용가정지원금(㉔)   |               |               | 교사지원금(㉕)     |                   |                |            |
|                    |                      |                 |            | 소계<br>(㉔)+㉕) | 부모 보육료<br>(㉔) | 교사 지원금<br>(㉕) | 소계<br>(㉔)+㉕) | 교사근무 환경개선비<br>(㉔) | 특수 근무수당<br>(㉕) |            |
| 0세<br>(12개월 미만)    | 1,450                | 717             | 200        | 367          | 197           | 170           | 150~250      | 150               | 50~100         | 733        |
| 1세<br>(12~24개월 미만) | 1,450                | 643             | 150        | 343          | 173           | 170           | 150~250      | 150               | 50~100         | 807        |
| 2세<br>(24~30개월 미만) | 1,450                | 250             | 100        | -            | -             | -             | 150~250      | 150               | 50~100         | 1,200      |

#### ○ '15. 7월 ~ 12월 이용가정

(단위 : 천원)

| 연령 구분              | 소득기준<br>(전국가구평균 소득4인기준) | 총계<br>(a)+b<br>+c)+d | 이용가정 정부지원금         |            |              |               |               |              |                   |                | 본인 부담<br>d |
|--------------------|-------------------------|----------------------|--------------------|------------|--------------|---------------|---------------|--------------|-------------------|----------------|------------|
|                    |                         |                      | 소계<br>(a)+b<br>+c) | 양육 수당<br>a | 이용가정지원금(㉔)   |               |               | 교사지원금(㉕)     |                   |                |            |
|                    |                         |                      |                    |            | 소계<br>(㉔)+㉕) | 부모 보육료<br>(㉔) | 교사 지원금<br>(㉕) | 소계<br>(㉔)+㉕) | 교사근무 환경개선비<br>(㉔) | 특수 근무수당<br>(㉕) |            |
| 0세<br>(12개월 이하)    | 100% 이하<br>(4,974천원)    | 1,450                | 610                | 200        | 260          | 90            | 170           | 150~250      | 150               | 50~100         | 840        |
|                    | 100% 초과                 | 1,450                | 520                | 200        | 170          | -             | 170           | 150~250      | 150               | 50~100         | 930        |
| 1세<br>(13~24개월 이하) | 100% 이하<br>(4,974천원)    | 1,450                | 550                | 150        | 250          | 80            | 170           | 150~250      | 150               | 50~100         | 900        |
|                    | 100% 초과                 | 1,450                | 470                | 150        | 170          | -             | 170           | 150~250      | 150               | 50~100         | 980        |

### □ 신규가정

#### ○ '16. 1. 1일 이후

(단위 : 천원)

|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 연령구분               | 총계    | 이용가정 정부지원 |        |      | 본인부담액 |
|---------------------|--------------------|-------|-----------|--------|------|-------|
|                     |                    |       | 소계        | 아이돌봄차액 | 양육수당 |       |
| 120% 이하<br>(527만원)  | 0세<br>(12개월 미만)    | 1,560 | 390       | 190    | 200  | 1,170 |
|                     | 1세<br>(12~24개월 미만) | 1,560 | 390       | 240    | 150  | 1,170 |
| 120% 초과             | 0세<br>(12개월 미만)    | 1,560 | 200       | -      | 200  | 1,360 |
|                     | 1세<br>(12~24개월 미만) | 1,560 | 150       | -      | 150  | 1,410 |

※ '15년 7월부터, 국비 유사사업(아이돌봄 보육교사형) 지원단가 수준으로 가정보육교사제도 지원금액 조정

- 엄마와 아이를 위한 보육공간 운영으로 출산·보육 친화기반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을 위한 균형보육 실현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량 : 32개소(남부 27, 북부 5) ※ 18개 시·군(남부 13, 북부 5)
  - 남부(27) : 수원(4), 성남(3), 부천(3), 안산(1), 안양(1), 평택(1) 시흥(3) 화성(2), 이천(1), 안성(1), 오산(4), 양평(1), 과천(2)
  - 북부(5) : 고양(1), 남양주(1), 의정부(1), 파주(1), 구리(1)
- ※ 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1개소는 설치부지 변경으로 '16년 9월 개소 예정
- 운영장소 : 공공시설, 임대아파트, 전통시장의 유휴 공간 내
- 이용대상 : 취학 전 영·유아와 부모(보호자)
- 사업내용 : 영유아·부모가 함께하는 놀이 공간 및 전문보육프로그램 육아상담 등 제공
- 지원내용 : 시설규모별 100백만원~160백만원 차등지원

<시설 유형>

| 구분                   | A형                               | B형                                 | C형                                  |
|----------------------|----------------------------------|------------------------------------|-------------------------------------|
| 면적(㎡/평)              | 49㎡~99㎡(15~29평)                  | 100㎡~165㎡(30평 ~ 49평)               | 165㎡초과(50평 초과)                      |
| 보육교사                 | 1~2명                             | 2~3명                               | 3~4명                                |
| 주요공간                 | 놀이실 부모쉼터 수유실, 안내데스크              | · A형+상담실(독립)                       | · B형+교육실                            |
| 운영비(년)               | 1억원<br>(인건비 50, 관리비 15, 프로그램 35) | 1.3억원<br>(인건비 74, 관리비 19, 프로그램 37) | 1.6억원<br>(인건비 100, 관리비 21, 프로그램 39) |
| 설치비(1회)<br>(도비 100%)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 A형: 4개소(남부 2, 북부 2), B형: 11개소(남부 11), C형: 17개소(남부 14, 북부 3)

○ 2016년 총사업비 : 4,550백만원(도비 21%, 시군비 79%)

| 구분 | 사업량<br>(개소)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계  | 32          | 4,550,000      |    | 973,000 | 3,577,000 |    |
| 남부 | 27          | 3,870,000      |    | 779,000 | 3,091,000 |    |
| 북부 | 5           | 680,000        |    | 194,000 | 486,000   |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계  | 4,520,000<br>(792,000) | 4,557,000<br>(808,000) | 4,550,000<br>(973,000) |    |
| 남부 | 3,870,000<br>(649,000) | 3,877,000<br>(656,000) | 3,870,000<br>(779,000) |    |
| 북부 | 650,000<br>(143,000)   | 680,000<br>(152,000)   | 680,000<br>(194,000)   |    |

□ **2015년도 추진실적**

- 이용실적( '15년 9월) 389,451명
  - 남부 334,566명, 북부 54,885명
- 행자부 정부합동평가(사회복지)에 우수 사업으로 선정('14.10월)

□ **향후 추진계획**

- 아이러브맘 카페(시흥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16. 9월 개소 예정
- 아이러브맘 카페 도비지원 종료 : '17년부터(예정)

□ **사업 추진 안내**

**가. 운영기준**

① 이용대상 : 영유아.부모

- 기본요건 : 미취학 영유아의 부모(법적 보호자)로서, 회원 가입을 완료한 자
  - 가입조건 : 해당 시·군 주민 또는 해당 시·군에 재직 중인 직장인으로서 0세~취학전 연령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

- 제3자(가정보육교사, 친인척 등)가 부모를 대신하여 서비스 희망 시, 반드시 회원가입자의「보호자 동의서」제출 후 이용
  - ※ 부모(법적보호자)가 회원으로 사전 등록한 경우로 제한
- 이용시간 : (원칙) 월~금 09:00~18:00, 토 10:00~17:00
  - ※ 단, 토요일 근무는 공공기관내 위치하여 시설물 자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이용수요가 없을 경우 휴무 가능함(토요휴무에 대하여 사전 안내)
- 이용요금 : (원칙) 무료
  - ※ 아이러브맘 카페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재료비, 참가비, 발달 검사비 등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 실비 수납 가능함
    - ☞ 실비 수납의 경우, 전용 통장 마련하여 수납·관리함(수입지출대장 작성)
- 운영인력
  - 채용조건 :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
  - 종사자 처우 : 「2016년도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적용
  - 근무시간 : 주당 40시간 원칙
    - 주 6일 이상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주말 근무자에 한해 주중 유연근무 대체 휴무 또는 예산 범위 내 초과근무 수당지급(근로기준법 적용)
- 예산범위 내 적정 배치인원, 고용형태, 급여액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의 위생관리, 장난감 및 교구의 소독 등을 위하여 보조인력 둘 수 있음

## 나. 지원기준 및 내용

- 지원기준(년/개소) : 시설규모별 차등지급
- 지원내용 :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비 등

(단위 : 천원)

| 구분                   | A형                               | B형                                 | C형                                  |
|----------------------|----------------------------------|------------------------------------|-------------------------------------|
| 면적(㎡/평)              | 49㎡~99㎡(15~29평)                  | 100㎡~165㎡(30평 ~ 49평)               | 165㎡초과(50평 초과)                      |
| 보육교사                 | 1~2명                             | 2~3명                               | 3~4명                                |
| 주요공간                 | 놀이실 부모쉼터 수유실, 안내데스크              | · A형+상담실(독립)                       | · B형+교육실                            |
| 운영비(년)               | 1억원<br>(인건비 50, 관리비 15, 프로그램 35) | 1.3억원<br>(인건비 74, 관리비 19, 프로그램 37) | 1.6억원<br>(인건비 100, 관리비 21, 프로그램 39) |
| 설치비(1회)<br>(도비 100%) | 1억원                              | 1.5억원                              | 2억원                                 |

- ※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항목 간 탄력적으로 예산집행 가능(단, 보조금액의 10% 내)  
예) 인건비 : A형 45~55백만원, B형 67~81백만원, C형 90~110백만원



## ○ 세부 지원내용

- 인건비 : 2016년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수기준 적용
  - 인건비 산출 : 월지급액+4대보험료(사업자부담분)+퇴직적립금
    - ※ 시·군은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호봉 승급 및 별도의 수당(처우개선비, 직책수당, 프로그램 연구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관리운영비 :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
- 사업비 : 프로그램비, 강사료, 행사비, 교재교구비 등

## ○ 지급절차

-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신청, 승인받은 후 집행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 변경시 별도 승인 후 집행(변경승인 1월 전까지)
- 예산의 수입·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용

## 다. 시설 운영 기준

### ○ 위탁관리

- 운영위탁기관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경력,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으로 함
- 지역 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된 경우 동 센터 위탁을 우선하며, 미설치 시·군은 경기도(또는 경기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인근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음
- 업무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함
- 업무위탁시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기타 수탁내용 및 수탁기관 선정결과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
- 업무위탁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음

## ○ 안전관리

- 카페이용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동반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있으며, 회원가입 및 카페시설 이용시 이를 고지하여야 함
-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기관의 장과 운영인력은 영유아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함
  - 운영기관의 장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자체적으로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아이러브맘 카페 시설안전점검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및 매월 실시하여 기록, 관리함으로써 위험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함
  -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인력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심폐소생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운영인력 대상의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을 월 1회 모의실시 하여야 하며 영유아 안전을 위한 부모 대상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함
  - 운영기관은 아이러브맘 카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치료 및 배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화재발생 대비 카페 모든 시설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약품 및 간이의료기구 등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카페관리자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에 대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숙지해야 함
- 카페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을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고 사고발생 24시간 내에 해당 시군에 보고해야 하며, 시군은 사고보고
- 기타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에 규정된 어린이집 적용기준을 준용함

# 4

## 교사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4-1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 연 혁

- 시행시기 : 2000년

#### □ 2016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영아전담 어린이집 포함) 교직원(원장·보육교사·조리원)
  - 도비지원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원장·보육교사·조리원)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누리과정 담당교사
- 사업량 : 8,689명(남부 6,355, 북부 2,334)
- 지원액

| 구 분                 | 평가인증 어린이집 | 미인증 어린이집  |
|---------------------|-----------|-----------|
| 원장, 1급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월 150천원/인 | 월 120천원/인 |
| 2·3급교사, 조리원         | 월 100천원/인 | 월 70천원/인  |
| 누리과정 담당교사           | 월 110천원/인 | 월 60천원/인  |

※ 누리과정 담당교사가 누리과정 연수를 미이수 하였을 경우, 누리과정 연수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 3회 내 에서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2016년 총사업비 : 12,506,657천원(도비 23%, 시군비 77%)

| 구분 | 사업량<br>(명)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8,689      | 12,506,657     | 0  | 2,869,227 | 9,637,430 |    |
| 남부 | 6,355      | 9,319,320      |    | 1,965,660 | 7,353,660 |    |
| 북부 | 2,334      | 3,187,337      |    | 903,567   | 2,283,770 |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35,789,584<br>(22,289,233) | 11,611,122<br>(10,857,723) | 11,671,805<br>(11,431,510) | 12,506,657 |    |
| 남부<br>(집행액) | 26,261,519<br>(16,673,453) | 8,252,252<br>(8,149,213)   | 8,689,947<br>(8,524,240)   | 9,319,320  |    |
| 북부<br>(집행액) | 9,528,065<br>(5,615,780)   | 3,358,870<br>(2,708,510)   | 2,981,858<br>(2,907,270)   | 3,187,337  |    |

□ 2015년도 추진실적

○ 8,042명, 11,431,510천원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월까지 신청가능(3월분은 5월까지 신청가능)
    -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 ※ 월 15일 :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한 날(다만,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도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세부 지원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정부지원보육교사교육원부설 어린이집 원장, 조리원은 전원, 보육교사는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한하여 지급
  - 복지관, 학교·종교 등 부설설치비 지원 어린이집 원장(동일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종교시설, 보육교사교육원과 어린이집이 예산 및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별도로 임명한 경우) 및 실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에게 지원
  - 시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시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시간연장·방과후·24시간 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단, 장애아 방과 후 반 편성 어린이집은 장애아별도 반 편성 및 별도 교사 채용된 경우 지급

- 일용인부 및 시간제 근무 교직원 은 제외

○ 지원기준일(일할계산 지급 금지)

- 신규자격취득자 및 승급 등으로 인한 변동 자는 익월부터 변동액 지급

- 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신규 개원할 경우 익월부터 지급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적용기준**

◆ 지급 대상자는 인증이 유효한(인증유지) 어린이집의 교직원

◆ 매월 심의결과 발표 시 신규인증 어린이집은 발표된 날의 익월부터 인상

◆ 인증취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종료 어린이집은 인증종료일의 익월부터 차감

◆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은 만료일의 익월부터 차감

○ 지원방법 : 어린이집 교직원 개인별 계좌입금

**나.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4대 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어린이집

② 법정 보수교육 이수자(법정기한<sup>2)</sup> 내에 미 이수자는 미 지원)

③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구성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요건 ①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해당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지원

※ 단, 보조금 신청일 기준 전월 보험료가 체납상태이더라도, 당월 보조금 지원일 이전에 납부 완료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 가능(예시- 12월 보조금 신청일 현재 11월 보험료가 체납되었으나, 12월 보조금 지원일(25일 전후) 현재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해당 보육교사 지원 처우개선비 환수

○ 지원요건 ②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해당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교육이수 후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된 처우개선비 환수

2)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기준 준용

○ 지원요건 ③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해당반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교사 대 아동비율' 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 해당 월 처우개선비는 익월 소급지원 가능
- ※ 교사 결원발생 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 시 다음달 15일까지 총원해야 함
- '총 정원' 을 위반한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총 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처우개선비 중 위반한 해당 반(총 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중인 반)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 환수
- '교사 대 아동비율' 을 위반한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처우개선비 중 위반한 해당 반('교사 대 아동비율' 이 위반된 반) 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 환수

○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전체반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아동이나 교사 등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의 처우개선비 환수

**라. 제외대상**

○ 보육교사교육원장 겸임 원장

○ 사회복지관 직원(관장 등), 종교시설 대표, 학교장이 어린이집원장을 겸임하는 경우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비상근교사

-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 4-2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 연 혁

- 시행시기 : 2003년

### □ 2016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어린이집(정부미지원 법인·단체 등 포함),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누리과정 담당교사

- 사업량 : 47,423명(남부 35,503, 북부 11,920)

- 지원액

| 구 분                 | 평가인증 어린이집 | 미인증 어린이집 |
|---------------------|-----------|----------|
| 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월200천원/인  | 월170천원/인 |
| 누리과정 담당교사           | 월110천원/인  | 월 60천원/인 |

※ 누리과정 담당교사가 누리과정 연수를 미이수 하였을 경우, 누리과정 연수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 3회 내 에서 누리과정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 2016년 총사업비 : 99,048,208천원(도비 22%, 시군비 78%)

| 구분 | 사업량<br>(명)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47,423     | 99,048,208     | 0  | 21,927,686 | 77,120,522 |    |
| 남부 | 35,503     | 73,879,570     |    | 14,854,045 | 59,025,525 |    |
| 북부 | 11,920     | 25,168,638     |    | 7,073,641  | 18,094,997 |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296,456,209<br>(193,012,472) | 99,479,269<br>(96,753,370) | 97,928,732<br>(96,259,102) | 99,048,208 |    |
| 남부<br>(집행액) | 215,709,533<br>(140,214,862) | 71,104,799<br>(70,167,310) | 70,725,164<br>(70,047,552) | 73,879,570 |    |
| 북부<br>(집행액) | 80,746,676<br>(52,797,610)   | 28,374,470<br>(26,586,060) | 27,203,568<br>(26,211,550) | 25,168,638 |    |

□ 2015년도 추진실적

○ 49,522명, 96,259,102천원

□ 사업 추진 안내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에서 매월 신청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월까지 신청가능(3월분은 5월까지 신청가능)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 월 15일 :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한 날(다만,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도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세부 지원기준

- 정부지원어린이집 인건비 지급기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대해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되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급기준 적용

- 시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시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시간연장·방과후·24시간 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단, 장애아 방과 후 반 편성 어린이집은 장애아별도 반 편성 및 별도 교사가 채용된 경우 지급



○ 지원기준일(일할계산 지급 금지)

- 신규 개원할 경우 익월부터 지급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 적용기준**

- ◆ 지급 대상자는 인증이 유효한(인증유지) 어린이집의 교직원
- ◆ 매월 심의결과 발표 시 신규인증 어린이집은 발표된 날의 익월부터 인상
- ◆ 인증취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취소 처분일(보건복지부 통보일)의 익월부터 차감
- ◆ 인증종료 어린이집은 인증종료일의 익월부터 차감
- ◆ 인증유효기간 만료 어린이집은 만료일의 익월부터 차감

○ 지원방법 : 어린이집 교직원 개인별 계좌입금

**나.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4대 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어린이집
- ② 법정 보수교육 이수자(법정기한<sup>3)</sup> 내에 미 이수자는 미 지원)
- ③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구성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지원요건 ①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해당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지원
- ※ 단, 보조금 신청일 기준 전월 보험료가 체납상태이더라도, 당월 보조금 지원일 이전에 납부 완료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 가능(예시- 12월 보조금 신청일 현재 11월 보험료가 체납되었으나, 12월 보조금 지원일(25일 전후) 현재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해당 보육교사에게 지원된 처우개선비 전체 환수

○ 지원요건 ②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 월)부터 해당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교육이수 후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된 처우개선비 환수

○ 지원요건 ③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해당반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3)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기준 준용

- 단, ‘교사 대 아동비율’ 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 해당 월 처우개선비는 익월에 소급지원 가능
  - ※ 교사 결원발생 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 시 다음달 15일까지 총원해야 함
- ‘총 정원’ 을 위반한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처우개선비 중 위반한 해당 반(총 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중인 반)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 환수
- ‘교사 대 아동비율’ 을 위반한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처우개선비 중 위반한 해당 반( ‘교사 대 아동비율’ 이 위반된 반) 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 환수
-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전체반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아동이나 교사 등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 처우개선비 환수

## 라. 제외대상

- 정부지원어린이집(민간영아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포함), 학교, 종교시설 등으로부터 부설 설치비를 지원받아 직영하는 어린이집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 마.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던 봉급을 처우개선비 만큼 삭감하는 사례, 신규채용 하면서 처우개선비를 고려해 봉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와 각종 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4대 보험에 가입해 준다는 미명하에 처우개선비를 교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 등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 4-3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 연 혁

- 시행시기 : 2015년

#### □ 2016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출산휴가자 포함)하고 있는 교사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월급형 대체교사
- 사업량 : 55,002명(남부 40,167, 북부 14,835)
- 지원액 : 월30천원/인
- 2016년 총사업비 : 19,800,000천원(도비 50%, 시군비 50%)

| 구분 | 사업량<br>(명)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55,002     | 19,800,000   | 0  | 9,900,000 | 9,900,000 |    |
| 남부 | 40,167     | 14,460,000   |    | 7,230,000 | 7,230,000 |    |
| 북부 | 14,835     | 5,340,000    |    | 2,670,000 | 2,670,000 |    |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39,339,115<br>(18,478,050) | 0<br>(0) | 19,539,115<br>(18,478,050) | 19,800,000 |    |
| 남부<br>(집행액) | 28,726,000<br>(13,517,130) |          | 14,266,000<br>(13,517,130) | 14,460,000 |    |
| 북부<br>(집행액) | 10,613,115<br>(4,960,920)  |          | 5,273,115<br>(4,960,920)   | 5,340,000  |    |

#### □ 2015년도 추진실적

- 54,840명, 18,478,050천원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대상 및 방법

- 신청 및 지급 :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매월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월까지 신청가능(3월분은 5월까지 신청가능)
    -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사업관리자로서 대체교사 및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 ※ 월 15일 : 실제 근무한 날(다만,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도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시간연장·방과후·24시간교사는 시간연장·방과후·24시간 지정어린이집의 별도 채용된 인건비 지원교사로 보건복지부(시간연장·방과후·24시간 사업) 및 경기도(처우개선비) 지원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급
    - ※ 단, 장애아 방과 후 반 편성 어린이집은 장애아별도 반 편성 및 별도 교사가 채용된 경우 지급
- 지원기준일(일할계산 지급 금지)
  - 신규 개원할 경우 익월부터 지급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지원방법 : 어린이집 교직원 개인별 계좌입금

## 나. 지원요건(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4대 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어린이집
- ② 법정 보수교육 이수자(법정기한<sup>4)</sup> 내에 미 이수자는 미 지원)
- ③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구성원칙 포함)' 준수 어린이집
-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 다.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 ○ 지원요건 ①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해당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한 달부터 지원
  - ※ 단, 보조금 신청일 기준 전월 보험료가 체납상태이더라도, 당월 보조금 지원일 이전에 납부 완료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해당 월 지원 가능(예시- 12월 보조금 신청일 현재 11월 보험료가 체납되었으나, 12월 보조금 지원일(25일 전후) 현재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해당 보육교사에게 지원된 처우개선비 전체 환수

### ○ 지원요건 ②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 월)부터 해당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교육이수 후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지원된 처우개선비 환수

### ○ 지원요건 ③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해당반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교사 대 아동비율' 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이 중단된 해당 월 처우개선비는 익월에 소급지원 가능
  - ※ 교사 결원발생 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 시 다음달 15일까지 총원해야 함

4)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기준 준용

- ‘총 정원’ 을 위반한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보육)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처우개선비 중 위반한 해당 반(총 정원을 초과하여 미등록한 아동을 실제로 보육중인 반) 보육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 환수
- ‘교사 대 아동비율’ 을 위반한 어린이집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경우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처우개선비 중 위반한 해당 반( ‘교사 대 아동비율’ 이 위반된 반) 교사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 환수
- 지원요건 ④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발생월)부터 전체반의 처우개선비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허위보고에 의한 보조금 수령 어린이집 환수조치
  - 아동이나 교사 등 허위로 보고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급된 해당 반 교사 처우개선비 환수

## 라.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제교사, 대체교사, 교사겸직원장, 본인이 대표자인 어린이집의 교사 겸임자
  -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는 처우개선비 지급

## 마.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 지급하던 봉급을 처우개선비만큼 삭감하는 사례, 신규 채용하면서 처우개선비를 고려해 봉급을 낮게 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 경기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와 각종 수당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4대 보험에 가입해 준다는 미명하에 처우개선비를 교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 등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할 것

## 4-4 보육교사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교사 및 조리원 휴가·출산·결혼·질병·교육 등의 사유로 근무공백 발생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서비스 지속 제공

###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 연 혁

- 시행시기 : 2003년

### □ 2016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조리원
- 사업량 : 35명(남부), 8,202일(남부 4,267, 북부 3,935)
- 2016년 총사업비 : 1,184,361천원(도비 24%, 시군비 76%)

| 구분 | 사업량<br>(명,일)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35명 8,202일   | 1,184,361    | 0  | 280,558 | 903,803 |    |
| 남부 | 35명 4,267일   | 971,893      |    | 210,433 | 761,460 |    |
| 북부 | 3,935일       | 212,468      |    | 70,125  | 142,343 |    |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5,094,891<br>(3,429,927) | 1,777,158<br>(1,576,883) | 2,133,372<br>(1,853,044) | 1,184,361 |    |
| 남부<br>(집행액) | 4,025,119<br>(2,641,663) | 1,331,194<br>(1,175,412) | 1,722,032<br>(1,466,251) | 971,893   |    |
| 북부<br>(집행액) | 1,069,772<br>(788,264)   | 445,964<br>(401,471)     | 411,340<br>(386,793)     | 212,468   |    |

### □ 2015년도 추진실적

- 50명, 18,670일, 1,853,044천원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일수

- 단기연가(교사, 조리원)<sup>5)</sup> : 5일이내 연가
- 직무교육 : 5일 이내 / 승급교육 : 10일 이내
- 1주 이상 병가(교사, 조리원), 연간 60일 이내
  - 병가기간 동안의 휴일은 병가 일수에 포함
  - 입원 시에는 1주일 미만이라도 입원기간 지원
- 본인결혼(교사, 조리원) : 5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교사, 조리원) : 5일 이내
  - 사망진단서, 장례식증명서 등 첨부
- 출산휴가(교사, 조리원) : 90일(3개월) 이내
  - ※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급여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간 제외
- 도 지원 「보육교사 직무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 워크숍」 및 「우수보육교사 힐링캠프」참가 : 2일 이내

### 나. 제외대상

- 보조교사, 시간연장교사(인건비 지원 교사로 6시간 이상 근무자는 지원), 대표자로서 교사 및 교사겸직원장
-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미 가입어린이집 및 4대 보험료 체납 어린이집

### 다. 월급여형 대체교사

- 월급여형 대체교사 채용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거주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채용
    - 자격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 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등 기본조건 조회
    - 근무 : 주 5일 근무(평일 09:00~18:00)
    - 사업비 : 월 1,714천원/인
      - ※ 기관부담사회보험금, 퇴직적립금 포함

5) 단기연가 증빙은 종사자관리대장 사본, 연가확인서(원장, 교사 자필서명)로 확인



- 퇴직 후 5개월이 지난 자 또는 직전 근무지 원장의 추천이 있는 자로 선발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대체교사 사업 운영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추진비 집행
  - 월급여형 대체교사 사업 예산의 3%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비로 집행 가능
- ※ 상해보험금, 대체교사 교육비는 필수항목으로 편성하며 그 외 필요항목은 시·군 승인 후 편성 가능
- 월급여형 교사가 대체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은 관리업무 지원 및 장애아전담 또는 영아전담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지원 근무
- 지원내용 : 연속 10일 이내 근무 대체교사 신청자 우선 지원
  - 대체교사는 연가 등을 사용한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사 우선 지원
  -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구 분          |      | 선발기준               | 비 고 |
|--------------|------|--------------------|-----|
| 어린이집<br>우선순위 | 1 순위 | 소규모어린이집(보육교사 5인이하) |     |
|              | 2 순위 | 장기근속자              |     |
|              | 3 순위 | 평가인증 어린이집          |     |

- ※ 결혼으로 인한 휴가자에 대하여는 최우선적으로 대체교사 지원
- ※ 이전 달에 지원 받은 어린이집은 다음 달에 차 순위로 지원
- 지원방법 : 어린이집 원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 별도 확보 e-mail 등을 통해 대체교사 신청
  -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자는 신청한 어린이집을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지원 어린이집 확정 후, 별도 확보 e-mail 등을 통해 어린이집에 안내 및 대체교사 지원
- ※ 기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대체교사 지원 사업 준용

## 라. 일당형 대체교사

- 자격조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임면보고 : 보건복지부 지침(보육교직원 임면보고) 준용
  - ※ 경력인정 : 2011.7.1.부터 시간제보육교사 경력인정 기준 변경

○ 지원기준

- 사유발생 완료 후 10일 이내에 시·군에 지급 신청
  - ※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풀을 활용하여 어린이집 원장이 채용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신청
- 대체교사 관리 :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관리 기준 준용

○ 지원방법 : 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인력풀 활용(교사)

- ※ 대체교사 인건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풀’ 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관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사전(사후)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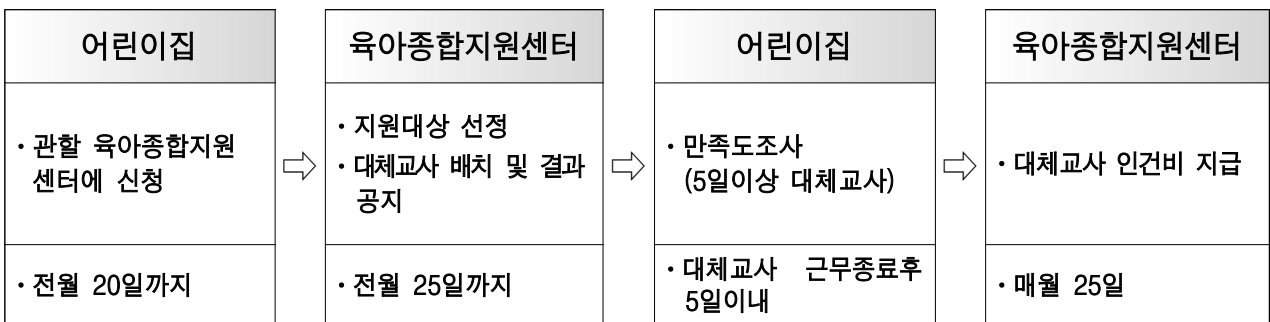
○ 지급액

- 인건비 : 일 54,000원/인(실근무일 만 지급, 교통비 포함)
  - ※ 대체교사는 근로자로서 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단,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일 8시간 근무를 못했을 경우 4시간 이상 근무 시 1일 인건비를 지원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4시간 미만의 경우나 추가 비용부담 필요시 어린이집에서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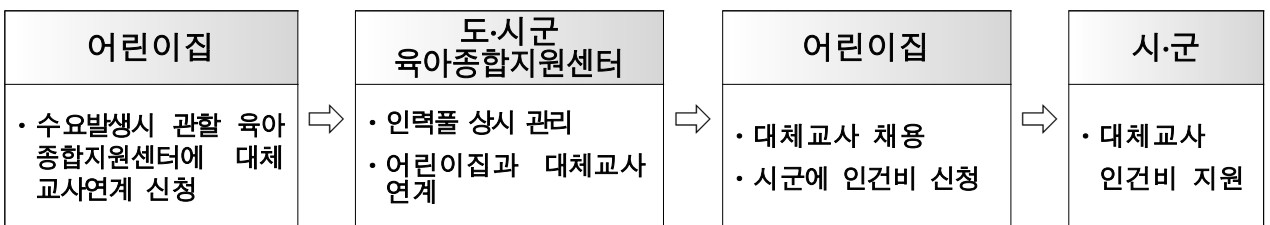
○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처분

< 대체교사 지원 시스템 >

○ 월급형



○ 일당형



## 4-5 장애아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도비

보육지원팀

- 일정수준에 도달한 보육교사에게 특수수당을 지원하여 취약보육 활성화 및 교사 전문성 향상

###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 연 혁

- 시행시기 : 2002년

### □ 2016년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구분       | 지원액    | 대 상  | 전문교사 요건  |
|----------|--------|--|--|
| 영아 전문교사  | 월50천원  | - 영아반(일시보육반(0,2세) 포함) 담당교사   |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영아 전문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
| 다문화 전문교사 | 월50천원  | - 다문화 아동반 담당교사   | -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운영 중인 “다문화 전문교육과정” 160시간 이수자                                     |
| 장애아 전문교사 | 월100천원 | - 장애아반 담당교사<br>-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근무중인 특수교사<br>(통합어린이집의 특수교사 제외)<br>-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치료사 | - 보육교사교육원 “장애아 전문교육과정” 240시간 기 이수자<br>- 특수교사치료사 : 유자격자로 정규 인력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 한함 |

※ 원장(대표자) 겸임교사는 지원요건 충족시 지급

※ 특수근무수당을 받는 전문교사는 직무교육 이수시 “특별직무교육” 과정 이수

- 사업량 : 24,125명(남부 17,316, 북부 6,809)

- 2016년 총사업비 : 14,660,530천원(도비 24%, 시군비 76%)

| 구분 | 사업량<br>(명)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24,125     | 14,660,530     | 0  | 3,265,753 | 11,394,777 |    |
| 남부 | 17,316     | 10,540,200     |    | 2,149,260 | 8,390,940  |    |
| 북부 | 6,809      | 4,120,330      |    | 1,116,493 | 3,003,837  |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41,484,205<br>(26,447,627) | 12,816,222<br>(12,643,257) | 14,007,453<br>(13,804,370) | 14,660,530 |    |
| 남부<br>(집행액) | 29,178,665<br>(18,418,277) | 8,790,712<br>(8,706,107)   | 9,847,753<br>(9,712,170)   | 10,540,200 |    |
| 북부<br>(집행액) | 12,305,540<br>(8,029,350)  | 4,025,510<br>(3,937,150)   | 4,159,700<br>(4,092,200)   | 4,120,330  |    |

□ 2015년도 추진실적

- 24,744명, 13,804,370천원

□ 사업 추진 안내

○ 지급기준

- 어린이집에서 매월신청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지급
- 12월분은 시군별 연내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지급일자 조정 가능
  - ※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월까지 신청가능(3월분은 5월까지 신청가능)
  -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반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인 사람(출산휴가자는 지급, 치료사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
  - ※ 월 15일 :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한 날(다만,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도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특수근무수당 간 중복 시 1개 수당만 지급, 일할계산 지급 금지
- 신규 개원할 경우 익월부터 지원
- 담당반의 아동 현원이 1명 이상일 경우 지급하고, 해당 반에 아동이 감소하여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아동이 감소한 익월까지만 지원
- 신규 대상자일 경우 교육이수 후 실제 근무한 날이 월 15일 이상일 경우 지원

○ 제외대상

- 보조교사, 대체교사, 시간연장교사
  - ※ 단,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채용 시 지원요건을 갖춘 자,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별도채용 시간연장 교사(6시간이상 근무)는 지급

- 보육시설 및 근로여건이 불리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지역 보육여건 개선 및 교사 확충에 기여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09년

※ 농림축산식품부(지자체 농정부서)에서 '16년부터 보건복지부(지자체 보육부서)로 이관

□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량 : 10,589명(남부 6,077, 북부 4,512)
- 2016년 총사업비 : 13,977,480천원(국비 56%, 도비 26%, 시군비 18%)

| 구분 | 사업량<br>(명)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10,589     | 13,977,480     | 7,830,662 | 3,685,243 | 2,461,575 |    |
| 남부 | 6,077      | 8,021,640      | 4,433,378 | 2,070,473 | 1,517,789 |    |
| 북부 | 4,512      | 5,955,840      | 3,397,284 | 1,614,770 | 943,786   |    |

□ **사업 추진 안내**

가. 목적

- 농촌 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6년부터 이관

나. 지원내용

- 농촌 등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개인별 월 11만원의 특별근무수당 지원

## 다. 지원대상

- 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실 근무일수)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 ※ 다만,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도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단,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원장이 매월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을 통하여 신청한 보육교사
    - ※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치료사의 경우는 담임교사 여부와 관계없이 월15일(실 근무일수) 이상 근무시 지급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에서 월15일 이상 실 근무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육교사 보조

## 라. 지급 방식

- 원장이 매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매월 7일까지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지급
  - 원장은 보육교사가 15일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한 후 신청
  - 시·군·구에서는 익월 7일까지 집행하되, 12월분은 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 해당 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 소급 신청(신청월 포함 3개월)
  -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어촌 등의 범위(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2537호, 2015. 7. 3)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농어촌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어촌지역(농림축산식품부 고시)>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 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의한 준농어촌  
\*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고시된 농어촌지역 포함

- 영아반 담당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보조)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량 : 38,861명(남부 28,094, 북부 10,767)
- 2016년 총사업비 : 79,269,120천원(국비 57%, 도비 27%, 시군비 16%)

| 구분 | 사업량<br>(명)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38,861     | 79,269,120   | 45,425,122 | 21,375,790 | 12,468,208 |    |
| 남부 | 28,094     | 57,307,272   | 32,740,402 | 15,374,189 | 9,192,681  |    |
| 북부 | 10,767     | 21,961,848   | 12,684,720 | 6,001,601  | 3,275,527  |    |

※ 기준 : 본예산 편성(확정내시 내역은 추경편성 예정)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239,615,522<br>(162,685,692) | 82,766,404<br>(82,293,024) | 77,579,998<br>(80,392,668) | 79,269,120 |    |
| 남부<br>(집행액) | 173,775,344<br>(118,932,042) | 60,006,033<br>(59,601,944) | 56,462,039<br>(59,330,098) | 57,307,272 |    |
| 북부<br>(집행액) | 65,840,178<br>(43,753,650)   | 22,760,371<br>(22,691,080) | 21,117,959<br>(21,062,570) | 21,961,848 |    |

※ 2014년도에는 교사검직원장 지원 포함 집행

**2015년도 추진실적**

- 39,585명, 80,392,668천원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내용

-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및 특수 교사에게 월 20만원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16.1월~)

### 나.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 월 15일 :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 시간 연장형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교사(지자체 지원 포함)로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한 사람
- 지원 제외 대상자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 ※ 연수미이수의 사유로 누리과정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누리과정 연수 이수를 조건으로 최대 3회 내에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신청 가능. 신청자(원장) 및 시·군·구 담당자는 3회를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 철저

### 다.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 보육교사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이직한 경우 동일 월에 종전 어린이집 근무일수와 현 어린이집의 근무일수를 합하여 지원조건에 맞을 경우 현 어린이집에서 신청
  - 정부지원 대체교사 사업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는 해당 센터장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급
  - 해당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3개월) 소급 가능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의 적정 청구 등을 지도·감독
  -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정부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초과근무수당도 아님(인건비 지급 상한제 적용 제외)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로 보육서비스 질 향상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보조)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량 : 7,580명(남부 5,354, 북부 2,226)
- 2016년 총사업비 : 6,822,637천원(국비 57%, 도비 27%, 시군비 16%)

| 구분 | 사업량<br>(명)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7,580      | 6,822,637    | 3,921,890 | 1,848,486 | 1,052,261 |    |
| 남부 | 5,354      | 4,818,614    | 2,753,388 | 1,297,534 | 767,692   |    |
| 북부 | 2,226      | 2,004,023    | 1,168,502 | 550,952   | 284,569   |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13,569,495<br>(6,723,038) | 0<br>(0) | 6,746,858<br>(6,723,038) | 6,822,637 |    |
| 남부<br>(집행액) | 9,583,524<br>(4,779,639)  |          | 4,764,910<br>(4,779,639) | 4,818,614 |    |
| 북부<br>(집행액) | 3,985,971<br>(1,943,399)  |          | 1,981,948<br>(1,943,399) | 2,004,023 |    |

※ 2014년도에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예산으로 집행

**2015년도 추진실적**

- 7,463명, 6,723,038천원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내용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월 7만 5천 원 지원(16.1월~)

### 나. 지원대상

-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 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 월 15일 :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주 5일 이내 휴가, 5일 이내의 주중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은 근무한 일수에 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다. 지급방식

- 원장이 매월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원장 통장으로 입금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 기간 및 시·군·구 승인기간 조정 가능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등에는 환수 조치
  -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 청구·지급여부를 지도·감독

- 반 담임을 맡고 있는 보육교사(특수교사)들의 보수교육 참석, 연가 등으로 보육공백 발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한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 서비스 지속 제공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보조)

**연 혁**

- 시행시기 : 2009년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량 : 265명(남부 194, 북부 71)
- 2016년 총사업비 : 5,561,374천원(국비 57%, 도비 27%, 시군비 16%)

| 구분 | 사업량<br>(명)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265        | 5,561,374    | 3,170,460 | 1,493,037 | 897,877 |    |
| 남부 | 194        | 4,109,897    | 2,331,532 | 1,096,211 | 682,154 |    |
| 북부 | 71         | 1,451,477    | 838,928   | 396,826   | 215,723 |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9,926,500<br>(3,978,539) | 1,726,409<br>(1,716,677) | 2,638,717<br>(2,261,862) | 5,561,374 |    |
| 남부<br>(집행액) | 7,422,795<br>(3,025,218) | 1,311,564<br>(1,305,508) | 2,001,334<br>(1,719,710) | 4,109,897 |    |
| 북부<br>(집행액) | 2,503,705<br>(953,321)   | 414,845<br>(411,169)     | 637,383<br>(542,152)     | 1,451,477 |    |

**2015년도 추진실적**

- 166명, 2,261,862천원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 내용

- 담임교사가 연가(주중 5일/인)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석시 육아종합 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 교사를 파견
  - 시설별로 1명씩 우선 지원하는 등 특정 시설이나 보육교사에 대체교사 지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시·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분할사용 원칙적 불가, 토요일은 미지원, 주중 공휴일은 지원한 것으로 간주(이월불가)
  - ※ 대체교사는 연가 사용이나 보수교육에 참석한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행
  -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대체교사를 파견받은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 나. 지원대상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현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담임교사 우선 지원
    - 시·군·구에 임면 보고된 자에 한해 임면보고일 기준으로 근무기간 계산
    - ※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 및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 소규모 어린이집의 장기근속자 우선 지원
    - ※ 보육교사가 5인 이하인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

### 다. 지원 사유 및 지원일수

- 보수교육(주중 1~5일, 최대 2주 이내) 참석, 결혼 등 연가(주중 1~5일), 긴급사유(아동학대로 인한 긴급지원 등 보육 수요 발생)발생시 지원
- 연가,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교사 대체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일수 다양화
  - 지원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 이내(최대 2주)
    - 보수교육 참석시 : 주중 1~5일 이내(최대 2주)
    - 연가 사용시 : 주중 1~5일 이내

####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 구분 | 우선 순위       | 지원 내용   | 지원 기간                | 비 고              |
|----|-------------|---|----------------------|------------------|
| 상시 | 1<br>(교육)   | 보수(직무·승급) 교육<br>(직무교육 우선 지원)                    | 주중 1일~5일<br>(최대 2주)  | 사후 증빙<br>(영수증)자료 |
|    | 2<br>(연가)   | 연가<br>(결혼 우선 지원)                                | 주중 1일~5일             | 사전<br>결혼증빙자료     |
| 긴급 | 최우선<br>(긴급)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br>긴급보육 지원 등<br>(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br>제한없음<br>최우선 사유 | 수시 접수            |

## 라. 지원방식

-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체교사 신청하되, 보수교육 사유, 긴급사유에 따른 요청시 상시, 유선·Fax 등을 통해 신청 가능

|      |          |      |      |      |       |        |
|------|----------|------|------|------|-------|--------|
| 파견시기 | 1~2월     | 3~4월 | 5~6월 | 7~8월 | 9~10월 | 11~12월 |
| 신청시기 | 전년도 12월말 | 2월   | 4월   | 6월   | 8월    | 10월    |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의해 지원 어린이집 확정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에 통보 및 대체교사 파견

## 마. 대체교사 채용 등 사업관리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연가, 시도별 보수교육 운영상황 등을 고려, 대체교사 지원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교사를 고정 고용보다는 탄력적 채용 운영
  - (자격) 보육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 ※ 장애 보육 등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등 자격 소지자를 우선 채용
  - (근무) 주 5일 근무
    - ※ 채용된 대체교사는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대체교사 파견 수요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가능
  - (지원단가) 월 1,714천원(교통비 10만원, 퇴직적립금 8만원,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 '16. 1월부터 적용)
    - ※ 대체교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월급제가 아닌 교사채용 가능
    - ※ 시·도별 퇴직적립금 적립 규모에 따라 추가로 퇴직적립금 적립이 필요한 시·도에서는 예산현황 등을 감안하여 퇴직적립금 추가 지원(적립) 가능
    - ※ 2013년 3월 이후 대체교사를 도서·벽지·농어촌 지역(교사 대 아동 비율 특례인정이 가능한 지역) 어린이집으로 파견함에 따라 월10만원을 넘는 교통비 발생분에 대해서는 초과지급(월10만원 한도 내) 가능
- 대체교사 사업 운영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비 집행
  - 사업실적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대체교사 사업예산의 3% 내외에서 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채용된 대체교사의 교육, 경력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실시
  - 대체교사 관리자를 둘 수 있으며, 관리자에 대해 수당 지급 가능

## 바. 유의사항

- 대체교사는 보육교사의 법정연가 보장과 교사의 부재시 보육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동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됨

- 영아반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보육·놀이 및 급식 등을 지원하는 보조교사 배치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보조)

**연 혁**

- 시행시기 : 2015년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량 : 3,418명(남부 2,570, 북부 848)
- 2016년 총사업비 : 31,908,505천원(국비 57%, 도비 27%, 시군비 16%)

| 구분 | 사업량<br>(명)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3,418      | 31,908,505     | 18,305,337 | 8,616,158 | 4,987,010 |    |
| 남부 | 2,570      | 24,178,560     | 13,814,899 | 6,496,032 | 3,867,629 |    |
| 북부 | 848        | 7,729,945      | 4,490,438  | 2,120,126 | 1,119,381 |    |

※ 기준 : 본예산 편성(확정내시 내역은 추경편성 예정)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41,098,805<br>(7,494,081) | 0<br>(0) | 9,190,300<br>(7,494,081) | 31,908,505 |    |
| 남부<br>(집행액) | 31,150,420<br>(5,611,796) |          | 6,971,860<br>(5,611,796) | 24,178,560 |    |
| 북부<br>(집행액) | 9,948,385<br>(1,882,285)  |          | 2,218,440<br>(1,882,285) | 7,729,945  |    |

**2015년도 추진실적**

- 3,224명, 7,494,081천원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사업 대상

#### ○ 민간·가정 어린이집

- 영아반\* 3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율 80% 이상인 어린이집

\* (영아반) 0세·1세·2세아반, 혼합반(0·1세), 혼합반(1·2세)

※ 신청 어린이집 수가 적은 경우 정원 충족율 80% 미만도 선정 가능  
(이 경우에도 영아반 3개 이상, 평가인증 유지 필수)

#### ○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 장애아 현원 9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 지원 제외 대상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다만,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행한 어린이집은 제외)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 '16년에 선정된 어린이집은 제외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16년 사업기간 중 지속 지원 가능

### 나. 보조교사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 보조교사와 원장간 근로계약 체결하되, 1일 4시간(주 20시간) 근무, 월 784천원(4시간 기준)\* 지급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 등은 어린이집 부담

- 어린이집과 보조교사의 협의에 의해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나, 연장 시간에 대한 인건비는 어린이집에서 부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어린이집에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업무 수행

- 보조교사는 담임교사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법령 및 사업취지를 고려, 특정반 담임교사로서의 보육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불가

- 영아반 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

### 다. (사업기간) '16년 1월 ~ 12월

### 라. 지원 절차

○ 어린이집에서는 시·군·구청장의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 시·군·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은 지원 조건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어린이집 선정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어린이집은 지원조건이 중복되어도 개소당 보조교사 1명 지원
- \*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반수(아동수), 평가인증유지 등에 미달하더라도 '16년도 사업기간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 선정된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공개모집하여 선발하고, 시·군·구청에 임면보고 실시
  - 다만,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장기간(채용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상) 교사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는 후순위 어린이집 또는 지원 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 어린이집 재선정 가능
- 시·군·구청에서는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
  - ※ 채용·임면에 관한 절차, 구비서류(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등은 「보육사업안내」 준수
-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의 인건비를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고, 시·군·구청에서는 내역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급) 시·군·구청에서는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되, 근무일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함
  - \* 근무일수가 한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
  - (예) 1. 11.에 채용된 보조교사의 1월 급여 = 784,000원 × 21일/31일 = 531,097원
  - 12월분은 지자체별 집행일정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신청기간 및 시·군·구별 지급기간을 조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마. 유의사항

- 지자체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등 사업을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지원조건 내 우선순위 마련하여 실시 가능
- 지자체에서는 보조교사가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점검
  - 보조교사를 지원목적과 달리 활용하는 경우 즉시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예시)

- 보조교사가 특정 반 담임교사나 원장겸 보육교사 반의 보육업무를 전담
- 보육·놀이·급식 등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의 행정적인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

- 인건비 상한 연령(60세), 결격사유 확인 등 임면 보고, 근로계약체결, 복무관리, 경력인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육사업안내」 규정 준수

## 4-11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국·도비

보육지원팀

- 영아전담 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서비스 제공 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량 : 3,892명(남부 2,739 북부 1,153)
- 지원내용

| 지원 대상(명)    | 지원 내용  |
|-------------|--|
| 영아전담(481)   | • 호봉에 따른 원장·영아반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30%, 취사부 1명 100%   |
| 장애아전문(247)  | • 호봉에 따른 원장·보육교사 인건비의 80% , 치료사 100%+월20만원(수당)<br>방과후교사 100%, 특수교사 80%+월20만원(수당), 취사부 1명 100%                        |
| 방과후(2)      | • 호봉에 따른 인건비의 50% 지원   |
| 시간연장(2,748) | • 정부지원어린이집 : 호봉에 따른 인건비의 80% 지원, 최대 5명<br>• 민간어린이집 : 시간연장 보육교사 1인당 1,236천원, 최대 5명<br>• 시간연장 근무 수당지원 : 반별 41만원, 최대 5명 |
| 장애아통합(414)  | • 정부지원어린이집 : 호봉에 따른 인건비의 80%<br>• 민간어린이집 : 장애전담교사 1인당 138만원  |

- 2016년 총사업비 : 51,670,928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구분 | 사업량<br>(명)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3,892      | 51,670,928   | 28,972,870 | 13,787,086 | 8,910,972 |    |
| 남부 | 2,739      | 36,710,908   | 20,552,062 | 9,764,839  | 6,394,007 |    |
| 북부 | 1,153      | 14,960,020   | 8,420,808  | 4,022,247  | 2,516,965 |    |

###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161,098,360<br>109,071,786 | 52,262,018<br>(51,906,372) | 57,165,414<br>(57,165,414) | 51,670,928 |    |
| 남부<br>(집행액) | 115,370,969<br>78,423,073  | 37,531,631<br>(37,294,643) | 41,128,430<br>(41,128,430) | 36,710,908 |    |
| 북부<br>(집행액) | 45,727,391<br>(30,645,713) | 14,730,387<br>(14,608,729) | 16,036,984<br>(16,036,984) | 14,960,020 |    |

### □ 2015년도 추진실적

- 4,130명 / 46,130백만원
- 남부 2,957명 32,960백만원 / 북부 1,173명 13,170백만원

-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로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개발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2016년 사업개요**

- 사업량 : 8,997명(남부 7,376 북부 1,621)
- 지원대상 : 현직 보육교직원
- 지원기준 : 직무(6만원), 승급(12만원)  
※ 원장사전(15만원 자부담), 교재비 미지원
- 교육과정 : 직무(40시간), 승급(80시간), 원장사전직무(80시간)
- 2016년 총사업비 : 588,103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구분 | 사업량<br>(명)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합계 | 8,997      | 588,103      | 332,191 | 157,397 | 98,515 |    |
| 남부 | 7,376      | 442,378      | 247,570 | 117,436 | 77,372 |    |
| 북부 | 1,621      | 145,725      | 84,621  | 39,961  | 21,143 |    |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1,806,079<br>1,180,646 | 620,671<br>(597,789) | 597,305<br>(582,857) | 588,103 |    |
| 남부<br>(집행액) | 1,336,924<br>859,352   | 442,966<br>(421,775) | 451,580<br>(437,577) | 442,378 |    |
| 북부<br>(집행액) | 469,155<br>(321,294)   | 177,705<br>(176,014) | 145,725<br>(145,280) | 145,725 |    |

□ **2015년도 추진실적**

- 9,838명(자부담 포함 총 이수자 14,572명) / 490,508천원  
- 남부 7,981명(10,524명) 354,654천원 / 북부 1,857명(4,047명) 124,223천원

## □ 2016년 경기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계획

- 계획인원 : 18,950명(직무교육 9,430 승급교육 9,520)
- 위탁교육기관 : 25개(보육교사교육원 10, 대학 14, 육아종합지원센터 1)
  - ※ 15.12월 모집공고, 16.2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선정
- 교육방법 : 집합교육(특별직무교육은 온라인 교육)
- 교육과정 : 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직무교육
- 교육비용 : 직무 6만원, 승급 12만원, 원장사전 15만원(교재비 별도)
- 대상자 선정기준
  - 직무교육 : 매 3년마다 필수 이수
  - 승급교육 : (2급)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 이 만 1년이 경과한 자  
(1급)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 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 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 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 원장사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가목부터 라목(일 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원장)까지 어 느 하나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
  - ※ 교육시작일 전까지 보육업무 경력이 충족되어야 함
- 교육비 환급 주의사항
  - 직무교육 교육비 우선 환급
  - 교육 시작일 및 교육비 환급신청 당시 모두 현직자여야 함
  - 대상자 전출 시·군은 전입지에 공문 통보하여 환급대상에서 누락이 없도록 조치

- 영아·다문화 보육의 전문교육 강화로 보육의 질 제고

□ **관련근거**

- 경기도보육조례 제16조(교육훈련 및 시설운영 평가)

□ **2016년 사업개요**

- 교육대상 :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 ※ 수료자 인센티브 : 영아·다문화반 담당 시 수당 월 5만원 지급
- 교육기관 : 보육교사교육원 10개소(영아 4,500명, 다문화 350명)
- 교육시간 : 160시간(실기 60시간 포함)
- 수 강 료 : 44만원(기타비용 별도)

□ **2015년도 추진실적**

- 영아전문과정 4,800명 수료

□ **사업 추진 안내**

- 보육교사교육원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
  - 해당 시·군에서 재직(경력)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교육생 선정

<<영아전문교육 선발 우선순위>>

- ① 가정보육교사    ②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교사
- ③ 영아전문 어린이집 교사    ④ 낮은 연령반 보육교사(0세반 교사 우선)

<<다문화전문교육 선발 우선순위>>

- ① 만2~5세 다문화영유아 현원 수가 많은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사
- ② 만2~5세 다문화영유아 현원 수가 많은 어린이집 교사

○ 수료기준

- 출석 80% 이상, 평가성적 80점 이상인 자(100점 만점)
  - ※ 다문화전문교육과정 : 대학교(원)에서 교과목명에 ‘다문화’가 포함된 교과목을 이수 했을 경우 성적증명서 등 제출시 해당(유사)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수강료는 시간당 계산)
- 경기도 주관 온라인 인성교육 수강(16. 4월 시작 교육부터 적용)

<<수강방법>>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 (www.dream.go.kr) > 로그인 >  
학습센터 > 온라인과정 >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의 길잡이 수강신청

○ 수료자 관리

- 교육원 : 수료자 명단을 해당 시·군으로 통보
  - ※ 교육생의 경기도 주관 온라인 인성교육 이수 확인 후 수료처리
- 시·군 : 인사기록부에 교육이수사항 기록 관리
- 수료자 인센티브 : 특수근무수당 지원(월5만원/인)
  - ※ 영아·다문화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중복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보수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음

- 양질의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통한 전문 보육교사의 원활한 공급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 2016년 사업개요

- 교육대상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이상 학력소지자
  - ※ 수료 시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 교육기관 : 보육교사교육원 9개소(정원 2,550명)
  - ※ 강남대 16년 양성과정 휴지
- 교육기간 : 1년 과정('16.3 ~ '17.2)
  - 교육시간 : 1,135시간 이상(이론 975시간 이상, 실습 160시간)
- 교육내용 : 보육학개론 등 25과목
- 등록금 : 1,990천원 한도 내 교육원 결정(기타비용 별도)

#### □ 2015년도 추진실적

- 봄학기 609명 수료, 가을학기 85명 수강 중

#### □ 사업 추진

- 보육교사교육원별 교육생 모집 및 교육 실시

-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이 있는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에 대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를 인정하여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 **사업개요**

가.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인정

1) 근거법령

-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직원 배치기준 중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도서·벽지·농어촌지역의 범위

1. 「도서·벽지교육 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 지역
2.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3. 동 지역(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한다)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2) 특례인정 범위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를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 구 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이상  |
|--------|-------|-------|-------|--------|--------|
| 원 칙    | 3명    | 5명    | 7명    | 15명    | 20명    |
| 특례인정범위 | 4명 이내 | 7명 이내 | 9명 이내 | 19명 이내 | 24명 이내 |

※ 특례가 인정된 경우 반별 초과보육(어린이집 반편성원칙)은 불가능함

3) 특례인정 조건

- 교사 대 아동비율의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하여야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



#### 4) 특례인정 세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대한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수립
  - 계획은 특례인정 범위 및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 계획을 확정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 시·도지사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인정 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승인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대 아동비율이 특례 인정 범위 및 지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
  - ※ 농어촌특례를 인정받던 지역이 행정구역 변경(읍 → 동으로 변경)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 특례지역에서 제외될 경우 특례인정 제외에 대한 유예
- 반 편성 등이 확정된 년도 중 특례인정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결정
  - 유예대상 : 교사 대 아동비율 및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 유예기간 : 반 편성(3월) 이후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최대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 반 편성 이전(1월~2월)에 특례사항이 변동될 경우 당해연도 2월말까지로 한정

#### 나.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허용 기준

##### 1) 일반원칙

-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할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

##### 2) 특례인정

##### (가) 특례인정 기준

-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교사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보육교사 겸임을 허용할 수 있음

##### (나) 세부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사 채용이 어렵다고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대해 가. 4)특례인정 세부절차와 같이 원장·보육교사 겸용을 허용

## 4-16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도비

보육지원팀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도모

### □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2016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 □ 사업개요

- 사업량 : 7,201명(남부 5,113명, 북부 2,088명)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비 : 114,030백만원(국비 64,229, 도비 30,471, 시군비 19,330)  
※ 남부 81,289백만원, 북부 32,741백만원
- 지원대상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 지원내용 : 호봉에 따른 월 급여액의 30~80% 지원
- 2016년 총사업비 : 114,030,242천원(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구분 | 사업량<br>(명) | 사업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계  | 7,201      | 114,030,242  | 64,228,763 | 30,471,751 | 19,329,728 |    |
| 남부 | 5,113      | 81,288,807   | 45,602,422 | 21,609,705 | 14,076,680 |    |
| 북부 | 2,088      | 32,741,435   | 18,626,341 | 8,862,046  | 5,253,048  |    |

### □ 연도별 투자계획(국비+도비+시군비)

(단위: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323,281,542<br>(96,914,233) | 96,853,994<br>(96,914,233) | 333,776,354<br>(110,689,524) | 114,030,242 |    |
| 남부<br>(집행액) | 233,086,845<br>(70,333,449) | 70,377,849<br>(70,333,449) | 81,420,189<br>(79,879,522)   | 81,288,807  |    |
| 북부<br>(집행액) | 90,194,697<br>(26,580,784)  | 26,476,145<br>(26,580,784) | 30,977,117<br>(30,810,002)   | 32,741,435  |    |

### □ 2015년 추진실적

- 6,477명(남부 4,794, 북부 1,683)

□ **현안 및 문제점**

-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국비 미지원으로 시군 재정부담 확대
  - 국비 미지원 시설 : 27개(도비 : 15개, 시·군자체 : 12개)
  - ※ 보건복지부 승인 후 국비지원

□ **2016년 추진계획**

- 2016년 신규 개원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등록 : '16. 3월

- 도비지원 설립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으로 유능한 보육교사 확보를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 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 연 혁

- 시행시기 : 「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검토」 도지사방침 결재(2013. 3. 7.)  
2014년 본예산 편성

### □ 사업개요

- 사업량 : 15개소 (남부 12, 북부 3)
- 사업비 : 총 2,832백만원(도비 641, 시군비 2,191)
  - 남부 2,492백만원, 북부 340백만원
- 지원대상 및 운영
  - 2012~2013년 도비를 지원하여 설립한 국공립어린이집
  -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시설 기준으로 운영
- 운영비 지원기준
  - 국비 미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 지원액 : 인건비 지급액의 80% 또는 30% - 기본보육료

[기본보육료]

0세 383천원/명, 1세 185천원/명, 2세 121천원/명

- 원장 : 인건비 80% 지원
- 영아반 교사 : 인건비 80% 지원
- 유아반 교사 : 인건비 30% 지원

※ 세부운영: 2016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p.305~310) 준용

○ 2016년 총사업비 : 2,832,170천원(도비 10~40%, 시군비 90~60%)

| 구분 | 사업량<br>(개소) | 사 업 비(단위 : 천원) |    |         |           | 비고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
| 계  | 15          | 2,832,170      | -  | 640,721 | 2,191,449 |    |
| 남부 | 12          | 2,492,170      | -  | 606,721 | 1,885,449 |    |
| 북부 | 3           | 340,000        | -  | 34,000  | 306,000   |    |

□ 연도별 투자계획(도비+시군비)

(단위: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br>(집행액) | 7,346,651<br>(1,961,461) | 2,111,311<br>(1,961,461) | 2,403,170<br>(1,906,630) | 2,832,170 |    |
| 남부<br>(집행액) | 6,117,823<br>(1,542,052) | 1,591,933<br>(1,542,052) | 2,033,720<br>(1,593,429) | 2,492,170 |    |
| 북부<br>(집행액) | 1,228,828<br>(419,409)   | 519,378<br>(419,409)     | 369,450<br>(313,201)     | 340,000   |    |

□ 2015년도 추진실적

○ 2015년 자체설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 14개소(남부 11, 북부 3)

□ 2016년 추진계획

○ 국고미지원 시설(15개소) 국고지원 요청 : '16. 3월

## 참고

# 2016년 지자체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단위 : 명)

| 연번 | 구분        | 시설명           | 소재지                          | 보육정원         | 교사수        | 비고<br>(인가일) |
|----|-----------|---------------|------------------------------|--------------|------------|-------------|
|    | <b>총계</b> | <b>15개소</b>   |                              | <b>1,278</b> | <b>204</b> |             |
|    | <b>남부</b> | <b>12개소</b>   |                              | <b>1,121</b> | <b>178</b> |             |
| 1  | 성남시       | 수내동           |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2-3             | 125          | 19         | '14.03.01   |
| 2  | 용인시       | 죽전            |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7-1            | 140          | 16         | '14.03.01   |
| 3  | 안산시       | 스마트허브         |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18           | 98           | 14         | '10.01.10   |
| 4  | 평택시       | 평택항           |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 673              | 90           | 16         | '15.03.01   |
| 5  | 시흥시       | 아이들세상         | 시흥시 정왕동 547-6                | 72           | 10         | '15.03.01   |
| 6  | 시흥시       | 신천            | 시흥시 신천동 763-9                | 55           | 9          | '15.03.01   |
| 7  | 화성시       | 구문천           |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29-18          | 80           | 9          | '14.05.26   |
| 8  | 광명시       | 철산누리          | 광명시 모세로 48                   | 130          | 12         | '13.09.02   |
| 9  | 군포시       | 늘푸른           | 군포시 산본동 1096                 | 59           | 14         | '15.11.01   |
| 10 | 이천시       | 아미2           |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 산71-1외 3필지       | 100          | 30         | '14.03.01   |
| 11 | 오산시       | 세마            | 오산시 세마역로 60                  | 123          | 19         | '13.07.01   |
| 12 | 오산시       | 세교종합사회<br>복지관 | 오산시 수청로 192                  | 49           | 10         | '16.07.01   |
|    | <b>북부</b> | <b>3개소</b>    |                              | <b>157</b>   | <b>26</b>  |             |
| 13 | 고양시       | 백송            |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72              | 45           | 9          | '14.02.26   |
| 14 | 고양시       | 저현            |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 11번길<br>22-21 | 37           | 7          | '14.05.01   |
| 15 | 고양시       | 대화소망          |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778             | 75           | 10         | '14.07.01   |

-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양질의 위생관리를 위한 인건비(조리원)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공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

□ **관련근거**

- 경기도 보육조례 제17조(비용의 보조)

□ **연 혁**

- 시행시기 : 2012년 7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 사업량 : 497개소 (남부 368, 북부 129)
- 사업비 : 4,205,845천원 (도비 1,098,044천원, 시군비 3,107,801천원)
- 지원액 : 보육현원 규모별 차등지원 (조리원 채용기준에 의거)

| 규모(보육현원)      | 40인 미만 | 40인 이상 | 비 고 |
|---------------|--------|--------|-----|
| 월지원액(개소 당, 월) | 60만원   | 90만원   |     |

□ **예산현황**

- 총사업비 : 4,205,845천원(도비 30%, 시군비 70%)

| 구분 | 사업량<br>(개소) | 사업비(단위 : 천원) |           |           | 비고 |
|----|-------------|--------------|-----------|-----------|----|
|    |             | 계            | 도비        | 시군비       |    |
| 계  | 497         | 4,205,845    | 1,098,044 | 3,107,801 |    |
| 남부 | 368         | 3,349,145    | 825,104   | 2,524,041 |    |
| 북부 | 129         | 856,700      | 272,940   | 583,760   |    |

- 연도별 내역(도비+시군비)

(단위 : 천원)

| 구분 | 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비고 |
|----|------------|-----------|-----------|-----------|----|
| 합계 | 11,552,140 | 3,070,250 | 4,276,045 | 4,205,845 |    |
| 남부 | 8,992,090  | 2,328,000 | 3,314,945 | 3,349,145 |    |
| 북부 | 2,560,050  | 742,250   | 961,100   | 856,700   |    |

## □ 사업 추진 안내

### 가. 지원대상

-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운영 또는 선정된 어린이집

### 나. 지원요건

-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별도 채용
  - ※ 임면보고 및 건강진단서·성범죄 경력 조회 등
- 교직원 전원 4대 보험 납부 완료, 퇴직급여제도 설정·운영
-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 교직원(조리원) 배치기준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 준수

### 다. 지급기준

- 신규 채용자는 임면 보고 후 익월부터 지급
  -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신규 지정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을 갖추어 운영하는 날(사군 확인)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급
  -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요건을 갖추어 월 15일 초과 운영할 경우 당월부터 지원 가능
- 규모 변동 시 변동일자가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해당 규모의 월 지원액 지급
- 보육교직원 전원 4대 보험료 납부 완료시 지원
  - 4대 보험 체납 어린이집은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기 지원된 동 보조금은 모두 회수, 4대 보험을 납부 완료한 달부터 지원
-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미 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

### 라. 제외대상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등 법적기준 미 준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시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시
  - ※ 해당 월 인건비 미 지원(기 지원 시 환수 조치), 시정 등 완료시 익월 부터 지원



## 마. 지원중단

###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 취소 시

-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공공형 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로 선정 취소 시 이미 지급한 인건비 환수

###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포기 시

- 포기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보조금 지급 중단

※ 다만, 해당 원에 대한 보조금이 어린이집으로 지급된 후에 포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포기신청일이 속한 월의 보조금까지는 지급, 그 익월부터 보조금 중단

## IV. 첨 부

---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 현황
  -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 2016년 시·군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주요 보육통계표
  - 보육료 지원기준표
-

# 육아종합지원센터 현황

(‘16. 3월 현재)

| 연번 | 시군명  | 운영기관  | 주소  | 개소일         | 비고 |  |
|----|------|---|---|-------------|----|--|
| 합계 |      | 운영 25개소(경기도2, 22시군 23개), 추진 중 7개 시군(이전 5, 신축 2) |   |             |    |  |
| 1  | 남부   |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16<br>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 5층                 | 2003.11.12  |    |  |
| 2  | 수원시  |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24번길47<br>(정자동)                         | 2008.09.01  |    |  |
| 3  |      |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514번길 53                                | 2015.11.20  | 국비 |  |
| 4  | 성남시  | 함께하는 보육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96번길 30-1<br>4층(복정동 667번지)              | 1993.03.01  | 국비 |  |
| 5  | 부천시  | 서울신학대학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br>복사골문화센터 1층(상동 394-2)             | 1999.07.10  | 국비 |  |
| 6  | 용인시  | 용인송담대학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br>1161번길 90                           | 2015.03.13  | 국비 |  |
| 7  | 안산시  | 안산대학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br>안산대학교채플관 B6호(일동)               | 1994.05.01  |    |  |
| 8  | 안양시  |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39<br>만안평생교육센터 2층(안양동)                  | 1997.03.12  |    |  |
| 9  | 평택시  | 국제대학교   | 경기도 평택시 성동로 11길 2<br>(비전동)                              | 2007.10.02  |    |  |
| 10 | 시흥시  | 경기과학기술대학교<br>산학협력단                              |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br>경기과학기술대학교 제2캠퍼스 창조V관<br>421호(정왕동) | 2006.08.03  | 국비 |  |
| 11 | 화성시  | 수원대학교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br>화성종합경기타운(도이리 산31-6번지)            | 2009.08.25  |    |  |
| 12 | 광명시  |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                                     | 경기도 광명시 철망산로 48<br>하안다목적복지회관 신관 3층                      | 2011.01.20  | 국비 |  |
| 13 | 군포시  | 안양대학교   | 경기도 군포시 수리산로 110, 3층<br>(산본동)                           | 2010.01.28  |    |  |
| 14 | 김포시  | 김포시어린이집연합회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77-39<br>(장기동)                           | 2014.12.22  | 국비 |  |
| 15 | 이천시  | 청강문화산업대학교<br>산학협력단                              |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34길 38(중리동)                                | 2006.07.01  |    |  |
| 16 | 오산시  | 오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670-2                                       | 2015.10.13  | 국비 |  |
| 17 | 의왕시  |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122 여성회관<br>지하1층(오전동)                       | 2001.01.19  |    |  |
| 18 | 과천시  | 안양보육교사교육원                                       |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182가족여성플라자 4층<br>(부림동)                      | 2014.03.25  |    |  |
| 19 | 북부   |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9 4층(의정부동)                                 | 2008.02.27  |    |  |
| 20 | 고양시  | 사회복지법인<br>대건카리타스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25(화정동)                                | 2003.04.03. | 국비 |  |
| 21 | 남양주시 | 경북대학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96<br>어린이비전센터                       | 2015.07.17  |    |  |
| 22 | 의정부시 | 경민대학교   |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8<br>덕암빌딩 3~5층 (의정부2동 572-5)             | 2007.09.03  |    |  |
| 23 | 파주시  | 파주시어린이집 연합회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을 통일로 1680<br>문산행복센터 3층                       | 2012.06.01  |    |  |
| 24 | 양주시  | 양주시청 직영   | 경기도 양주시 고암길 226(고암동)                                    | 2013.04.10  | 국비 |  |
| 25 | 구리시  |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53번길<br>34(인창동 527-37)                     | 2013.11.26  |    |  |

※ 추진 중(7) - 신축(2) : 여주, 광주(4월개소예정) / 이전(5) : 성남, 부천, 시흥, 광명, 양주  
미설치(7) - 안성, 하남, 양평,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현황

(2016. 2월 기준)

| 연번 | 시.군  | 시설명             | 전화번호           | 주소                           | 개소일       | 면적m <sup>2</sup><br>/유형 |
|----|------|-----------------|----------------|------------------------------|-----------|-------------------------|
| 1  | 수원시  | 가족여성회관          | (031)259-9851  | 팔달구 매산로 119(교동 74-1) 1층      | 2012. 11월 | 113.8/B                 |
| 2  | 수원시  | 수원시 YWCA        | (031)252-5111  | 장안구 정자2동 정자 YWCA             | 2013. 12월 | 137/B                   |
| 3  | 수원시  | 호매실휴먼시아8단지      | (031)278-5175  | 권선구 금곡로 140번길 29             | 2013. 12월 | 118/B                   |
| 4  | 수원시  |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     | (031)255-5682  | 장안구 송정로 24번길 47              | 2014. 1월  | 150/B                   |
| 5  | 성남시  | 중원청소년수련관        | (031)759-1640  | 중원구 둔촌대로 332, 4층             | 2014. 3월  | 180/C                   |
| 6  | 성남시  | 판교제2어린이집        | (031)8017-1640 | 분당구 운중로225번길 37, 3층          | 2014. 3월  | 285/C                   |
| 7  | 성남시  | 양지동 주민센터        | (031)736-1640  | 수정구 산성대로 483, 5층             | 2014. 2월  | 284/C                   |
| 8  | 고양시  | 탄현동주상복합기부체납지    | (031)913-6003  | 탄현동 두산 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 1층     | 2014. 3월  | 240/C                   |
| 9  | 부천시  | 범박휴먼시아 1단지      | (032)343-6694  | 소사구 양지로 20 범박휴먼시아 1단지 관리동 2층 | 2013. 2월  | 208/C                   |
| 10 | 부천시  | 심곡본동아이러브맘카페     | (032)656-6694  | 소사구 경인로 224번길 55             | 2014. 3월  | 193/C                   |
| 11 | 부천시  | 고강본동주민센터        | (032)681-6694  | 오정구 고리울로 79                  | 2014. 2월  | 160/B                   |
| 12 | 안산시  | 안산시아이러브맘카페      | (031)481-8683  | 단원구 광덕2로 249(고잔동 766-1) 1층   | 2013. 3월  | 297/C                   |
| 13 | 안양시  | 만안구청 별관         | (031)469-1240  | 만안구 안양8동 462-5 1~2층          | 2013. 4월  | 220.1/C                 |
| 14 | 남양주시 | 호평 20단지         | (031)595-5767  | 호평동 624 관리동 1층               | 2013. 4월  | 74/A                    |
| 15 | 화성시  | 향남 6단지          | (031)8059-9925 | 향남읍 한우몰마을휴먼시아 6단지 관리동 2층     | 2013. 5월  | 182/C                   |
| 16 | 화성시  | 시립반송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 (031)831-5684  | 동탄반석로 31번 3층                 | 2014. 3월  | 351/C                   |
| 17 | 평택시  | 건강가정지원센터        | (031)615-3967  | 서정로 295                      | 2013. 12월 | 262/C                   |
| 18 | 의정부시 | 의정부육아종합지원센터     | (031)853-5006  | 신흥로 198 덕암빌딩 3층              | 2013. 1월  | 154/B                   |
| 19 | 시흥시  | 정왕종합사회복지관       | (031)319-6182  | 정왕동 1800-8                   | 2013. 1월  | 239.3/C                 |
| 20 | 시흥시  | 육아종합지원센터        | -              | 정왕동 1800-6                   | 2016. 9월  | 155/C                   |
| 21 | 시흥시  | 아이들세상           | (031)404-5683  | 은행동 547-6                    | 2015. 7월  | 291/C                   |
| 22 | 파주시  | 문산행복센터          | (031)953-2047  | 문산읍통일로1680 문산행복센터 4층         | 2012. 10월 | 73.73/A                 |
| 23 | 오산시  | 중앙도서관           | (031)374-6195  | 오산동 6-9 중앙도서관 1층             | 2012. 12월 | 100/B                   |
| 24 | 오산시  | 세교 3단지          | (031)375-1195  | 수청로 220 세교3단지 관리동 2층         | 2013. 1월  | 142/B                   |
| 25 | 오산시  | 남부종합사회복지관1층     | (031)373-6195  | 원동 404-10                    | 2013. 11월 | 56/A                    |
| 26 | 오산시  | 세교 8단지          | (031)376-1195  | 수청로 166, 807동 2층             | 2014. 1월  | 150/B                   |
| 27 | 구리시  | 인창문화센터          | (031)550-8369  | 동구릉로 53번길 34 3층              | 2013. 10월 | 207.5/C                 |
| 28 | 안성시  | 공도읍사무소          | (031)678-6850  | 시청길 25 공도읍주민센터 1층            | 2012. 11월 | 77/A                    |
| 29 | 양평군  | 양평군 아이러브맘 카페    | (031)775-8373  | 양평읍 마유산로 17 양평군보건소 2층        | 2013. 9월  | 117/B                   |
| 30 | 과천시  | 과천문화원(문원맘카페)    | (02)6959-2645  | 문원로 40 과천문화원 1층              | 2014. 3월  | 112/B                   |
| 31 | 과천시  | 가족여성프라자(부림맘카페)  | (02)6959-2646  | 별양로 182 가족여성프라자 3층           | 2014. 3월  | 258/C                   |
| 32 | 이천시  | 이천시 아이러브맘 카페    | 634-9842~4     | 중리천로34길38                    | 2014. 7월  | 361.5/C                 |

※ (운영/사업량, 31/32개소) '12년(4), '13년(14), '14년(12), '15년(1), '16년(시흥시 1)

# 보육교직원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2016. 3월 현재)

| 연번                           | 교육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전화번호         | 비고 |
|------------------------------|-----------------|-----|------------------------|--------------|----|
| 25개 기관(보육교사교육원10, 대학14, 센터1) |                 |     |                        |              |    |
| 1                            | 강남대 교육원         | 윤신일 |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 899-7080     | 양성 |
| 2                            | 경기 교육원          | 유장환 |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8       | 235-2290     | 양성 |
| 3                            | 경기동부 교육원        | 민문기 | 구리시 검배로 65,4층(삼호빌딩)    | 569-9090~2   | 양성 |
| 4                            | 경기북부 교육원        | 김성일 | 의정부시둔야로9               | 876-5546     | 양성 |
| 5                            | 고양 교육원          | 이만수 |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52,5층      | 970-8100~1   | 양성 |
| 6                            | 성빈센트 교육원        | 유차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264        | 032-655-0453 | 양성 |
| 7                            | 수원여대 교육원        | 엄태식 | 수원시권선구 수원여대길62,미림관105호 | 290-8065     | 양성 |
| 8                            | 에듀케어 교육원        | 이창수 |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35,6층(익성빌딩) | 466-3131     | 양성 |
| 9                            | 중앙 교육원          | 오명숙 | 성남시 중원구 양현로405번길7,2동8층 | 752-1217     | 양성 |
| 10                           | 평택 교육원          | 유승곤 | 평택시 신대고잔길 42           | 656-8820~1   | 양성 |
| 11                           | 경기과기대           | 신진국 |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69         | 496-4658     |    |
| 12                           | 국제대             | 장기원 | 평택시 장안웃길 56            | 610-8726     |    |
| 13                           | 김포대             | 김재복 |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97       | 999-4299     |    |
| 14                           | 대림대             | 남중수 | 안양시 동안구 임곡로 29         | 467-4502     |    |
| 15                           | 대진대             | 배규환 | 포천시 호국로 1007           | 539-1245     |    |
| 16                           | 동원대             | 모영기 |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26       | 799-8888     |    |
| 17                           | 명지대             | 유병진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116        | 330-6745~6   |    |
| 18                           | 부천대             | 최재영 |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56번길 25     | 032-610-0575 |    |
| 19                           | 서영대             | 김정수 | 파주시 월롱면 서영로 170        | 930-9541     |    |
| 20                           | 수원과학대           | 문정훈 | 화성시 정남면 세자로288         | 350-2106     |    |
| 21                           | 신한대             | 김병옥 | 동두천시 벌마들로40번길 30       | 870-2964     |    |
| 22                           | 안산대             | 김주성 | 안산시 상록구 안산대학로 155      | 400-7096     |    |
| 23                           | 여주대             | 김양종 | 여주군 여주읍 명성로 200        | 880-5544     |    |
| 24                           | 중앙대             | 이용구 |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726      | 670-3621     |    |
| 25                           | 화성시<br>육아종합지원센터 | 김은희 |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 8059-1640~2  |    |

# 2016년 시·군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수납주기 : 도 결정
- 입학준비금 한도액 : 총액 도 결정(월100,000원), 세부항목(상해보험료, 피복류 구입비) 시·군 결정
- 차량운행비 한도액 : 도 결정(월20,000원)
-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행사비, 급식비, 특성화비용 한도액 : 시·군 결정

(단위 : 원)

| 구분             | 입학준비금                         |         | 특별<br>활동비         | 현장학습비          | 차량<br>운행비 | 행사비             | 아침·저녁<br>급식비         | 특성화<br>비용 |
|----------------|-------------------------------|---------|-------------------|----------------|-----------|-----------------|----------------------|-----------|
|                | 상해보험료                         | 피복류 구입비 |                   |                |           |                 |                      |           |
| 수납주기           | 연                             | 연       | 월                 | 분기             | 월         | 연               | 월( /식)               | 월         |
| 수원시            | 7,000<br>(미수납 결정시<br>피복류에 포함) | 93,000  | 60,000            | 90,000         | 20,000    | 204,000         | 104,000<br>(2,000/식) | 45,000    |
| 성남시            | 0                             | 100,000 | 68,000            | 99,000         | 20,000    | 300,000         | (1,500/식)            | 25,000    |
| 용인시<br>(정부지원)  | 7,000                         | 93,000  | 68,000            | 78,000         | 20,000    | 132,000         | 60,000<br>(1,500/식)  | 15,000    |
| 용인시<br>(민간,가정) | 7,000                         | 93,000  | 68,000            | 123,000        | 20,000    | 240,000         | 60,000<br>(1,500/식)  | 40,000    |
| 부천시            | 4,000                         | 96,000  | 65,000<br>(3과목이내) | 120,000        | 20,000    | 240,000         | 60,000<br>(1,500/식)  | 40,000    |
| 안산시            | 0                             | 100,000 | 68,000            | 114,000        | 20,000    | 240,000         | 34,000<br>(1,700/식)  | 35,000    |
| 안양시            | 0                             | 100,000 | 70,000            | 105,000        | 20,000    | 300,000         | (2,000/식)            | 40,000    |
| 화성시            | 5,000                         | 95,000  | 75,000            | 105,000        | 20,000    | 204,000         | (1,500/식)            | 45,000    |
| 평택시<br>(시립)    | 5,000                         | 95,000  | 40,000            | <u>월30,000</u> | 20,000    | <u>월 15,000</u> | (2,000/식)            | 20,000    |
| 평택시<br>(민간,가정) | 5,000                         | 95,000  | 60,000            | <u>월40,000</u> | 20,000    | <u>월 15,000</u> | (2,000/식)            | 30,000    |
| 시흥시            | 5,000                         | 95,000  | 65,000            | 105,000        | 20,000    | <u>월20,000</u>  | 30,000<br>(1,500/식)  | 30,000    |
| 김포시            | 0                             | 93,000  | 60,000            | 165,000        | 20,000    | 159,000         | 156,000<br>(3,000/식) | 40,000    |
| 광명시            | 시 일괄 가입                       | 100,000 | 70,000            | 90,000         | 20,000    | 120,000         | (1,500/식)            | 30,000    |
| 광주시            | 0                             | 100,000 | 80,000            | 120,000        | 20,000    | 180,000         | 30,000<br>(1,500/식)  | 40,000    |
| 군포시            | 100,000<br>(도 결정 미준수)         |         | 70,000            | 90,000         | 20,000    | 240,000         | (1,800/식)            | 50,000    |

| 구분   | 입학준비금                 |                          | 특별<br>활동비 | 현장학습비          | 차량<br>운영비 | 행사비             | 아침·저녁<br>급식비                               | 특성화<br>비용 |
|------|-----------------------|--------------------------|-----------|----------------|-----------|-----------------|--|-----------|
|      | 상해보험료                 | 피복류 구입비                  |           |                |           |                 |  |           |
| 수납주기 | 연                     | 연                        | 월         | 분기             | 월         | 연               | 월( /식)                                     | 월         |
| 오산시  | 6,000                 | 0세 64,000<br>1세이상 94,000 | 66,000    | 105,000        | 20,000    | 216,000         | (1,900/식)                                  | 30,000    |
| 이천시  | 0                     | 100,000                  | 70,000    | 90,000         | 20,000    | 180,000         | 30,000<br>(1,600/식)                        | 40,000    |
| 안성시  | 0                     | 100,000                  | 60,000    | 100,000        | 20,000    | 250,000         | 40,000<br>(2,000/식)                        | 30,000    |
| 의왕시  | 100,000<br>(도 결정 미준수) |                          | 75,000    | 120,000        | 20,000    | 120,000         | 30,000<br>(1,500/식)                        | 35,000    |
| 하남시  | 10,000                | 90,000                   | 78,000    | 120,000        | 20,000    | 240,000         | 30,000<br>(1,500/식)                        | 35,000    |
| 여주시  | 0                     | 100,000                  | 70,000    | 75,000         | 20,000    | 115,000         | (1,400/식)                                  | 35,000    |
| 양평군  | 0                     | 100,000                  | 70,000    | 105,000        | 20,000    | 200,000         | 30,000<br>(1,500/식)                        | 40,000    |
| 과천시  | 0                     | 100,000                  | 70,000    | 90,000         | 20,000    | 240,000         | (1,500/식)                                  | 20,000    |
| 고양시  | 5,000                 | 95,000                   | 70,000    | <u>월45,000</u> | 20,000    | <u>월20,000</u>  | (2,000/식)                                  | 50,000    |
| 남양주시 | 0                     | 100,000                  | 80,000    | 90,000         | 20,000    | 180,000         | 60,000<br>(1,500/식)                        | 50,000    |
| 의정부시 | 0                     | 100,000                  | 62,000    | 120,000        | 20,000    | 170,000         | (1,500/식)                                  | 42,000    |
| 파주시  | 5,000                 | 95,000                   | 70,000    | 135,000        | 20,000    | 240,000         | (1,200/식)                                  | 40,000    |
| 양주시  | 10,000                | 90,000                   | 65,000    | 135,000        | 20,000    | 186,000         | (1,350/식)                                  | 43,000    |
| 구리시  | 10,000                | 90,000                   | 80,000    | 90,000         | 20,000    | 180,000         | 67,600<br>(1,300/식)                        | 50,000    |
| 포천시  | 10,000                | 90,000                   | 70,000    | 100,000        | 20,000    | 220,000         | (1,000/식)                                  | 30,000    |
| 동두천시 | 10,000                | 90,000                   | 70,000    | <u>월30,000</u> | 20,000    | <u>200,000</u>  | (1,200/식)                                  | 45,000    |
| 가평군  | 0                     | 100,000                  | 60,000    | <u>월25,000</u> | 20,000    | <u>월 15,000</u> | 45,000<br>(1,125/식)                        | 45,000    |
| 연천군  | 10,000                | 90,000                   | 70,000    | 85,000         | 20,000    | 240,000         | 35,000<br>(0~2세 1,746/식)<br>(3~5세 2,000/식) | 50,000    |

# 주요보육통계표

## □ 영유아 현황

(단위 : 명/ '15. 12월말)

| 구분      | 총 영유아수 ①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수 ②  | 유치원 이용 유아수 ③  |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영유아수 ④=(①-②-③) |
|---------|----------------|-----------------|---------------|-----------------------------|
| 전국(%)   | 3,187,718(100) | 1,452,813(45.6) | 682,553(21.4) | 1,052,352(33.0)             |
| 경기도 (%) | 862,159(100)   | 389,398(45.2)   | 191,293(22.2) | 281,468(32.6)               |
| 전국대비%   | (27.0)         | (26.8)          | (28.0)        | (26.7)                      |
| 서울시(%)  | 546,824(100)   | 238,103(43.5)   | 91,394(16.7)  | 217,327(39.7)               |

## □ 어린이집 유형별

(단위 : 개소/ '15. 12월말)

| 구분      | 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등   | 민간개인         | 가정           | 부모협동     | 직장       |
|---------|-------------|------------|------------|----------|--------------|--------------|----------|----------|
| 전국(%)   | 42,517(100) | 2,629(6.2) | 1,414(3.3) | 834(2.0) | 14,626(34.4) | 22,074(52.0) | 155(0.4) | 785(1.8) |
| 경기도 (%) | 12,689(100) | 595(4.7)   | 68(0.5)    | 139(1.1) | 4,005(31.6)  | 7,646(60.2)  | 66(0.5)  | 170(1.3) |
| 전국대비%   | (29.8)      | (22.6)     | (4.8)      | (16.7)   | (27.4)       | (34.6)       | (42.6)   | (21.7)   |
| 서울시(%)  | 6,598(100)  | 922(14.0)  | 35(0.5)    | 141(2.1) | 2,174(33.0)  | 3,105(47.0)  | 27(0.4)  | 194(2.9) |

## □ 어린이집 정원

(단위 : 명/ '15. 12월말)

| 구분      | 합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등      | 민간개인          | 가정            | 부모협동       | 직장          |
|---------|----------------|---------------|--------------|-------------|---------------|---------------|------------|-------------|
| 전국(%)   | 1,790,821(100) | 188,661(10.5) | 135,741(7.6) | 60,509(3.4) | 942,103(52.6) | 399,649(22.3) | 4,913(0.3) | 59,245(3.3) |
| 경기도 (%) | 474,619(100)   | 42,848(9.0)   | 5,919(1.2)   | 11,216(2.4) | 260,624(54.9) | 138,813(29.2) | 1,779(0.4) | 13,420(2.8) |
| 전국대비%   | (26.5)         | (22.7)        | (4.4)        | (18.5)      | (27.7)        | (34.7)        | (36.2)     | (22.7)      |
| 서울시(%)  | 274,132(100)   | 70,561(25.7)  | 2,367(0.9)   | 7,475(2.7)  | 122,831(44.8) | 55,916(20.4)  | 852(0.3)   | 14,130(5.2) |

## □ 어린이집 현원

(단위 : 명/ '15. 12월말)

| 구분      | 합계             | 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등      | 민간개인          | 가정            | 부모협동       | 직장          |
|---------|----------------|---------------|-------------|-------------|---------------|---------------|------------|-------------|
| 전국(%)   | 1,452,813(100) | 165,743(11.4) | 99,715(6.9) | 46,858(3.2) | 747,598(51.5) | 344,007(23.7) | 4,127(0.3) | 44,765(3.1) |
| 경기도 (%) | 389,398(100)   | 39,052(10.0)  | 4,724(1.2)  | 8,526(2.2)  | 205,330(52.7) | 119,663(30.7) | 1,547(0.4) | 10,556(2.7) |
| 전국대비%   | (26.8)         | (23.6)        | (4.7)       | (18.2)      | (27.5)        | (34.8)        | (37.5)     | (23.6)      |
| 정원충족률   | 82.0           | 91.1          | 79.8        | 76.0        | 78.8          | 86.2          | 87.0       | 78.7        |
| 서울시 (%) | 238,103(100)   | 62,556(26.3)  | 2,088(0.9)  | 6,327(2.7)  | 105,478(44.3) | 50,061(21.0)  | 752(0.3)   | 10,841(4.6) |
| 정원충족률   | 86.9           | 88.7          | 88.2        | 84.6        | 85.9          | 89.5          | 88.3       | 76.7        |

## □ 특수보육어린이집

(단위 : 개소/ '15. 12월말)

| 구분      | 영아전담   | 장애아전담  | 장애아통합  | 방과후    | 시간연장   | 24시간   | 휴일     | 공공형    |
|---------|--------|--------|--------|--------|--------|--------|--------|--------|
| 전국      | 494    | 175    | 899    | 321    | 8,582  | 268    | 305    | 1,789  |
| 경기도     | 52     | 19     | 267    | 18     | 2,015  | 57     | 22     | 495    |
| (전국대비%) | (10.5) | (10.9) | (29.7) | (5.6)  | (23.5) | (21.3) | (7.2)  | (27.7) |
| 서울시     | 50     | 10     | 320    | 126    | 2,067  | 95     | 87     | -      |
| (전국대비%) | (10.1) | (5.7)  | (35.6) | (39.3) | (24.1) | (35.4) | (28.5) | -      |

\* 0세아 전용 어린이집(경기도 자체) : 170개소

## □ 보육교직원

(단위 : 명/ '15. 12월말)

| 구분      | 계            | 원장           | 보육교사          | 특수교사       | 치료사      | 영양사      | 간호사        | 조리원         | 기타          |
|---------|--------------|--------------|---------------|------------|----------|----------|------------|-------------|-------------|
| 전국      | 321,067(100) | 42,338(13.2) | 229,116(71.4) | 1,981(0.6) | 549(0.2) | 914(0.3) | 1,226(0.4) | 28,112(8.8) | 16,831(5.2) |
| 경기도     | 87,475(100)  | 12,635(14.4) | 62,499(71.4)  | 335(0.4)   | 45(0.1)  | 243(0.3) | 343(0.4)   | 7,986(9.1)  | 3,389(3.9)  |
| (전국대비%) | (27.2)       | (29.8)       | (27.3)        | (16.9)     | (8.2)    | (26.6)   | (28.0)     | (28.4)      | (20.1)      |
| 서울시     | 54,432(100)  | 6,565(12.1)  | 39,059(71.8)  | 450(0.8)   | 60(0.1)  | 154(0.3) | 171(0.3)   | 4,932(9.1)  | 3,041(5.6)  |
| (전국대비%) | (17.0)       | (15.5)       | (17.0)        | (22.7)     | (10.9)   | (16.8)   | (13.9)     | (17.5)      | (18.1)      |



# 보육료 지원기준표

| 구 분               |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비 고                          |              |
|-------------------|-----------------------|--|-------------------|---------|---------|--------------------|--------------------|------------------------------|--------------|
| 수 납<br>한도액<br>(원) | 국 공 립                 |  |                   |         | 220,000 |                    |                    |                              |              |
|                   | 민 간                   | 418,000  | 368,000           | 304,000 | 293,000 | 271,000            |                    |                              |              |
|                   | 가 정                   |  |                   |         | 296,000 |                    |                    |                              |              |
|                   | 시간 연장<br>(시간당)        | 3,000 (장애아 4,000)  |                   |         |         |                    |                    |                              |              |
|                   | 2 4 시 간               | 836,000  | 736,000           | 608,000 | 440,000 |                    |                    | 정부미지원어린이집<br>연령별 수납한도액의 200% |              |
| 지 원<br>단 가<br>(원) | 보육료<br>(소득무관)         | 0~2세   | 418,000           | 368,000 | 304,000 | -                  |                    |                              |              |
|                   |                       | 3~5세   |                   |         |         | 220,000            |                    |                              |              |
|                   |                       | 시간연장<br>(시간당)  | 3,000 (장애아 4,000) |         |         |                    |                    |                              |              |
|                   |                       | 24시간   | 627,000           | 552,000 | 456,000 | 330,000            |                    | 보육료지원액의 150%                 |              |
|                   | 누리차액<br>보육료<br>(법정차액) | 민 간  |                   |         |         | 30,000<br>(73,000) | 30,000<br>(51,000) |                              |              |
|                   |                       | 가 정  |                   |         |         | 30,000<br>(76,000) |                    |                              |              |
|                   | 장 애 아                 | 438,000(누리과정 장애아 438,000)                                  |                   |         |         |                    |                    |                              | 만12세이하 미취학아동 |
|                   | 방과후보육료<br>(6세이상)      | 어린이집 4시간 이상 이용시 지원<br>(법정저소득층 : 100,000원, 장애아동 : 219,000원) |                   |         |         |                    |                    |                              |              |
| 기 본 보 육 료         |                       | 383,000  | 185,000           | 121,000 | -       |                    |                    | 정부미지원어린이집                    |              |
| 가정<br>양육수당<br>(원) | 0~5세                  | 200,000  | 150,000           | 100,000 |         |                    |                    |                              |              |
|                   | 농어촌                   | 200,000  | 177,000           | 156,000 | 129,000 | 100,000            |                    |                              |              |
|                   | 장애아동                  | 200,000  |                   |         | 100,000 |                    |                    |                              |              |